

祈
雨
祭
騰
錄
2

기
우
제
등
록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祈^기
雨^우
祭^제
勝^등
錄^록
2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3책

속종조

을해년 ¹⁶⁹⁵	10	갑신년 ¹⁷⁰⁴	179
병자년 ¹⁶⁹⁶	35	을유년 ¹⁷⁰⁵	221
정축년 ¹⁶⁹⁷	45	병술년 ¹⁷⁰⁶	234
무인년 ¹⁶⁹⁸	85	정해년 ¹⁷⁰⁷	238
기묘년 ¹⁶⁹⁹	96	무자년 ¹⁷⁰⁸	244
경진년 ¹⁷⁰⁰	119	기축년 ¹⁷⁰⁹	254
신사년 ¹⁷⁰¹	126	경인년 ¹⁷¹⁰	262
임오년 ¹⁷⁰²	154	신묘년 ¹⁷¹¹	270
계미년 ¹⁷⁰³	171	임진년 ¹⁷¹²	277

계사년 ¹⁷¹³	290
갑오년 ¹⁷¹⁴	296
을미년 ¹⁷¹⁵	319
병신년 ¹⁷¹⁶	304
정유년 ¹⁷¹⁷	310
무술년 ¹⁷¹⁸	313
기해년 ¹⁷¹⁹	325
경자년 ¹⁷²⁰	330

경종조

신축년 ¹⁷²¹	337
임인년 ¹⁷²²	355
계묘년 ¹⁷²³	374

기우제등록 제3책

1695~1723년

기우제등록 전
祈雨祭謄錄 全

숙종조 을해년¹⁶⁹⁵부터 경자년¹⁷²⁰까지

경종조 신축년¹⁷²¹부터 계묘년¹⁷²³까지

肅廟朝乙亥至庚子

景廟朝辛丑至癸卯

강희 34년 을해년¹⁶⁹⁵ 4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中部水標直} 유석만^{劉碩萬}의

수본^{手本}에,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1촌 높
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康熙三十四年乙亥四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劉碩萬手本內：‘今曉下雨，水
標看審，則一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을해년¹⁶⁹⁵ 4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상열^{劉尙悅}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四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劉尙悅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을해년¹⁶⁹⁵ 4월 17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입춘 이후 오랫동안 단비가 내리지 않았고, 간혹 비가 내리더라도 전혀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근래 지방의 농사 형편에 대한 장계를 연달아 받았는데, 가뭄의 재해가 제법 심하여 망종^{芒種}이 다가왔으나 파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람이 건조하여 비가 내릴 기미가 막연하고, 이대로 열흘이 지나면 농사는 모두 그만이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4월 22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서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四月十七日

● 初次

一. 曹啓曰：“今年入春以後，甘澤久靳，間或得雨，一未周洽，近來續接外方農事形止狀啓，則旱災頗甚，節迫芒種，不得耕播云。而目今風色淒其，雨意邈然。過此一句，則農事都休，前頭民事，誠爲悶慮。禱雨之舉，不容少緩，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二十一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乙亥四月二十二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不卜日，來二十五日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을해년¹⁶⁹⁵ 4월 27일

● 3차 기우제는 중신과 근시를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30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고 중신^{重臣}과 근시^{近侍}를 보내라고 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4월 30일

● 정전을 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삼가 비망기^{備忘記}를 보니, 윤음^{輪音}에 하신 말씀이 간절하고 측은하였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술을 금하고 복을 치지 않으니, 음악을 중지하는 일도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일체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호조·병조·사옹원·군기시·내주방·장원서·내자시·내섬시·사재감·좌우순청·금루·사도시】

● 4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기로 하다.

예조의 단자에,

四月二十七日

● 三次. 重臣·近侍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不卜日, 來三十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允. 遣重臣近侍爲良如教.

四月三十日

● 避正殿

一. 曹啓曰: “即伏見備忘記, 十行天扎, 辭旨懇惻, 凡在瞻聆, 孰不感動? 自今日, 避正殿·減膳·禁酒·勿擊鼓, 則撤樂等事, 亦令各該司, 一體舉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戶·兵·司饗·軍器·內酒房·掌苑署·內資·內贍·司宰·左右巡廳·禁漏·司導寺】

● 四次. 大臣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楊

“4차 기우제는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4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本道(경기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일 설행하며, 제문祭文에 자신을 책망하는 뜻으로 따로 말을 만들어 지어 바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4차 기우제는 종묘·사직에 대신을 보내고, 양진 등은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를 양진 등 다섯 곳에 설행하겠다는 단자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종묘·사직·북교에 대신大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일 설행하며, 제문에 자신을 책망하는 뜻으로 따로 말을 만들어 지어 바치라고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양진 등 다섯 곳은 지금 우선 정지하고, 성상의 하교대로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4차 기우제를 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五月初四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 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畿監司處, 知委, 何如?” 啓. 宗廟·社稷·北郊, 遣大臣, 不卜日, 來初三日設行, 而祭文中, 罪己責躬之意, 別爲措辭製進事, 分付爲良如教.

● 四次. 宗社大臣, 楊津等停.

一. 曹啓曰: “四次祈雨祭楊津等五處設行事單子, 傳曰: ‘宗廟·社稷·北郊, 遣大臣, 不卜日, 來初三日設行, 而祭文中, 罪己責躬之意, 別爲措辭製進事分付’事, 命下矣. 楊津等五處, 今姑停止, 依聖教, 宗廟·社稷·北郊, 遣大臣, 四次祈雨祭, 以初三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을해년¹⁶⁹⁵ 5월 3일

● 5차 기우제는 중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重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며, 집사관·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세기^{張世起}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7일

● 6차 기우제는 중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어제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잠깐 내리다가 곧 개

乙亥五月初三日

● 五次. 重臣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初七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畿監司處,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五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張世起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五月初七日

● 六次重臣

一. 曹單子: “昨日雖得小雨, 驟下旋霽, 久旱之餘, 無望蘇

었으니, 오랜 가뭄이 든 뒤라 마른 곡식이 소생할 가
망이 없어 기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11일 저자도·용
산강·관악산에 중신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
진·진암 분시焚柴는 같은 날 전례에 따라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
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희생은 본도에
서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땀감
과 말에 대한 단자는 아래에 보인다.】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저자도에
는 한성부에서 배설 등의 일을 진배하고, 분시와 저
구猪口를 배설하는 등의 일은 비록 본조에서 분부하
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지방관이 거행하는 규례가
있으므로 경기에서 곧장 분부하여 거행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11일

● 남교 친제

비망기에,
“지난번 비가 잠깐 내리다가 곧 날이 개었기에 여러
산에 두루 달려가 제사 지내지 않은 곳이 없으나 하
루 이틀이 지나도 아직 큰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농
사를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픈 듯하다. 나의 성의가
얕아 하늘의 마음을 돌리기 부족하지만, 희생을 대
신하여 친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枯, 祈禱之舉, 似不可已. 六次
祈雨祭, 不卜日, 來十一日, 楮
子島·龍山江·冠岳山, 遣重臣,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
柴, 同日亦爲依例設行爲白乎
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
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
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
本道差定進排事, 各該司及京
畿監司處, 知委, 何如?”【柴馬
單下見】 啓依所啓施行爲良
如教.【楮子島, 京排設等進排,
焚柴猪口排設等事, 雖無自本
曹分付, 自地官方舉行流來舊
規, 故自京圻直爲分付舉行.】

乙亥五月十一日

● 南郊親祭

一. 備忘記: “頃日小雨驟下,
旋即開霽, 遍走群望, 靡神不
宗, 而一日二日, 尙靳大霈, 言
念民事, 若恫在躬. 顧予誠意
淺薄, 縱不足以回天心, 代犧
親禱之舉, 不容少緩, 其令禮
官, 不卜日, 以十三日舉行, 而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13일에 거행하게 하되, 처소는 남교로 정하라.”
하였다.

●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南郊祈雨親祭는 택일하지 않고 13일로 정하였습니다. 성상부터 여러 향관享官에 이르기까지 으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사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모든 절목을 미처 거행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하되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禮文대로 거행하고, 향관들과 근시近侍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재숙齋宿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壺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는 택일하지 말고 13일로 정하여 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부터 친제를 지낼

處所則定於南郊.”

● 齋戒

一. 曹啓曰：“南郊祈雨親祭，不卜日，定於十三日。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行祭，只隔一日，凡干節目，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壺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 壇修理

一. 曹啓曰：“南郊祈雨親祭，不卜日，以十三日定行事，命下矣。在前親祭時，壇上修理·

때는 단상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로 따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보내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별도로 감역관을 정하여 급히 수리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진년¹⁶⁵²과 임신년¹⁶⁹² 두 해의 남교 기우 친제 때는 성상께서 2경 초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와 단소^{壇所}에 이르러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으며,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제관과 집사들은 1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경 1점에 소여^{小輿}로 출궁하고 환궁하였다. 대가가 관위^{版位}에 이르자 비가 뿌리다가 바로 그쳤다.】

● 향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

修補事, 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 眼同看檢. 今亦依此舉行, 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 急速修理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私習

一. 曹啓曰: “取考膳錄, 則壬辰·壬申兩年, 南郊祈雨親祭時, 上於二更初動駕出城, 詣壇所, 仍爲行祭還宮, 而無野次經宿之規矣. 出宮時刻, 今亦依此舉行, 而祭官·諸執事, 十二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及近侍, 依例並爲私習, 俾無失儀事, 知委舉行, 何如?” 傳曰: “允.” 【二更一點小輿出還宮. 大駕詣版位, 灑雨卽止.】

● 享官祇迎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 前一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可, 大駕將至祇

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13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1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흑단령^{黑團領}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부

보부^{報府}.

1. 이달 13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낸다.
1. 제관과 집사들은 1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중사·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한다.
1.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한다.
1.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墀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계하하였다.

● 세자의 아헌을 탈품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13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아헌관은 세자가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다만 지금 어린 나이이므로 형

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十三日祈雨親祭教是時, 諸享官, 十二日質明, 先詣祭所, 以黑團領祇迎事, 知委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報府

一. 報府.

一. 今月十三日, 南郊祈雨親祭事.

一. 祭官·諸執事, 十二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近侍, 依例私習儀事.

一. 諸享官, 前一日質明, 先詣享所, 大駕將至, 以黑團領祇迎事.

一.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自今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墀門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啓下.

●世子亞獻頃

一. 曹啓曰: “今十三日南郊祈雨親祭時, 亞獻官, 世子例爲行之, 而第方在沖年, 勢難行禮,

세상 예를 행하기 어려우니, 근래의 전례대로 마련
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시강원에 알렸다.】

● 말

예조의 단자에,
“진암辰岩 분시焚柴를 검사하는 일로 경기 양주楊州에
내려가는 예조 낭청이 탈 말과 짐말 및 색리가 탈
말들은 규례대로 병조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15일

● 7차 기우제는 중신과 근시를 다시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교외의 제단에 친히 기도한 뒤에 하늘의 효험이 나
타났으나 끝내 단비가 내리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
도 역시 비가 내릴 조짐이 없고 해가 쨍쨍하여 가
뭄이 갈수록 심해지니, 연달아 기우제를 지내는 일
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풍운뇌우와 산천에는 이미
친제를 지냈으니, 나머지 우사雩祀에 다시 중신을 보
내고, 삼각산·목덕산·한강에 다시 근시를 보내 7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라고 통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依近例不爲磨鍊之意，敢啓。”
傳曰：“知道。”【報侍講院】

● 馬

一. 曹單子：“辰岩焚柴檢飭
事，京畿楊州地下去，曹郎廳
騎卜馬及色吏所騎馬等，依例
令兵曹題給，何如？”啓依所
啓施行爲良如教。

乙亥五月十五日

● 七次. 更遣重臣·近侍

一. 曹單子：“郊壇親禱之後，
既著冥應，終靳甘霖，數日以
來，亦不無雨微，而旋即杲杲，
亢旱愈甚，連次祈雨之舉，不
容停止，而風雲雷雨·山川，既
經親祭，其餘雩祀，更遣重
臣，三角山·木覓山·漢江，更
遣近侍，七次祈雨祭，不卜日，
來十八日設行之意，知委，何
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을해년¹⁶⁹⁵ 5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태명^{俞太明}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21일

● 8차 기우제는 저자도·용산강에 중신을 보내고 동자 기우제를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교외의 제단에 친히 기도한 뒤 이어서 기우제를 지
내라고 이미 계하를 받아 거행하였습니다. 그간 이
미 7차 기우제를 지냈는데 단비가 잠깐 내리다가
끝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은 지 며칠이 지나 지금 햇빛이 예전처럼 쨍쨍합
니다. 절기가 점차 늦어져 농사가 너무도 급박하니,
이미 기우제를 지낸 곳에 다시 차례로 거행해야 합
니다.
그러나 양진 등 다섯 곳과 저자도 등 여섯 곳은 길
이 모두 머니, 분부하여 거행하는 사이에 형세상 여
러 날이 걸릴 것입니다. 종묘사직의 경우는 이미 2
차로 설행하였으니, 계속해서 번거롭게 고하는 것은

乙亥五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俞太明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二十一日

● 八次. 楮子島·龍山江重 臣, 童子祈雨.

一. 曹啓曰：“郊壇親禱之後，
仍行祈雨祭事，既已啓下舉行.
前後已至七次，甘霖纔始，終
不霈然，欲雨不雨，延過累日，
卽今亢陽，猶前杲杲. 節序漸
晚，民事萬分竭急，當就已行
之處，更當次第舉行，而楊津
等五處及楮子島等六處，道里
皆遠，分付舉行之際，勢將費
了多日，至於宗社，則既已再
次設行，一向瀆告，有所未安.
在前亦有各處中擇其便近處，
抽出設行之時，今亦依此例，

온당치 않습니다. 예전에도 각처 중에 편하고 가까운 곳을 뽑아 설행한 때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저자도·용산강에 중신을 다시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 설행하며,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도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에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동자군^{童子軍} 실차^{實差} 100명과 예차^{預差} 50명은 선명한 의복을 입고 하루 전에 점고를 받고 재숙^{齋宿}하였다.】

● 적대¹

“이 감결은, 이번 24일 8차 기우제를 저자도·용산강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며, 모화관 연못가에 동자 기우제를 지낼 때 적대^{楮大} 등의 일은 따로 감역관을 정하여 급속히 거행하라는 일입니다.” 【선공감】

을해년¹⁶⁹⁵ 5월 2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태명^{兪太明}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1 적대(楮大): 미상이다.

楮子島·龍山江, 更遣重臣, 不卜日, 來二十四日設行, 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 閭閻屏柳, 亦於同日爲始, 三日而止事, 分付舉行, 何如?” 傳曰: “允.” 【童子軍實差一百名, 預差五十名, 衣服鮮明者, 前一日逢點齋宿.】

● 楮大

一. “右甘結, 今二十四日, 八次祈雨祭, 楮子島·龍山江, 遣重臣設行, 而慕華館池邊童子祈雨時楮大等事, 別定監役官, 急速舉行事.” 【繕工監】

乙亥五月二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兪太明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七寸, 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25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민재흥^{閔再興}의 첩정^{牒呈}에,

‘이달 24일 본진^{本津}(한강진)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6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5월 27일

● 9차 기우제와 동자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9차 기우제는 사직·종묘·북교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1일 설행하고, 경회루^{慶會樓}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도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五月二十五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閔再興牒呈內：‘自今月二十四日，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六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七日

● 九次童子

一. 曹單子：“九次祈雨祭，社稷·宗廟·北郊，遣重臣，不卜日，來六月初一日設行，而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亦於同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기우제가 삭제와 겹치니 기우제만 지내다.

예조의 단자에,

“종묘의 9차 기우제를 오는 6월 1일 설행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예문에 삭망제朔望祭가 별제別祭와 겹치면 별제만 지낸다고 하였으니, 예문대로 기우제만 지내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의 수본에, ‘어제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8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8차와 9차의 헌관 및 동자 기우제를 서계書啓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 祈雨·朔祭相值, 只行祈雨

一. 曹單子: “宗廟九次祈雨祭, 來六月初一日設行事, 啓下矣. 禮文內: ‘朔望若值別祭, 則只行別祭’云, 依禮文, 只行祈雨祭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六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趙朱生手本內: ‘去下雨, 水標看審, 則二尺八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八九次獻官及童子祈雨, 書啓.】

六月初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趙朱生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八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8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1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9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1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의 수본에,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朱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乙亥六月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朱生手本內: ‘今曉下雨, 祭
水標看審, 則六尺九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 ‘去夜下雨, 水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28일 해정_{亥正} 1각_刻은 바로 입추절_{立秋節}이니, 정전_{正殿}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고, 북을 치는 등의 일을 모두 29일부터 거행해야 합니다. 경고_{更鼓}의 경우는 입추절이 지난 뒤 즉시 복구해야 할 듯하니, 해정 1각 이전에는 이전대로 징을 치고, 이후에는 북을 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梁尙萬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六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 還御正殿

一. 曹啓曰：“今月二十八日亥正一刻，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膳·擊鼓等事，並自二十九日，方可舉行，而至於更鼓，則似當入節後卽爲復舊，亥正一刻以前，則依前擊鉦，以後則擊鼓事，分付，何如?” 傳曰：“允.”

을해년¹⁶⁹⁵ 6월 2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2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六月二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四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乙亥六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의 수본에,
‘오늘 저녁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9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6월 29일

●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민재흥^{閔再興}의 첩
정에,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0
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六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今日夕下雨，
水標看審，則八尺九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九日

● 漢江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閔
再興牒呈內：‘本津常流水基
良中，以布帛尺，十尺五寸，加
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을해년¹⁶⁹⁵ 7월 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채노중^{蔡老仲}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채노중^{蔡老仲}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2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채노중^{蔡老仲}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七月初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蔡老仲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蔡老仲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蔡老仲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八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장맛비가 계속 내려 곡식이 손상되었으니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해당 조로 하여금 내 뜻을 물어 거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한 달 내내 장맛비가 내린 뒤 오늘 비의 기세가 범상치 않으니 홍수가 날 우려를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영제四門禁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관사에 통지하라는 뜻으로 초기草記를 지어 내어 조사曹司의 낭청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즉시 올리게 하였습니다. 삼가 전교의 내용을 보고 초기가 지체된 곡절을 추문하였더니, 좌랑 박응경朴凝慶이 병이 있다는 핑계로 다른 낭청에게 미루어 이렇게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 병세의 경중을 비록 알 수는 없으나 태만한 버릇이 참으로 지극히 놀랍습니다. 우선 엄하게 추고하고, 기청제는 성상의 하교대로 처음 정한 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종일의 번육膳肉 전부를 예조에 올리라고 사문四門의 전사관典祀官에게 감결을 보냈다.】

● 祈晴祭

一. 曹啓曰：“傳曰：‘霖雨支離，禾穀損傷，祈晴之舉，似不可已，令該曹稟旨舉行’事，命下矣。浹月潦雨之餘，今日雨勢非常，極備之憂，誠不可勝言。故以四門禁祭，不卜日，來初六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各司之意，成出草記，使曹司郎廳，卽呈政院矣。及伏見傳教辭緣，推問其草記遲滯之曲折，則佐郎朴凝慶，稱以有病，推諉於他郎廳，以致稽延至此云。其病勢輕重，雖未可知，而怠慢之習，誠極可駭，姑先從重推考，祈晴祭，則依聖教以初定初六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終日膳肉沒數上曹事，捧甘四門典祀官。】

을해년¹⁶⁹⁵ 7월 4일

● 인가가 물에 잠기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민재흥^{閔再興}의 첩정에,

‘이번 7월 3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강물이 크게 불어 물가의 인가 10여 호가 물에 잠겨 측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8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8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乙亥七月初四日

● 人家沈溺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閔再興牒呈內: ‘今七月初三日下雨後, 本津江水大漲, 水邊人家十餘戶沈溺, 不得尺量’ 是如爲白有臥乎事.” 啓.

八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林信民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七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八月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林信民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 則三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해년¹⁶⁹⁵ 11월 22일

● 기곡제에 대한 수의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내가 『예기禮記』를 살펴보니 「월령^{月令}」에 「1월 1일 상제上帝에게 기곡제^{祈穀祭}를 지낸다.」라고 하였다. 무릇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며 1월은 한 해의 첫머리이니, 이달 상신일^{上辛日}에 기곡제를 지내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아, 올해 팔도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 실로 예전 역사에 드문 일이다. 진흙하는 곡식을 모으기 어렵고 굶어 죽은 시체가 이어지니 참으로 이미 절박한 근심이다. 그러나 내가 몹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년 농사의 풍흉이니, 온 동토 만백성의 생사가 달려 있다. 백성이 씨도 남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찌 홀로 보존되겠는가. 매번 생각할 때마다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옛 제도를 본떠 백성을 위해 몸소 사직단에 나아가 정성껏 기곡제를 지내려는 이유이다. 예관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수의하여 거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대신들에게 수의하였더니,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은

「월령」의 기곡제는 교외에서 제사 지내는 예식이고,

十一月二十二日

● 祈穀祭收議

一. 曹啓曰：“備忘記：‘予按禮記，月令曰：「孟春之月，乃以元日，祈穀于上帝。」夫農者，爲國之本，而孟春，一歲之首，則以是月上辛祈穀者，豈偶然哉？噫，今年八路之大侵，實是前史所罕也。賑穀之難聚，餓殍之相續，固已切急之憂，而予之所大懼者，正在嗣歲以穡事之豐凶，而環東土億萬生靈之生死判焉。赤子靡有孑遺，國家安得獨存？每一念及中夜無寐，此予之所以倣古制，而爲生民欲躬詣社壇，虔誠祈穀者也。其令禮官，議于大臣舉行’事，命下矣。議于大臣，則左議政柳尙運以爲：‘月令祈穀，此是郊祀之禮，而祈年田祖，亦有國之事也。雖在常年，倣而行之，固無不可，矧今

전조田祖(신농, 神農)에게 풍년을 비는 것도 나라에서 할 일입니다. 비록 평년에 본떠 시행하더라도 본디 안 될 것이 없는데, 더구나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오로지 내년 농사의 풍흉에 달린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성상께서 내년의 근심을 깊이 유념하여 백성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하시는 이유입니다. 직접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로 말하자면 예관이 그 절목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우의정 신익상申翼相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고, 영돈녕부사 윤지완尹趾完은 지방에 있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수의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大侵之餘，民之死生，國之存亡，專在於來歲穡事之豐凶？此聖上所以深軫嗣歲之憂，爲生民無所不用其極，至欲親自將事於社壇者也。禮官講其節目而行之，似合事宜。伏惟上裁。’領議政南九萬·右議政申翼相，病不收議，領敦寧府事尹趾完，在外不得收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傳曰：“依議施行。”

을해년1695 11월 23일

● 기곡제 날짜

예조가 아뢰기를,

“기곡 친제를 1월 상신일上辛日 사직단에서 지내는 일을 대신의 수의로 인하여 수의대로 시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상신일은 1월 4일이니, 이날로 정하여 행하고, 절목은 그때 가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乙亥十一月二十三日

● 祈穀祭日

一. 曹啓曰：“祈穀親祭，孟月上辛，行於社稷壇事，因大臣收議，依議施行事，命下矣。上辛卽正月初四日，以此日定行，而節目則臨時磨鍊舉行，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11월 24일

● 어재실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오는 1월 4일 사직 친제 때 어재실^{御齋室}은 본서 안향^{安香廳}을 미리 수리하라고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11월 27일

● 친제의 서계

예조의 단자에,
“오는 1월 4일 사직 기곡 친제를 행할 때 서계^{誓戒}는 7일 전에 하니, 12월 26일 4경 초에 향관들과 종친·문무백관이 흑단령 차림으로 예를 행하며, 의식 연습은 4일 전이니 같은 달 29일 이른 아침에 중사·승지 및 향관들만 흑단령 차림으로 의정부에서 예를 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十一月二十四日

● 御齋室修理

一. 曹啓曰：“來正月初四日，社稷親祭時，御齋室，以本署安香廳，預爲修理之意，分付戶曹，何如？”傳曰：“允。”

十一月二十七日

● 親祭誓戒

一. 曹單子：“來正月初四日，行社稷祈穀祭親行教是時，誓戒，前期七日是在白，十二月二十六日四更頭，諸享官及宗親·文武百官，以黑團領行禮爲白乎旂，隸儀，前期四日是在白，同月二十九日早朝，中使·承旨及諸享官叱分，以黑團領，議政府良中行禮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을해년¹⁶⁹⁵ 12월 6일

세자의 아헌

예조가 아뢰기를,
 “친제 때 아헌관은 왕세자가 행하는 것이 규례이니,
 오는 1월 4일 사직 기곡 친제 때의 아헌례도 왕세자
 가 행해야 하나, 지금은 어린 나이이므로 형세상 예
 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전례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을해년¹⁶⁹⁵ 12월 15일

● 제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朝服} 차림으
 로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
 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는
 1월 4일 사직 기곡 친제를 행할 때 향관들은 3일 새
 벽에 향소에 먼저 가서 절목대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乙亥十二月初六日

●世子亞獻

一. 曹啓曰：“凡親祭時，亞獻
 官，王世子例爲行之，來正月
 初四日，社稷祈穀親祭時，亞
 獻之禮，王世子亦當行之，而
 方在沖年，勢難行禮，依近例
 不爲磨鍊之意，敢啓。”傳曰：
 “知道。”

十二月十五日

●祭官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
 諸享官，以朝服，質明先詣享
 所爲白齊如可，大駕將至祇迎
 事，禮文載錄爲白有昆，來正
 月初四日，行社稷祈穀親祭教
 是時，諸享官，初三日質明，先
 詣享所，依節目，四品以上朝
 服，五品以下以黑團領祇迎
 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
 行爲良如教。

을해년¹⁶⁹⁵ 12월 19일

예조의 단자에,

“오는 1월 4일 사직 기곡 친제를 행할 때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4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 3일 중 2일은 정전^{正殿}에서, 1일은 재실^{齋室}에서 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오는 1월 4일 사직 기곡 친제를 행할 때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정침^{正寢}에서 4일 동안 묵으며 산재하고, 치재 3일 중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堽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자년¹⁶⁹⁶ 3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十二月十九日

一. 曹單子: “來正月初四日, 行社稷祈穀親祭教是時, 殿下, 散齋四日於別殿, 致齋三日, 二日於正殿, 一日於齋室, 凡散齋, 不吊·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享祀事, 依禮文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曹單子: “來正月初四日, 行社稷祈穀親祭教是時,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散齋四日宿於正寢, 致齋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享所, 陪祭百官及諸衛之屬守衛堽門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子三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萬伊手本內: ‘去夜下雨, 水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3월 8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수조^{李壽祚}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7촌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3월 2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穡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三月初八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李壽祚牒呈內: ‘今番下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五尺七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丙子三月二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李穡生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병자년¹⁶⁹⁶ 5월 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5월 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五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병자년¹⁶⁹⁶ 5월 1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수조^{李壽祚}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3촌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5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5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五月初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李
壽祚牒呈內：‘今番下雨後，本
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
五尺三寸加漲溢’是如爲白臥
乎事。” 啓.

五月二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去夜下雨，
水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5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5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丙子五月二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七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七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6월 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漢江渡} 겸임 삼전도승^{三田渡丞} 이

대만^{李代萬}의 첩정에,

‘요즘 비가 내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
척^{布帛尺}으로 7척 5촌이 들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6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전태성^{全太成}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전태성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물

六月初三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兼任

三田渡丞李代萬牒呈內: ‘近

日下雨,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七尺五寸加漲溢’是

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全太成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全太成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五寸流下’是如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6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전태성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7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6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6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爲白臥乎事.” 啓.

六月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全太成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七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丙子六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8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6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7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구석^{李求石}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韓栗金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七月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求石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병자년¹⁶⁹⁶ 7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구석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한 달 내내 장맛비가 내린 뒤 도리어 중간에 조금
가뭄이 들었다가 이달 7일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개기도 하였는데 흐린 날이 항상 많았으나 그
래도 농사에 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며칠 동안
무더위가 몹시 심하여 이제부터 날이 깨끗이 갠 것
이라 여겼는데, 밤사이 비 내리는 기세가 범상치 않
아 지금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일 이와 같다
면 그대로 홍수의 재해를 초래할 것이니, 농사가 참
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가을이 이미 지났으니 기청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부터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구석^{李求石}의 수본에,

七月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求石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 祈晴祭

一. 曹啓曰: “浹月霪雨之餘,
反致中間小旱, 自今月初七日
以後, 或雨或晴, 陰噎尙多, 而
猶不至於害農, 且於數日間,
炎威甚烈, 謂可自此快霽矣.
夜來雨勢非常, 尙今不止, 若
至連日如此, 仍致極備之災,
則農事誠爲可慮. 卽今秋節已
過, 祈晴四門禳祭, 不卜日, 來
十八日爲始, 三日而止事, 知
委各該司, 何如?” 傳曰: “允.”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求石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자년¹⁶⁹⁶ 12월 6일

● 1차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겨울 내내 눈이 쌓이면 실로 내년 농사가 풍년이 들 징조입니다. 겨울이 이미 늦었는데 아직 큰 눈이 내리지 않고 매서운 추위가 갈수록 혹독하여 가을에 심은 보리가 필시 얼어 손상되는 우환이 많을 것이니, 내년 걱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 기설제를 설행한 전례가 많으니, 전례대로 종묘·사직·북교에 중신을 따로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자년¹⁶⁹⁶ 12월 13일

● 2차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으나 바람과 추위가 갈수록 혹독해지고 눈이 내릴 기미가 더욱 막연합니다. 예전 임술년¹⁶⁸²·경오년¹⁶⁹⁰ 두 해에

標看審，則四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丙子十二月初六日

● 祈雪初次

一. 曹啓曰：“三冬積雪，實驗來歲之豐熟。冬序已晏，大雪尙靳，嚴寒益酷，秋耕牟麥，必多凍傷之患，嗣歲之憂，不可勝言。從前如此之時，多有祈雪祭設行之例，依前例，宗廟·社稷·北郊，別遣重臣，不卜日，來初九日，設行之意，分付，何如？” 傳曰：“允。”

十二月十三日

● 祈雪再次

一. 曹啓曰：“祈雪祭設行，已過累日，風寒轉酷，雪意愈漠。曾在壬戌·庚午兩年，皆有再次祈雪祭設行之事，今亦依此

는 모두 2차 기설제를 설행한 일이 있었으니, 이번
에도 이 전례대로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覓山·한강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
지 말고 오는 16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3월 13일

● 기곡제는 세초를 정식으로 삼아 설행하다.

이번 3월 13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
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신완^{申琬}이 아뢰기를,

“1월 5일 인견하였을 때 성상이 대신들에게 기곡제
를 설행하라고 특별히 명을 내리신 뒤 소신이 이것은
고례^{古禮}이니 금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세초에 설행하
도록 영원히 정식으로 삼으라는 뜻을 아뢰어 윤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행조건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해당 조^曹가 이 전교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
고 봉행하지 못할까 걱정이니, 승정원으로 하여금 거
행조건을 뒤늦게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例, 風雲雷雨·山川·雩祀, 遣
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不卜日, 來十六日, 設
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丁丑三月十三日

● 祈穀祭, 歲初定式設行

一. 今三月十三日, 大臣·備局
堂上引見入侍時, 禮曹判書申
琬所啓: “正月初五日引見時,
自上特令大臣, 設行祈穀祭
事, 命下之後, 小臣以此乃古
禮, 自今年爲始, 每於歲初設
行事, 永爲定式之意, 陳達蒙
允, 而以其不出舉行條件之故
前頭該曹, 恐或不知有此教,
而不得奉行, 令政院退出舉行
條件, 何如?” 上曰: “依爲之.”

정축년¹⁶⁹⁷ 3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사산^{朴士山}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3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육선^{李六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3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심약호^{沈若浩}의 첩
 정에,
 ‘이달 25일 비가 내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丁丑三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士山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尺二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啓.

三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六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三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沈
 若浩牒呈內：‘今月二十五日下
 雨，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五尺五寸加漲溢’是如爲
 白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윤3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齡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1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齡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윤3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朱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1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閏三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齡生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齡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閏三月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朱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一寸流下’是如

1 閏: 저본에는 없으나 문맥을 고려
하여 보충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4월 17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탑전에서 하
교하셨습니다. 1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
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서 오는 20일
정성껏 기도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중신·근시를 팔도에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다.

이조 참판 오도일^{吳道一}의 상소에 근거한 예조의 계
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조 참
판 오도일의 상소를 보니,

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朱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丁丑四月十七日

● 初次

一. 曹啓曰: “祈雨祭, 不卜日
設行事, 榻前下教矣. 初次祈
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來
二十日, 虔誠祈禱之意, 知委
舉行, 何如?” 傳曰: “允.”

● 重臣近侍八路設祭

一. 吏曹參判吳道一上疏據曹
啓曰: “粘連啓下是白有亦, 觀
此吏曹參判吳道一上疏, 則:
‘今年牟麥, 傷於旱乾, 太半枯

‘금년의 보리는 가뭄에 상해 대반이 말라 죽었는데, 지금 서늘한 바람이 밤마다 불고 뜨거운 햇빛이 낮에 쨍쨍하니, 하루 이틀 지나도록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합니다. 나라가 텅 비고 백성이 죽는 일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중신과 근신을 따로 보내 지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팔도에 분부하여 여러 산에 일체 설행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팔도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니, 온 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보리가 익는 것입니다. 가을보리는 거의 다 말라 죽어 추수할 가망이 없고, 봄보리는 낮에는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밤에는 음산한 안개가 걷히지 않아 이삭이 팬 보리가 전부 누렇게 말랐을 뿐만 아니라, 망종^{芒種}이 이미 지나 파종할 때도 놓쳤으니, 앞으로의 농사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 신완^{申完}이 오늘 탑전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청하여 20일 설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신이 상소하여 중신과 근신을 따로 보내도록 청한 것은 의견이 없지 않으므로, 풍운뇌우·산천·우사에는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는 근시를 보내 정성껏 기도하게 하며, 팔도에는 각 경내의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곳에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그때그때 택일하여 정성껏 제사를 지내 기필코 비가 내리게 하라고 모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36년 4월 17일 동부승지 신 이선부^{李善溥}가 담당하여 아뢰어 그리하라고 윤험을 받

損,而目今淒風宵吹,杲日晝
 赫,一日二日,雨意漠然,國空
 民劉,迫在呼吸.請令該曹,別
 遣重臣·近臣,至誠設祭,且分
 付八路,一體設行於羣望’亦
 爲白有臥乎所,卽今八路飢荒,
 餓殍載路,國之所顛望者,只
 在於牟麥之登熟是白如乎,秋
 牟則舉皆枯死,幾盡登場之望
 是白乎旆,春牟段置,晝則淒
 風連吹,夜則陰霧不開,發穗
 之麥,盡爲萎黃叱分不喻,芒
 種已過,播種亦且愆期,前頭
 民事,罔知攸措是白乎等以,
 臣琬,今日榻前,已爲請行祈
 雨祭,將以二十日設行是白如
 乎,宰臣疏請別遣重臣及近
 臣,不無意見是白去乎,風雲
 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
 角山·木覓山·漢江,遣近侍,
 使之虔誠祈禱爲白乎旆,八路
 段置,各其境內祀典所載處,
 下送香祝,使之隨時卜日,虔
 誠設祭,期於得雨事,并以分
 付,何如?”康熙三十六年,四
 月十七日,同副承旨臣李善溥

았다.

정축년¹⁶⁹⁷ 4월 18일

● 쌍령 등에 제사를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18일 주강^{書講}에 입시하였을 때 정언 원성

유^{元聖俞}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어 팔도의 백성이 거의 다 죽게 되었으니, 앞으로 믿을 것은 오직 밀과 보리뿐입니다. 그런데 가을보리는 이미 가망이 없고, 봄보리도 근래의 가뭄 재해로 인하여 대부분 누렇게 말라 익을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모든 방도를 다 해야 합니다. 어제 예관이 아뢴 일로 인하여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전교가 있었는데, 신은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쌍령^{雙嶺}과 험천^{險川}은 병자년¹⁶³⁶에 패배한 곳입니다. 예전에 기우제를 지낼 때도 사제^{賜祭}한 일이 있었는데 효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차례대로 지낸다면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때가 늦으니, 역시 동시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는 일은 이미 분부하였다. 전사한 곳에 사제하는 일 또한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次知, 啓依允.

丁丑四月十八日

● 雙嶺等致祭

一. 曹啓曰: “今四月十八日晝講入侍時, 正言元聖俞所啓:

‘國家不幸, 連歲凶荒, 八路生民, 殆將盡剝, 前頭所恃, 只在兩麥, 而秋牟則已無所望, 春牟亦緣近日旱災, 舉皆萎黃, 頓無成熟之望. 卽今得雨之策, 宜無所不用其極, 昨因禮官所達, 有祈雨祭設行之教, 而臣既有區區所懷, 敢此陳達. 雙嶺·險川, 卽丙子陣亡處也. 曾前祈雨之時, 亦有賜祭之事, 多有其險云. 今若以次序行之, 則雖或得雨, 未免後時, 亦爲一時舉行, 何如?’ 上曰: “祈雨祭設行事, 旣已分付, 而戰亡處賜祭事, 亦令該曹稟處可也” 事, 命下矣. 險川·雙嶺, 致祭吉日, 令日官推擇, 則今四月二十六日爲吉云, 依前例, 遣近臣設行, 而祭物及執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험천과 쌍령에 치재할 길 일을 일관에게 잡게 하였더니, 4월 26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례대로 근신을 보내 설행하되, 제물과 집사관은 전례를 살펴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라고 본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관문關文의 결어結語에, “계하된 내용을 살펴보니 험천과 쌍령 등의 장소에서 전사한 장사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따로 제단 하나를 만들어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제물과 집사 등은 한결같이 을축년¹⁶⁸⁵의 전례대로 각별히 정갈하게 마련하고 가려 차임하여 기다리다가 근신이 향축을 받고 내려가면 즉시 설행하라고 속히 분부하여 거행하십시오.”

하였다.

● 지난해 굶주려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18일 주장書講에 입시하였을 때 동지사 민진장閔鎭長이 아뢰기를,

‘정언 원성유元聖俞가 전사자가 있는 곳에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아뢰었는데, 신도 소회가 있어 감히 아웁니다. 작년에 진흙을 설행한 곳에 굶어 죽은 백성이 몹시 많으니, 필시 풀리지 않은 원기冤氣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 번 제사를 지내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역시 해당 조로 하여금 일체 성상께 여

事官, 考例差定進排事, 分付本道, 何如?” 傳曰: “允.”

行關結語: “啓下內辭緣相考, 險川·雙嶺等處, 戰亡將士致祭時, 別設一壇, 分爲上中下三級分設事, 及祭物執事等, 一依乙丑年例, 各別精備擇差以待爲有如可, 近臣受香祝下去 卽爲設行之意, 急速分付舉行向事.”

● 上年飢死人致祭

一. 曹啓曰: “今四月十八日, 晝講入侍時, 同知事閔鎭長所啓: ‘正言元聖俞以戰亡處祈雨祭事陳達, 臣亦有所懷敢達, 上年設賑之所, 飢民之死亡甚多, 想必有冤氣之未解者, 其在朝家愍恤之道, 不可不一番設祭, 以慰其意, 亦令該曹, 一體稟處.’ 上曰: ‘辛亥年飢民死亡之處, 曾前屢有遣

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해년¹⁶⁷¹ 백성이 굶어 죽은 곳에 예전에 누차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일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당 조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난해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제사를 지낼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였더니, 이번 4월 24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근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고, 예전 신해년에 백성이 굶어 죽은 곳에 제사를 지낼 때는 정결한 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물은 여제^{厲祭}에 비해 넉넉하게 마련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친제는 1차 기우제를 지낸 뒤 차례로 거행하다.

사간 이익수^{李益壽}, 정언 원성유^{元聖兪}·조태채^{趙泰采}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그대들의 상소를 보니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기에 나는 몹시 가상히 여기고 감탄한다.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친히 기도하는 일은 재해가 눈썹을 태울 정도로 급박하니 잠시도 늦출 수 없다. 다만 내일 교외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은 일의 형세가 너무 급하니, 1차 기

官賜祭之事矣。今亦一體舉行宜當，令該曹稟處’事，命下矣。東西郊，上年餓死人處，致祭吉日，令日官推擇，則今四月二十四日爲吉云，遣近臣設行之意，分付各該司，而曾前辛亥飢民死亡處，致祭時，有淨潔處設壇，祭物比厲祭從優磨鍊之例，今亦依此例，使之舉行，何如？”傳曰：“允。”

● 親祭初次後次第舉行

一. 司諫李益壽·正言元聖兪·趙泰采等疏批：“省覽爾等之疏，出於憂愛之至誠，予甚嘉歎，可不留心，而親禱事，災迫燃眉，不容暫緩也。第明詣郊壇，事勢太急，當於初次設祭之後，次第舉行焉。”

우제를 설행한 뒤 차례로 거행하겠다.”
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4월 19일

● 남교 기우 친제를 사직으로 옮겨 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교외의 제단에서 친히 기도하는 예는 택일하지 말고 22일로 정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전교대로 남교 기우 친제를 마련하여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교외의 제단에서 친히 기도하는 예는 택일하지 말고 22일로 정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남교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하여 급히 수리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丁丑四月十九日

● 南郊祈雨親祭, 社稷移定

一. 曹啓曰: “傳曰: ‘郊壇親禱之禮, 不卜日, 定於二十二日事, 分付該曹’事, 命下矣. 依聖教南郊祈雨親祭磨鍊舉行事, 分付各該司之意, 敢啓.”
傳曰: “知道.”

● 壇修理

一. 曹啓曰: “傳曰: ‘郊壇親禱之禮, 不卜日, 定於二十二日’事, 命下矣. 在前南郊親祭時, 壇上修理修補事, 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 眼同看檢. 今亦依此舉行, 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 急速修理事, 分付, 何如?” 傳曰: “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의식 연습

예조가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신년¹⁶⁹²·을해년¹⁶⁹⁵ 두 해에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성상께서 2경 초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가 단소^{壇所}에 이르러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고,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제관과 집사는 21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지 말도록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세자의 아헌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22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아헌관은 세자가 하는 것이 규례인데, 지금 어린 나이이므로 형세상 예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출궁하고 환궁할 때 궐문 밖에서도 지영^{祇迎}하고 지송^{祇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 민간에 꺼려야 할 질병이 치성하니, 모두 근래의 전례대로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習儀

一. 曹啓曰：“取考膳錄，則壬申·乙亥兩年南郊祈雨親祭時，上於二更初，動駕出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規矣。出宮時刻，今亦依此舉行，而祭官·執事，二十一日質明，先詣祭所，與中使及近侍，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 世子亞獻

一. 曹啓曰：“今二十二日，南郊祈雨親祭時，亞獻官，世子例爲行之，而第方在沖年，勢難行禮，出還宮時，闕門外亦當有祇迎祇送之節，而閭巷間拘忌之疾熾盛，並依近例勿爲磨鍊之意，敢啓。”傳曰：“知道。”

● 제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가 도착하면 지영하도록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22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21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는 택일하지 말고 22일로 정하였습니다. 성상부터 향관들에 이르기까지 산재散齋와 치재致齋를 하는 규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는 날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모든 절목을 미처 거행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하되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 묵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堦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

● 祭官祇迎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 前一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將至祇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二十二日, 祈雨親祭教是時, 諸享官, 二十一日質明, 先詣享所, 以黑團領祇迎事, 知委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齋戒

一. 曹啓曰: “南郊祈雨親祭, 不卜日, 定於二十二日. 自上逮至諸享官, 例有散·致齋之規, 而今此行祭, 只隔二日, 凡干節目, 未及舉行, 自今日, 殿下別殿致齋, 不吊喪·問疾·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唯啓享祀事, 依禮文舉行, 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 並自今日, 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 諸衛之屬守衛堦門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知委舉行, 何如?” 傳曰: “依啓. 齋沐虔誠事, 及禁酒·南草等

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재계와 목욕을 정성껏 하는 일과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등의 일은 각별히 엄히 신칙 하라.”

하였다.

● 보부

보부報府.

1. 이달 22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낸다.
1. 제관과 집사는 21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중사·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한다.
1.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祗迎한다.
1.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고 향소에서 하루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한다.

정축년¹⁶⁹⁷ 4월 20일

이달 20일, 도승지 송창宋昌·우승지 김세익金世翊이 청

事, 各別嚴飭.”

● 報府

一. 報府

一. 今月二十二日, 南郊祈雨親祭事.

一. 祭官·執事, 二十一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近侍, 依例私習儀事.

一. 諸享官, 前一日質明, 先詣享所, 大駕將至, 以黑團領祗迎事.

一.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自今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 各於本司清齋一宿事.

丁丑四月二十日

一. 今月二十日, 都承旨宋

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22일 친림 기우제의 처소는 사직으로 고쳐 정하라고 탑전에서 하교하였다.

● 사직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친림 기우제는 처음에 남교에서 지내기로 정하였기에 시행해야 하는 절목을 어제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지금 승정원의 청대로 인하여 사직으로 고쳐 정하였는데, 산재와 치제는 어제 계하받은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향관들은 내일 새벽 먼저 향소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며, 대가가 재소에 도착한 뒤 향관들과 중사·근시는 전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보부

보부報府.

이달 22일 사직 기우 친제社稷祈雨親祭 때 향관들은 내일 새벽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며, 대가가 재소에 도착한 뒤 향관들과 중사·근시는 전례대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하라고 계하하였다. 【24일 저녁과 밤부터 새벽까지 비가 내렸다.】

昌·右承旨金世翊請對入侍時, 二十二日親臨祈雨祭處所, 以社稷改定事, 榻前下教.

● 親祭社稷

一. 曹啓曰: “今此親臨祈雨祭, 初以南郊定行, 故應行節目, 昨已啓下矣. 今因政院請對, 以稷改定, 散致齋, 依昨日啓下施行, 而諸享官, 明日質明, 先詣享所,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以黑團領祇迎, 大駕詣齋所後, 諸享官與中使·近侍, 依例私習, 俾無失儀事, 更爲知委, 何如?” 傳曰: “允.”

● 報府

一. 報府

一. 今月二十二日, 社稷祈雨親祭時, 諸享官, 明日質明, 先詣享所,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祇迎, 大駕詣齋所後, 諸享官與中使·近侍, 依例私習儀事, 啓下. 【二十四日夕

정축년¹⁶⁹⁷ 4월 23일

● 정전을 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승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정성이 말 밖으로 넘치니, 보고 들은 사람이 누구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술을 금지하고 복을 치지 않으니, 음악을 중지하는 것도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일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호조·병조·사옹원
은 승전^{承傳}을 받았다. 공상^{供上}하는 각 관사·장악원·좌우순청·군기시·금루】

● 경기는 지방의 전례대로 제사를 지낸다.

경기 감사의 관문^{關文}에,
“이번에 도착한 귀조^{貴曹} 관문에,
‘……각 경내에 있는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장소에 향축을 내려보내니 그때그때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내십시오.’
라고 관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향축을 내려보낸 여섯 곳 중에 다섯 곳은 예전부터 조정에서 서울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경기의 체모는 다른 도와 다르고, 올해는 이미 조정에서 향축을 내

夜從曉下雨。】

四月二十三日

● 避正殿

一. 曹啓曰：“伏見下政院之教，哀痛惻怛之誠，溢於言表，凡在瞻聆，孰不感泣？自今日避正殿·減膳·禁酒·勿擊鼓，則撤樂，亦令各該司一體舉行，何如？”傳曰：“允。”【戶兵曹·司饗院捧承傳·供上各司·掌樂院·左右巡廳·軍器寺·禁漏】

● 京圻依外方例行祭

一. 京圻監司關內：“節到付貴曹關內：‘節該各其境內祀典所載處，下送香祝，使之隨時卜日，設祭’事，關是置有亦，今此下送香祝六處內五處段，乃是自前朝家，遣京官行祭之處是在果，圻甸事體，異於外道，今年段置，既自朝家，下送香祝，則亦宜依前以京獻官及

려보냈으니, 역시 이전대로 서울의 헌관과 전사관을 차임하여 보내야 하며, 제물 역시 봉상사에서 진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경기 고을 주현의 관원 35명으로는 결코 변통하여 채워 차임할 형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전을 중시하는 방도에 있어서 이전의 규례를 바꾸어서는 안 되므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 다시 참작하여 변통하여 공문을 보내십시오.”

라고 수결을 찍은 문서에 근거하여,

“다섯 곳은 모두 서울의 관원이 내려간 곳일 뿐만 아니라, 4차와 5차 기우제는 향축과 제관을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재신의 상소로 인하여 팔도의 사전에 실려 있는 곳에 모두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므로, 다섯 곳 역시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규례대로 항상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별제(別祭)입니다. 이번에는 우선 지방의 규례대로 제관과 제물을 본도에서 차임하여 보내 실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대로 실행하십시오.”

하였다.

● 종묘 친제

비망기에,

“아, 어제 사직단에 나아가 몸소 제사를 지낸 것은 참으로 만백성을 위해 눈썹이 타는 듯한 위급함을 해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정성이 알아 신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 가뭄 기운이 갈

典祀官，差送是旅，祭物，亦宜自奉常寺進排是去乎，此當時行祭，而圻邑州縣三十五官，決無推移填差之勢叱分不喻，其於重祀典之道，亦不宜變改前規是乎等以，如是論移爲去乎 更爲參量變通回移”事，據手決內：“五處皆是京官下去之處叱分不喻，四次五次祈雨祭，則香祝祭官，皆自京下送爲乎矣。今番段，因宰臣上疏，八路祀典所載之處，皆令設祭乙仍于，五處亦入於其中爲有置，此非循例常行之祭，乃是別祭是去乎，今番段，姑依外方例，祭官祭物，自本道差送設行，似合事宜，依此設行向事。”

● 宗廟親祭

一. 備忘記：“噫，昨詣社稷，躬秉圭璧，直出於爲萬民解燃眉之急，而微誠淺薄，神不我顧，旱氣愈熾，我心如灼，瞻仰昊天，曷惠其寧？失今不雨，

수룩 심해지니 내 마음이 타는 듯하다. 하늘을 우리
리보니 언제나 평안하게 해 주시겠는가.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이 죽고 나라가 쓰러질 것이니 정
성을 다해 기도하는 일을 어찌 잠시라도 늦출 수 있
겠는가. 다시 자신을 책망하며 종묘에 친히 기도할
것이니 예관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26일로 정하
여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2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23일 영의정과 좌의정이 청대하여 입시하
였을 때 오는 27일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는 이대로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4월 27일

● 3차 기우제는 남교에 대신, 용산에 중신을 보 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27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 택일하지 말
고 오는 1일 남교에 다시 대신을 보내고 용산강과
저자도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기우제를 설행하라

民劉國顯，竭誠祈禱，豈容暫
緩？當更爲責躬，親禱于太
廟，其令禮官，不卜日，定行於
二十六日。”

● 再次大臣

一. 曹啓曰：“今四月二十三日，
領左相請對入侍時，來二十七
日，宗廟·社稷·北郊，遣大臣，
祈雨祭設行事，榻前定奪矣。
再次祈雨祭，依此舉行之意，
知委各該司，何如？”傳曰：
“允。”

丁丑四月二十七日

● 三次南郊大臣龍山重臣

一. 曹啓曰：“今四月二十七日，
晝講入侍時，不卜日，來初一
日，南郊，更遣大臣，龍山江·
楸子島等處，遣重臣，祈雨祭
設行事，榻前下教矣。三次祈

고 탑전에서 하교하였습니다. 3차 기우제는 성상의 하교대로 정성껏 기도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북교 산천의 제관을 차출하지 않다.

북교 전사관이 헌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번 북교 제관 중 산천 헌관 이하 집사들을 차출하여 보내지 않았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고 의아합니다. 이조의 해당 아전을 불러 물으니, 급박한 가운데 산천 헌관 이하의 집사들을 과연 잊어버리고 차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향관을 차출하는 것은 원래 전례가 있으니, 이것은 잊어버리고 빠뜨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에 없는 일을 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일이 비록 급박하나 막중한 제사의 제관과 집사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산천 헌관 및 재랑齋郎, 축사祝史, 찬인贊引을 모두 해당 조로 하여금 속히 차출하여 보내게 하소서. 이조는 자세히 살펴 지 않은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해당 관원 역시 담당 관사로 하여금 살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雨祭, 依聖教, 虔誠祈禱之意, 知委各該司, 何如?” 傳曰: “允.”

● 北郊山川祭官不出

一. 北郊典祀官以獻官意啓曰: “今此北郊祭官中, 山川獻官以下諸執事, 不爲差送, 事極驚訝. 招問吏曹該吏, 則忽遽之中, 山川獻官以下諸執事, 果爲遺忘, 不爲差出云, 享官差出, 自有前例, 則此非遺忘落漏之事, 而有此無前之舉, 殊極駭然. 事雖急迫, 莫重祀享祭官·執事, 不可不備員. 山川獻官及齋郎·祝史·贊引, 並令該曹急速差出以送, 而吏曹難免不察之失, 當該官, 亦令攸司察處, 何如?” 傳曰: “允.”

정축년¹⁶⁹⁷ 5월 1일

● 북교 친제를 상고해 내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예전에 북교에서 친히 기도하였는지 여부를 상고하여 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조에 있는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단지 병자년¹⁶³⁶ 이후의 등록만 있는데, 북교에는 친림하여 기우제를 지낸 일이 없었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남교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아, 정성껏 기도를 지낸 지 이미 세 차례가 지났는데 짙은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갈수록 혹독해진다. 보리는 이미 수확할 수 없고 모내기할 시기를 놓쳤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픈 듯하다. 다시 자신을 책망하며 친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6일에 하되, 처소는 남교^{南郊}와 우사^{雩祀} 중에 내 뜻을 물어 정하여 시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남교는 효종조 임진년¹⁶⁵² 친제를 지낸 뒤로 간혹 가뭄으로 인하여 친제를 지낸 전례가 많으나, 우사는 등록을 살펴봐도 기우제를 친히 지낸 때가 없으니, 친제를 지낼 장소는 남교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아래

五月初一日

● 北郊親祭考出

一. 政院啓曰：“曾前北郊親禱與否考出事，命下矣。取考禮曹所在前例，則只有丙子以後膳錄，而北郊曾無親臨祈雨之事，敢啓。” 傳曰：“知道。”

● 南郊親祭

一. 曹啓曰：“備忘記：‘噫，虔誠祈禱，已過三次，而密雲不雨，亢旱愈酷，麥既無秋，移秧愆期，言念民事，若恫在己。更爲責躬親禱，不容少緩。其令禮官，不卜日，以初六日爲之，而處所則南郊雩祀中，稟旨定行’事，命下矣。南郊，則自孝廟朝壬辰年，親祭之後，或多因旱親祭之例，而雩祀，則考諸膳錄，曾無親行祈雨之時，則親祭處所，似當以南郊舉行，而自下不敢擅便，上裁何如？” 傳曰：“依爲之。”

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평안도에서 굶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평안 감사 민진주閔鎭周의 장계에 근거한 예조의 기록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평안 감사 민진주의 장계를 보니,

‘본도는 작년과 금년 두 해 동안 진휼하였는데, 죽은 자가 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불쌍히 여겨 제사를 지내 무고한 혼령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굶어 죽은 백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 본도에서는 청천강 남쪽과 북쪽에 도회都會를 정하여 근래 굶어 죽은 백성에게 따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근래의 흉년은 평안도가 가장 심하니, 그간 죽어서 도랑과 구덩이를 메운 백성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뭄의 재해로 인하여 서울에서는 한창 따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니, 성상의 조정에서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도리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계의 내용대로 청천강 남쪽과 북쪽에 각기 도회를 정하고 깨끗한 곳에 따로 제단을 설치하며, 제물은

● 平安飢死人賜祭

一. 平安監司閔鎭周書狀據曹啓曰：“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平安監司閔狀啓，則：‘本道昨今兩年，就賑死亡者，實難數計。其在朝家，不可不追愍賜祭，以慰無辜之魂是白去乎，今當京裡飢民死亡處賜祭之日，本道段置，清南北定都會，近年飢民死亡之類，別爲賜祭，似爲得宜。請令該曹稟處’亦爲白有臥乎所，近年飢荒西路最甚，民生之填於溝壑者，前後不可勝數。今因旱災，京中段置，方有別爲賜祭之事，則其在聖朝，悲傷惻怛之道，不可以京外而有所異同是白去乎，依狀啓，清南北各定都會，淨潔處，別設壇所，祭物比厲祭，從優磨鍊，祭官·執事，自本道差定，隨時設行之意，知委爲白乎旅，兩處香

여제와 비교하여 넉넉히 마련하며, 제관과 집사는 본도에서 차출하여 정하고 그때그때 설행하라고 통지하겠습니다. 두 곳의 향축을 즉시 마련하여 내려 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36년 5월 1일 우승지 신 김세익 金世翊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 의식 연습

예조가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임신년¹⁶⁹²과 을해년¹⁶⁹⁵ 두 해의 남교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는 2경 초에 동가 動駕하여 도성을 나가 단소에 나아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고,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제관과 집사는 5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으로 가서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세자의 아헌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아헌관은 세자가 하는 것이 전례인데, 다만 지금 어린 나이이니 형세상 예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출궁하고 환궁할 때 궐문 밖에서 지영^{祗迎}하고 지송^{祗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나,

祝, 趁卽磨鍊下送事, 分付, 何如?” 康熙三十六年, 五月初一日, 右承旨臣金世翊次知, 啓 允.

● 習儀

一. 曹啓曰: “取考膳錄, 則壬申·乙亥兩年, 南郊祈雨親祭時, 上於二更初, 動駕出城, 詣壇所, 仍爲行祭還宮, 而無野次經宿之規矣. 出宮時刻, 今亦依此舉行, 而祭官·執事, 初五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及近侍, 依例並爲私習, 俾無失儀事, 知委舉行, 何如?” 傳曰: “允.”

● 世子亞獻

一. 曹啓曰: “今初六日, 南郊祈雨親祭時, 亞獻官, 世子例爲行之, 而第方在冲年, 勢難行禮, 出還宮時, 闕門外, 亦當有祗迎祗送之節, 而閭巷間

민간에 꺼려야 할 질병이 치성하니, 모두 근래의 전례대로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시강원의 보부】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남교 친제 때 제단 위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하여 속히 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전하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6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향소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하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拘忌之疾熾盛，並依近例，勿爲磨鍊之意，敢啓。”傳曰：“知道。”【侍講院報府】

● 壇修理

一. 曹啓曰：“今初六日，南郊祈雨親祭事，命下矣。在前南郊親祭時，壇上修理修補事，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同看檢。今亦依此舉行，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修理事，分付，何如？”傳曰：“允。”

● 殿下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初六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6일 남교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 관
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2
일간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
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
堦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지낼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갔다가 대가 도착하면 지영하도
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6일 기우 친제를 지
낼 때 향관들은 5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가 흑
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부

보부. 4월 19일의 전례대로 통지할 것.

● 享官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初六日，
南郊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
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
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
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
堦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
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
爲良如教。

● 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
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
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
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
初六日祈雨親祭教是時，諸享
官，初五日質明，先詣享所，以
黑團領祇迎事，知委舉行，何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報府

一. 報府. 四月十九日例知委事.

정축년¹⁶⁹⁷ 5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천립^{姜天立}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3일 저녁과 밤부터 내리다
가 5일 새벽에 그쳤다.】

정축년¹⁶⁹⁷ 5월 9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교외의 제단에서 친히 기도한 뒤 연달아 비가 내릴
조짐이 있어 날마다 단비가 내리기를 바랐으나, 질
은 구름이 곧 흩어지고 해가 나와 더욱 쨍쨍하니,
연달아 기우제를 지내는 일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풍운뇌우와 산천에는 이미 친히 제사를 지냈으니,
나머지 우사^{雩祀}에 다시 중신^{重臣}을 보내고, 삼각산^{三角山},
목멱산^{木覓山}, 한강 침호두^{沈虎頭}에 다시 근시^{近侍}
를 보내 4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 설
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丁丑五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姜天立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自初三日夕夜，
至初五日曉頭而止】

五月初九日

● 四次

一. 曹單子：“郊壇親禱之後，
連有雨徵，日望甘霖之應，而
密雲旋散，出日愈杲，連次祈
雨之舉，不容停止。風雲雷雨
·山川，既經親祭，其餘雩祀，
更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
江沈虎頭，更遣近侍，四次祈
雨祭，不卜日，來十二日設行之
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
行爲良如教。

정축년¹⁶⁹⁷ 5월 13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설행한 뒤 가뭄이 갈수록 혹심합니다. 5차 기우제는 양진楊津, 덕진德津, 오관산五冠山, 감악산紺岳山, 송악산松岳山 등 다섯 곳이 다음 차례인데, 지난번 재신宰臣이 상소를 올려 향축을 서울에서 내려보내 본도로 하여금 이미 설행하게 하였고, 저자도楮子島와 용산강龍山江 두 곳 역시 하교로 인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나머지 관악산冠岳山에 중신重臣을 보내고 박연朴淵, 화적연禾積淵, 도미진渡迷津, 진암辰巖 분시焚柴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전례대로 설행하며,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에서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게 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말

예조의 단자에,
 “진암辰巖 분시焚柴를 검사하는 일로 경기 양주에 내려가는 예조 낭청이 탈 말과 짐말 및 색리가 탈 말들은 전례대로 병조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五月十三日

● 五次

一. 曹單子：“四次祈雨祭設行後，旱乾愈酷。五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五處，當爲次第，而頃因宰臣陳疏，香祝自京下送，令本道既已設行，楮子島·龍山江兩處段，亦因下教行祭，其餘冠岳山，遣重臣，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不卜日，來十七日，依例設行爲白乎矣，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馬

一. 曹單子：“辰岩焚柴檢飭事，京圻楊州地下，曹郎廳騎卜馬及色吏所騎馬等，依例令兵曹題給，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정축년¹⁶⁹⁷ 5월 17일

● 기우제는 우선 며칠 두고 보기로 하다.

이달 17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 기우제는 우선 며칠 두고 보다가 다시 성상께 여쭙어 설행하라고 탑전에서 결정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연이어 비가 내렸으나 수표에는 이르지 않았다.】

정축년¹⁶⁹⁷ 5월 21일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 이동번^{李東蕃}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6척이 불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丁丑五月十七日

● 祈雨姑觀數日

一. 今月十七日, 晝講入侍時, 祈雨祭, 姑觀數日, 更稟設行事, 榻前定奪.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萬伊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自十六日, 十九日至, 連爲下雨, 不至水標.】

五月二十一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李東蕃牒呈內: ‘今番下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六尺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정축년¹⁶⁹⁷ 5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물이

五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寸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初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五寸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丁丑六月初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七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1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六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一寸流下’ 是
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十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정축년¹⁶⁹⁷ 6월 11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동번^{李東蕃}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6촌이 붙어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13일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21일 사시^{오전09~11시}는 입추 절기이니, 정전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고 북을 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

六月十一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李
東蕃牒呈內: ‘今番下雨後,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七尺六寸加漲溢’是如爲白臥
乎事.” 啓.

六月十三日

● 還御正殿

一. 曹曰: “今月二十一日巳時,
乃是立秋節, 還御正殿·復常
膳·擊鼓等事, 依例舉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六月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曉下雨,
水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서진익^{徐振翼}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7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6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서진익^{徐振翼}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丁丑六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徐振翼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七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徐振翼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정축년¹⁶⁹⁷ 7월 1일

● 기우제 향축을 돌려보낸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광하^{李光夏}의 계본^{啓本}에,
 “……예조의 관문^{關文}에 따라 이번에 계하한 이
 조 참판 오도일^{吳道一}의 상소 내용대로 비류수^{沸流水}
 ·두만강^{豆滿江} 등의 장소에 기우제를 설행한 뒤 헌
 관·집사들과 제물은 모두 이첩하여 해당 조에 올
 려보냈습니다. 5월 5일 정평 부사^{定平府使} 오중주^{吳重周}
 의 첩정에,
 ‘이달 6일 비백산^{鼻白山}에 기우제를 설행할 생각이었
 는데 4일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신
 시^{申時} 무렵 큰비가 쏟아져 밤까지 그치지 않아 경내
 의 전답을 두루 적시고 여러 곡식이 소생할 가망이
 있었습니다. 비가 이처럼 내렸으니 6일의 기우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보고합니다.’
 라고 첩보하였습니다. 비가 충분히 내린 뒤에 그대
 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각 고을
 의 보고를 기다렸다가 형세를 보아 분부할 생각으
 로 우선 설행하지 말고 향축은 그대로 봉안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제사^{題辭}를 보냈습니다. 그 뒤 각 고
 을에 비가 지나치게 내려 점차 장마가 되어 곡식을
 해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가을이 시작되었으
 니 그대로 기우제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해당 비백산
 기우제 향축과 폐백은 예전에 시행한 규례대로 도
 로 올려보내겠습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지시하게
 하소서.”

丁丑七月初一日

● 祈雨香祝還送

一. 咸鏡監司李光夏啓本內：
 “節該禮曹關內，節啓下教，吏
 曹參判吳道一上疏，沸流水·
 豆滿江等處，祈雨祭設行後，
 獻官·諸執事及奠物，并以粘
 移段，該曹上送爲白在果。五
 月初五日，定平府使吳重周牒
 呈內：‘本月初六日，鼻白山祈
 雨祭設行計料爲如乎，初四日
 曉頭始雨，同日申時量，大雨
 傍沱，達夜不止，境內田畝周
 洽，各穀有回蘇之望是乎所，
 雨澤如此，初六日祈雨祭，何
 以爲之爲乎乙喻，緣由稟報’爲
 臥乎事，牒報爲白有去乙。雨
 澤既洽之後，仍行祈雨祭，有
 所未安，待各邑所報觀勢，分
 付計料爲去乎，姑勿設行是遣，
 香祝仍爲奉安，宜當之意題送
 爲白有如乎。厥後，各邑雨水
 過多，轉成長霖，以至於支離，
 害穀之境是白沙餘良，即今秋
 節既屆，不可仍行祈雨祭是白
 去乎，同鼻白山祈雨祭香祝幣

라는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함경 감사
 이광하의 계본을 보니, 비백산 기우제를 설행할 생
 각이었으나 각 고을에 비가 지나치게 내려 점차 장
 마가 되어 곡식을 해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대로 기우제를 지낼 수
 없어 해당 향축과 폐백을 도로 올려보내는 일을 해
 당 조로 하여금 지시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번에 내려보낸 향축은 오로지 기우제를 지내기 위
 해서인데, 각 고을에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렸으니,
 비백산 기우제를 차례로 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보낸 향축은 도로 올려보내고 향실^{香室}로 하여
 금 전례대로 불태우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36년 7월 8일 동부승지 신 박
 권^{朴權}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정축년¹⁶⁹⁷ 7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남부 수표직^{南部水標直} 이산업^{李山業}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乙, 依曾前已行之例, 還爲上
 送爲白乎乙喻, 令該曹指揮”
 事. 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
 有亦. 觀此咸鏡監司李光夏
 啓聞, 則鼻白山祈雨祭, 設行
 計料爲白如乎, 各邑雨水過多,
 轉成長霖, 以至於支離, 害穀
 之境, 卽今秋節旣屆, 不可仍
 行祈雨祭, 同香祝幣還爲上送
 事, 令該曹指揮亦爲白有臥乎
 所. 今此下送香祝, 專爲祈雨,
 而各邑雨水過多, 則鼻白山祈
 雨, 不必次第設行是白去乎,
 下送香祝, 還爲上送, 令香室
 依例燒火之意, 分付, 何如?”
 康熙三十六年, 七月初八日, 同
 副承旨臣朴權次知, 啓依允.

丁丑七月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南部水標直
 李山業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8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정지흥^{鄭之興}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8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상만^{梁尙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축년¹⁶⁹⁷ 10월 21일

● 기곡제에 대해 수의하다.

사과 민진후^{閔鎭厚}의 상소에,
“삼가 아뢰입니다. 오늘날 참혹한 흉년은 실로 역사책

八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鄭之興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八月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尙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十月二十一日

● 祈來年祭收議

一. 司果閔鎭厚上疏：“伏以
今日飢荒之慘，實是史冊所罕

에도 드물게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백성을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지극한 정성으로 슬퍼하시지만, 저축이 고갈되어 살릴 방도가 없으니, 음식이 달지 않고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신처럼 형편 없는 자가 관원의 자리에 있는데, 애태우고 유념하는 성상의 마음과 죽어 가는 백성을 생각하니, 절박하고 경황없는 마음을 잠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미치는 바가 혹시라도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직무를 벗어나는 것을 혐의로 여기지 않고 우리 임금 앞에서 다 아뢰어야 마땅하니, 이에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어리석은 소견을 대략 아뢰입니다. 밖으신 성상께서는 한번 헤아려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니, 『예기』 「월령」에,

‘1월에 천자^{天子}가 상제^{上帝}에게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고, 10월에 천자가 내년의 풍년을 천종^{天宗}에게 기원한다.’

하였고, 주석에,

‘천종은 일월성신^{日月星辰}이다.’

하였습니다. 옛날의 선비가 또 말하기를,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시경』에 이른바 내년을 일으키는 것^{興嗣歲}이다.’

하였습니다. 아, 지금 성상의 은택이 두루 흘러 여러 방책을 전부 거행하였으니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위급한 백성이 이에 힘입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불행하여 내년에 파종할 시기를 놓치고 가뭄과 홍수가 갑자기 닥친다면 살아남

載者。我殿下憂慙元元，至誠惻怛，而蓄積盡罄，濟活無策，玉食不甘，丙枕靡寧，如臣無狀，忝在大夫之後，仰思聖心之焦勞俯念，民命之近止，其切迫驚惶之懷，蓋未嘗頃刻馳矣。苟其知思所及，或有可利於國者，宜不敢以出位越俎爲嫌，而畢陳於吾君之前，茲敢冒萬死，略負愚見，冀聖明之試加財幸焉。臣謹按『禮記·月令』曰：‘孟春之月，天子祈穀于上帝，孟冬之月，天子祈來年于天宗。’註曰：‘天宗，日月星辰也。’先儒又曰：‘祈來年，則詩所謂以興嗣歲也。’噫，目今聖澤旁流，羣策畢舉生民倒懸之急，或可賴之而少紓。萬一不幸，來歲耕種愆期，水旱不時，則周餘黎民，其能有子遺者耶？念及于此，則嗣歲之憂，尤有甚於今日，而今日所望，而亦惟在於嗣歲之豐登也。凡於祈禱之方，宜無所不用其極，則遵禮經而祀天宗，恐不可已也。伏願殿下，下詢

은 백성이 어찌 씨가 남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내년 걱정이 지금보다 더욱 심합니다. 오늘날 바라는 것은 오직 내년의 풍년이니, 기도하는 방도에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예기』의 내용에 따라 천중에 제사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묘당과 예관에게 하문하여 이번 10월에 맞추어 즉시 거행하소서.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필시,

‘천중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천자의 일이니,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참람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

하고, 또 필시,

‘1월에 기곡제를 지냈으나 효험이 없었으니, 제사 지내는 법을 만들어 거행하면 이익이 없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곡제는 천자의 일이지만 전하께서 결단하여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어찌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일만 의심하겠습니까.

주 선왕^{周宣王}은 몸을 뒤척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수행하였으나 연이은 기근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늘에 호소한 글에,

‘하늘의 상제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

하였고,

‘하늘을 우리러보니 언제쯤 편안하게 해 주실까.’

하였으니, 기곡제가 효험이 없다고 해서 하늘을 섬기는 정성을 더욱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조정의 논의에 관여하였다가 남에게 배척을 받은 적

于廟堂，禮官趁此孟冬之月，
劃卽舉行焉。今之議者，必以
爲祈年天宗，天子事也，吾國
行之，或嫌於僭，又必以爲孟
春祈穀，既不見驗，刼舉祀典，
未嘗有益，而然臣之愚則竊以
爲不然也。盖祈穀之祭，亦是
天子之事，而殿下斷以行之，
已有年矣。則何獨於祈年而有
疑乎？夫以周宣之側身修行，
猶不免饑饉之薦臻，而其訴天
之詞，乃曰，‘昊天上帝，則不
我虞。’‘瞻仰昊天，曷惠其寧’
則其可以祈穀之無驗，而不爲
之益盡事天之誠耶？臣以干
議朝廷，曾既被斥於人，而今
復忘發，敢論國之大事，臣之
罪戾，益無所逃，臣無任惶懼
屏營之地”事。據曹啓曰：“粘
連啓下是白有亦。觀此行司
果閔疏辭，則：『《禮記·月令》
曰：‘孟春之月，天子祈穀于上
帝，孟冬之月，天子祈來年于
天宗。’註曰：‘天宗，日月星辰
也。’先儒又曰：‘祈來年，則詩
所謂以興嗣歲也。’今日所望，

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함부로 나라의 큰일을 논의하니, 신의 죄는 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신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건디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행 사과 민진후의 상소를 보니,

『예기』 「월령」에 「1월에 천자가 상제에게 기곡제를 지내고, 10월에 천자가 천종에게 내년을 기원한다.」 하였고, 주석에 「천종은 일월성신이다.」 하였습니다. 옛날의 선비가 또 말하기를, 「내년을 기원하는 것은 『시경』에 이른바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바라는 것은 오직 내년의 풍년이니, 기도하는 방도에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예기』의 내용에 따라 천종에 제사 지내는 일을 그 만들 수 없을 듯합니다. 이번 10월에 맞추어 즉시 거행하소서.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필시 「천종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천자의 일이니,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참람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기곡제 역시 천자의 일인데도 전하께서 결단하여 시행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어찌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일만 의심하겠습니까. 묘당과 예관으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기곡제는 본디 우리나라의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닌데, 성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신 지 이미 십수 년이 되었습니다. 대저 사직에 기곡제를 지내는 것은 실로 부합하니, 비단 상제에게 제사 지

亦惟在於嗣歲之豐登也。凡於祈禳之方，宜無所不用其極，則遵禮經而祀天宗，而恐不可已也，趁此孟冬之月，劃即舉行焉。今之議者，必以爲祈年天宗，天子之事也，吾國行之，或嫌於僭，而祈穀之祭，亦是天子之事，而殿下斷以行之，則何獨於祈年而有疑乎？請令廟堂及禮官，稟處‘亦爲白有臥乎所。祈穀祭，本非我國祀典所載，而聖明斷以行之，已至十數年是白在果，大抵祈穀於社稷，實爲襯合，非但有異於祀于上帝，只用祭名，固無嫌於天子之事。而至於祈年於天宗，必欲自今創始，則祭祀壇壝之處所定於何地，而日月星辰之位版，亦將新造乎？俱涉重難，恐不可輕議是白乎矣。考見癸亥年謄錄，則收議中有云：‘凡國有祈年於田祖之文，祈年所以祈豐年也。’然則雖非天子，亦無不可。此祈穀祭之所，由而始行，而當此之時，非不知祈年之可行，而不

내는 것과 다를 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제사의 이름만 사용하니 본디 천자의 일에는 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종에게 내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일을 반드시 지금부터 창시하고자 한다면, 제사 지내는 제단은 어느 곳으로 정하며, 일월성신의 위판은 새로 만들 것입니까. 모두 어려운 일이니 함부로 논의할 수 없을 듯합니다.

계해년¹⁶⁸³의 등록을 살펴보니, 수의 중에, ‘나라에서 전조^{田祖(신농씨)}에게 내년을 기원한다는 글이 있으니, 내년을 기원한다는 것은 풍년을 기원한다는 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자가 아니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곡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내년을 기원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나, 내년을 기원한다고 하지 않고 단지 기곡제를 사직에 행한다고 말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해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일이 망극하고, 내년의 걱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비치는 곳이라면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상소에 아뢴 내용은 의미가 없지 않으나, 나라의 큰일은 제사이고, 또 예전에 없던 막중한 전례이니, 신의 조^{曹(예조)}에서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게 수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36년 10월 20일 우승지 김성적^{金盛迪}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택을 받았다. 이 일에 근

曰祈年，而只稱祈穀行祭於國社者，意有所在歎，目今連天大侵，民事罔極，來歲之憂，有不可言，三光所臨，宜無不禱。今此疏陳不無意見是白乎矣，國之大事在祀，且係莫重無前之典禮，則臣曹不敢擅便，議于大臣而處之，何如？”康熙三十六年，十月二十日，右承旨臣金盛迪次知。啓依允事據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議于大臣，則領中樞府事南九萬以爲：‘國運不幸，大饑荐臻，如有可致豐稔之道，則宜無所不用其極。而先王命祀，各有分限，是以孔子以其昭王之不祭河，爲知大道，季氏之旅泰山，爲不如林放。近在山川尙然，而況可以遠及於天宗者乎？祈穀於社稷，雖出一時義起之禮，而以此爲證，又祭天宗，則其將又祭於社稷乎？祭既涉僭，位無其所，臣之淺慮，恐難舉行。伏惟上裁。’左議政尹趾善以爲：‘古禮有祈穀祈年之文，而我國祀典，並無所

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대신에게 수의하
니 영중추부사 남구만^{南九萬}은,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큰 흉년이 겹쳤으니, 만약
풍년을 부를 수 있는 방도라면 모든 방법을 다 해
야 합니다. 그러나 선왕이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한
것은 각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는 소
왕^{昭王}이 황하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을 보고 큰 도
를 안다고 하였고, 계씨^{季氏}가 태산^{泰山}에 제사를 지
내자 임방^{林放}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산
천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멀리 천종의 경우
는 어떻겠습니까. 사직에 기곡제를 지내는 것이 비
록 한때 의기^{義起}로 시행한 예이지만, 이를 증거로 삼
아 또 천종에게 제사 지낸다면 장차 또 사직에 제
사 지낼 것입니까. 제사가 이미 참람하고 신위가 없
으니 신의 얕은 생각으로는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
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은,

‘고례^{古禮}에 기곡제를 지내고 내년을 기원한다는 글
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전에는 모두 실려 있지 않
습니다. 중간에 비록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기곡제
를 처음 시행한 일이 있으나 하늘에는 제사 지내지
않고 단지 사직의 신에게만 기도하였으니, 그 뜻은
비록 고례를 본떴으나 그래도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글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만약 기곡제를
이미 시행하였다는 근거로 또 「월령」에 실려 있는 내

載, 中間雖因聖教, 創行祈穀之事, 而不祭于天, 只禱於社稷之神, 其意雖倣於古禮, 而猶不專用祭天之文也. 今者, 若以已行祈穀之祭証, 又欲舉「月令」所載祈年之典, 則其將一依禮經, 直祭于日月星辰耶? 天神三光, 既無國典, 祈祀之文, 則輕議舉行, 或不無僭諂之嫌. 臣素昧禮學, 敢以臆見仰對. 伏惟上裁.’ 行判敦寧府事徐文重以爲: ‘考據古禮, 有不可舉行之意, 諸大臣, 既已獻議矣. 臣之愚意, 國家爲民, 祈年之道, 雖無所不用其極, 我朝祀典所不載之舉, 不可以一時所見, 義起創行, 其失不但僭逼之嫌而已. 伏惟上裁.’ 右議政崔錫鼎以爲: ‘孟冬祈年之制, 見於『戴記』, 而天宗註曰, 日月星辰, 則揆以典禮, 有非方國之所可. 進言者, 以祈穀之祭, 亦是天子之事, 而既已行之, 爲斷行祈年之証, 此亦有不然者, 昨年祈穀之舉, 寔出於聖上軫恤民

년을 기원하는 전례를 거행하고자 한다면, 장차 한결같이 『예기』에 따라 일월성신에 곧장 제사 지낼 것입니다. 천신과 일월성신은 나라의 법전에 제사 지낸다는 글이 없으니, 함부로 거행하기를 논의하면 참람하다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신은 평소 예학에 어두워 감히 억측으로 대답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행 판돈녕부사 서문중徐文重은, ‘고례에 근거하면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을 대신들이 이미 헌의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나라가 백성을 위하여 내년을 기원하는 방도는 비록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일시적인 소견으로 의기로 처음 시행할 수 없으니, 그 잘못은 비단 참람하다는 혐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우의정 최석정崔錫鼎은, ‘10월에 내년을 기원하는 제도는 『대대례기大戴禮記』에 보이고, 천종의 주석에 일월성신이라고 하였으니, 전례로 헤아리면 제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뢴 사람은 기곡제 역시 천자의 일이지만 이미 시행하였으니 내년을 기원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았으나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기곡제는 실로 성상께서 농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모든 방도를 다 하는 의도에서 나왔고, 자리가 상제가 아니라 사직이었으니, 이것은 일시적으로 의기에

事，靡不用極之意，而位所不於上帝而社稷，則此乃一時義起禮，初非有邦常秩之文。至於祈年一款，所祭乃在三光，尊諸侯不祭之義，與上帝無別，今若又復折衷改定祭所，則無於禮之禮，有難每創舉，且既行之後，便成邦典不可不致愼於其初。臣之愚見，恐難輕議。伏惟上裁。’ 行判中樞府事申翼相，病不收議，領議政柳尙運，領敦寧府事尹趾完，並在外，不得收議。大臣之意，如此上裁，何如？” 康熙三十六年，十月二十一日，行都承旨臣金載顯次知。啓今姑置之爲良如教。

서 시행한 예이며 애당초 나라에 항상 있는 부류가 아닙니다. 내년을 기원하는 일은 제사 지내는 대상이 일월성신입니다. 제후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에 따르면 상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또 절충하여 제사 지내는 곳을 다시 정한다면, 예법에 없는 예를 매년 새로 만들어 거행하기 어렵고, 또 시행한 뒤에 나라의 전례가 되니, 애초에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함부로 논의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습니다. 행 판중추부사 신익상^{申翼相}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고, 영의정 유상운^{柳尙運}, 영돈녕부사 윤지완^{尹趾完}은 모두 지방에 있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강희 36년 10월 21일 행 도승지 신김재현^{金載顯}이 담당하여 아뢰니 지금 우선 놓아두라고 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11월 12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내년 보리 농사의 득실은 겨울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일^{臘日} 전 30일이

丁丑十一月十二日

● 祈雪祭

一. 曹啓曰:“政院啓辭:‘來歲牟麥之得失,係於冬雪之多少故臘前三旬,爲占豐之驗,而今者大小雪節候已過,臘日不

풍년을 점치는 증거가 되는데, 지금 대설大雪과 소설小雪의 절기가 이미 지났고 낱일이 머지않았는데 쌀락눈이 내리다가 곧바로 녹으며 또 찬비가 내리니, 밀과 보리가 얼어 상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앞으로의 농사 걱정이 참으로 절박합니다. 기설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겨울이 반이나 지나려 하는데 수차례 쌀락눈이 내린 뒤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보리가 얼어 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의 걱정이 참으로 몹시 절박합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때에는 기설제를 설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종묘·사직·북교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11월 14일

● 기설제를 정지하다.

예조의 단자에,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기설제를 이달 16일 설행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어제 이미 큰 눈이 내렸고,

遠,而微霰旋消,冷雨又下,兩麥未免凍傷,前頭農事之憂,誠甚切迫,祈雪之舉,不容少緩,令該曹,稟旨舉行,何如?’
上曰:‘依爲之’事,命下矣.冬節將半,數次微霰之後,更不下雪,牟麥凍傷,已不可言,而來歲之憂,誠甚切迫.從前如此之時,輒有祈雪祭設行之例,今亦依此例,宗廟·社稷·北郊,遣重臣,不卜日,來十六日設行之意,分付,何如?” 傳曰:“允.”

十一月十四日

● 祈雪祭停

一. 曹單子:“因政院啓辭,祈雪祭,今月十六日設行事,啓下矣.昨日大雪已下,前頭冬節,

앞으로 겨울철의 남은 날이 많으니, 지금은 우선 정지하고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정축년¹⁶⁹⁷ 12월 7일

● 기곡제

예조가 아뢰기를,
“매번 연초에 특별히 대신으로 하여금 기곡제를 설행하게 하는 것을 영원히 정식으로 삼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 기곡제의 전례는 상신일^{上辛日}에 사직에서 지냈는데, 오는 1월 5일이 상신일입니다. 이날 기곡제를 대신을 보내 사직에서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인년¹⁶⁹⁸ 3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징^{朴鼎}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안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餘日尙多，今姑停止，以爲觀勢舉行之地，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十二月初七日

● 祈穀祭

一. 曹啓曰：“每於歲初，特令大臣設行祈穀祭，永爲定式事，命下矣。曾前祈穀祭例，以上辛日行於社稷，來正月初五日，乃是上辛日也。以此日祈穀祭，遣大臣設行於社稷之意，知委，何如？” 傳曰：“允。”

戊寅三月二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朴藏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징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9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징의 수본에,
 ‘오늘 정오 무렵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3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지귀영^{池貴榮}의 첩
 정에,
 ‘이달 25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4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朴藪手本內：‘今日下雨，水標
 看審，則二尺九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藪手本內：‘今日午間下雨，
 水標看審，則三尺七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三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池
 貴榮牒呈內：‘今月二十五日下
 雨後，本津常流水基良中，以
 布帛尺，四尺五寸加漲溢’是如
 爲白臥乎事.” 啓.

무인년¹⁶⁹⁸ 4월 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4월 2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5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戊寅四月初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四月二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申守命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5월 5일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지귀영^{池貴榮}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2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5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五月初五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池貴榮牒呈內: ‘今番下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十二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崔斗萬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무인년¹⁶⁹⁸ 5월 2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5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2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五月二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무인년¹⁶⁹⁸ 5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5월 3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1일

●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지귀영^{池貴榮}의 첩
 정에,
 ‘오늘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7척 4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戊寅五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三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初一日

● 漢江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池
 貴榮牒報內：‘今日下雨後，本
 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
 十七尺四寸加漲溢’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六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五寸流下’ 是
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지귀영^{池貴榮}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강물이 불어 넘쳐 강

戊寅六月初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池
貴榮牒呈內: ‘今番下雨後, 本
津江水漲溢, 江邊人家沈水,
不得尺量’是如爲白臥乎事.”

변의 인가가 침수되어 측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6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兪萬世}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7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의 수본에,

啓.

六月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二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兪萬世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十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7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7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7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啓.

七月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
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啓.

戊寅七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手本內: ‘去夜下雨, 水標
看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啓.

七月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석^{林石}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석^{林石}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을철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침에 비가 너무 많
 이 내렸으니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해당 조^曹로 하여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거행하라고 분부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기세가 예사
 롭지 않아 홍수가 날 우려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기청 사문영제를 설행하겠다는 뜻을 아뢰려고 하였
 는데, 전교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성상의 하교대로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부터 시작하여 3일 뒤 중지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林石手本內：‘去夜下雨，水標
 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石手本內：‘去夜下雨，水標
 看審，則十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啓.

● 祈晴

一. 曹啓曰：“傳曰：‘秋節已屆，
 而朝雨過多，祈晴之舉，不容
 少緩，令該曹四門祭，不卜
 日，該行事，分付’事，傳教矣。
 卽今雨勢非常，極備之憂，有
 不可勝言者，祈晴四門祭，
 設行之意，方欲啓稟矣。傳教
 內辭緣如此，依聖教，不卜日，
 來二十日爲始，三日而止事，分
 付，何如？” 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무인년¹⁶⁹⁸ 7월 1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만흥^{李晩興}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4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인년¹⁶⁹⁸ 8월 1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소동^{李小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5월 3일

예조의 단자에,

七月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李
晩興牒呈內: ‘今番下雨後,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十四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
臥乎事.” 啓.

八月初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小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己卯五月初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5월 16일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 여름 이래 비가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으나
간혹 비가 조금 내렸기에 완전히 메마르지는 않았으
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흘 사이에 서늘한 바
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합니다. 6월
이 가까운데 파종할 때를 놓쳤으니 앞으로의 농사
가 지극히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
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5월 1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五月十六日

● 初次

一. 曹啓曰：“今年春夏以來，
雨澤雖不周洽，或有小雨，不
至全然旱乾，故有所等待矣。
旬日之間，淒風連吹，雨意漠
然，節近季夏，播種愆期，前頭
農事，極爲可慮。祈禱之舉，不
宜少緩，初次祈雨祭，風雲雷
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
山·漢江等處，不卜日，來十九
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
曰：“允。”

五月十九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5월 2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설행한 뒤 비가 내릴 조짐이 아득하니, 농가의 형세가 몹시 절박합니다.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5월 25일

● 4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 및 희생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 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稷·宗廟·北郊，不卜日，來二十二日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己卯五月二十二日

● 三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設行之後，雨意邈然，農家事勢，萬分切急。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二十五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五月二十五日

● 四次. 遣大臣

一. 曹單子：“四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嶽山·松嶽山等處，遣重臣，不卜日，來二十九日設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

하니,
 “3차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막
 연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이날 설행하라.”
 하였다.

● 양진 등 다섯 곳에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를 양진 등 다섯 곳에 오는 29일 설행하
 겠다는 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3차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막
 연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이날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양진 등 다섯 곳은 지금
 우선 정지하고 성상의 하교대로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4차 기우제를 2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5월 29일

● 사직 친제

이번 5월 29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
 시하였을 때 오는 6월 3일 사직 기우제를 친히 행하
 겠다고 탑전에서 하교하였다. 【5차 기우제를 지낼 양
 진 등 다섯 곳을 입제한 뒤 비국을 인견하였을 때

何如?” 啓. 三次祈禱之後, 雨
 意愈漠, 民事渴悶, 宗廟·社稷
 ·北郊, 遣大臣, 以此日設行
 爲良如教.

● 楊津等五處停止

一. 曹啓曰: “四次祈雨祭, 楊
 津等五處, 來二十九日設行事
 單子, 傳曰: ‘三次祈禱之後,
 雨意愈漠, 民事渴悶, 宗廟·
 社稷·北郊, 遣大臣, 以此日設
 行’事, 命下矣. 楊津等五處,
 今姑停止, 依聖教, 宗廟·社稷
 ·北郊, 遣大臣, 四次祈雨祭,
 以二十九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五月二十九日

● 社稷親祭

一. 今五月二十九日, 大臣·備
 局堂上引見入侍時, 來六月初
 三日, 社稷祈雨祭親行事, 榻
 前下教. 【五次楊津等五處入

하교하였으므로 단자는 올리지 않고 계자인을 찍어 내렸다.】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 기우 친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3일 설
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이날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전하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오는 6월 3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전하께서는
오늘부터 별전에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
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
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
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오는 6월 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 관
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오늘부터 모두 본
사에서 묵으며 이틀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

啓後，因備局引見時下教，故
單子則不爲，踏啓字以下。】

一．曹啓曰：“社稷祈雨親祭，
不卜日，來六月初三日設行事，
命下矣。依聖教，以此日舉行
事，分付各該司之意，敢啓。”
傳曰：“知道。”

● 殿下齋戒

一．曹單子：“來六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
自今日散齋二日於別殿，致齋
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
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
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
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
行爲良如教。

● 享官齋戒

一．曹單子：“來六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
及近侍之官應從升者，自今日，
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

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雘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낼 때 높고 낮은 집사 관원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재소齋所에 도착하면 중사·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1일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는 3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2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절목대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의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雘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私習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隸儀，初二日質明，先詣祭所爲白有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來初三日，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二日質明，先詣享所，依節目，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

● 보부

1. 보부報府.

1. 오는 6월 3일 사직 기우 천제를 지내겠다고 계하였다.

1.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오늘부터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한다.

1. 향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흑단령 차림으로 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대가가 도착하면 지영한 뒤 중사 및 근사와 함께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한다.

● 아헌

예조가 아뢰기를,

“내달 3일 기우 천제를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아헌관은 세자가 하는 것이 전례인데, 지금 어린 나이이므로 형세상 예를 행하기 어렵고, 민간에 꺼려야 할 질병이 치성하니, 출궁하고 환궁할 때에 지영祇迎하고 지송祇送하는 절목도 모두 근래의 전례대로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良如教.

● 報府

1. 報府

1. 來六月初三日, 社稷祈雨親祭事, 啓下.

1.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自今日, 並散齋二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 各於本司清齋一宿事.

1. 諸享官, 除隸儀, 以黑團領, 初二日質明, 先詣祭所,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 大駕將至祇迎後, 與中使及近侍, 並爲私習儀事.

● 亞獻

一. 曹啓曰: “來月初三日, 祈雨親祭設行事, 命下矣. 亞獻官, 世子例爲行之, 而方在沖年, 勢難行禮, 且閭閻拘忌之疾方熾, 出還宮時, 祇迎·祇送節目, 並依近例不爲磨鍊之意, 敢啓.” 傳曰: “知道.”

기묘년¹⁶⁹⁹ 6월 4일

● 5차 기우제는 중신을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천천히 기다릴 수 없다.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라고 분부하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어제 사직단에서 친히 기도하신 뒤 계속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기에 우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기도해야 하는 일을 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았으니 이전에 계청한 대로 5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 설행하며, 전사관 겸 대축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 및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6월 5일

● 정전을 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승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이렇게 보니,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정성이 말 밖에 넘쳤으니, 보고 듣는

己卯六月初四日

● 五次重臣

一. 曹啓曰：“傳曰：‘旱災至此，不宜遲待，祈雨祭連次設行事分付’事，命下矣。昨日社壇親禱之後，連有雨意，姑待一兩日，欲請應行祈禱之舉矣。卽者上教如此，依前啓請，五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嶽山·松嶽山等處，遣重臣，不卜日，來初八日設行，典祀官兼大祝，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何如?” 傳曰：“允。”

六月初五日

● 避殿

一. 曹啓曰：“卽此見下政院之教，自上憫旱，恤民哀痛惻怛之誠，溢於言表，凡在瞻聆，孰不感動? 自今日避正殿·減

사람이라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니, 술을 금지하고 복을 치지 않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도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복을 치지 않는 일은 옛날의 전례가 그러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 복을 치는 일의 전례

예조가 아뢰기를,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일들을 거행하겠다는 본조의 초기에 대해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복을 치지 않는 일은 옛날의 전례가 그러한지 모르겠다.’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니 임술년¹⁶⁸²과 계해년¹⁶⁸³에는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라는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복을 치지 않는 일 역시 계품하여 일체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을해년¹⁶⁹⁵과 정축년¹⁶⁹⁷에는 전교로 인하여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며 복을 치지 않는 등의 일을 일체 거행하였습니다. 전례는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 복을 치지 않는 일을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膳，則禁酒·勿擊鼓·撤樂等事，亦令各該司，一依前例舉行，何如？”傳曰：“依啓，勿擊鼓一款，未知古例然耶。”

● 擊鼓前例

一. 曹啓曰：“以本曹，避正殿·減膳等事舉行草記，傳曰：‘依啓，勿擊鼓一款，未知古例然耶’事，命下矣。取考前例，則壬戌癸亥兩年，因減膳禁酒之上教，勿擊鼓一款，亦爲啓稟一體舉行，而乙亥丁丑兩年，則因傳教，減膳·禁酒·勿擊鼓等事，一體舉行矣。前例，則避殿減膳之時，勿擊鼓一款，曾無不爲舉行之時，敢啓。”傳曰：“知道。”

기묘년¹⁶⁹⁹ 6월 6일

● 북을 치지 않는 일을 거행하지 않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예조가 초기를 올려 북을 치지 않는 일에 대해 가까운 전례에 근거하여 아뢰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정전을 피하고 음악을 중지하는 일은 본디 반성하고 줄이는 뜻에서 나왔으나, 이것은 대가 앞의 고취^{鼓吹}와 대궐의 음악 등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북을 치는 일은 물시계를 확인하여 시간을 정하는 일이니, 종과 북으로 즐기는 일과 똑같이 논할 수 없습니다. 『주례^{周禮}』에 ‘흉한 재해를 만나면 북을 치는 예가 있다.’라는 글이 있으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식^{日食} 때 징을 치는 것은 옛사람이 양기^{陽氣}를 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양이 성하면 가뭄이 되고, 음이 성하면 홍수가 되니, 이 또한 옛 선비의 말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뭄으로 인하여 북을 치지 않고 대신 징을 치는 것은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의리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의 옛일은 먼 옛날이라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예전에 들으니 인조조 기묘년¹⁶³⁹ 무렵 재해를 만나 정전을 피할 때 음악을 중지하고 북을 치지 않는 일을 함께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그 곡절이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때 여쭙어 정한 데서 나온 것이고, 필시 의미를 깊이 고찰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 뒤 답습하여 전례가 되었으니, 자세히 살피지 못한 소치에 불과합니다. 법전에 실린 내용

己卯六月初六日

● 勿擊鼓勿爲舉

一. 備邊司 啓曰: “禮曹草記, 勿擊鼓一款, 援據近例, 啓稟矣. 第念避災撤樂, 固出於修省貶損之義, 而此指駕前鼓吹·庭宴樂等事而言. 至於昏晝擊鼓, 乃所以辨更漏而定時辰, 不可與鍾鼓·飾喜, 一例論之. 『周禮』‘凶裁之禮, 有擊鼓呼器’之文, 則其義可知也. 且日食擊金, 古人以爲救陽氣徵. 陽盛爲旱, 陰盛爲水, 亦著於先儒之說, 則因旱勿擊鼓, 而代以擊金, 亦乖於裁輔陰陽之義. 國朝故事, 久遠難詳, 曾聞仁祖朝己卯年間, 遇災避殿時撤樂·勿擊鼓一款, 並爲定奪云. 雖未知其時委折之如何, 而似出於一時稟定, 未必深考意義. 其後承沿成例, 不過俾欠照管之致, 非如法典所載, 不宜因引不改. 今此勿擊鼓一款, 使之勿爲舉行宜當, 敢啓.” 傳曰: “凡避殿時勿擊一款, 殊無意義, 故昨日

이 아니니 그대로 따르면서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복을 치지 않는 일은 거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전을 피할 때 복을 치지 않는 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어제 초기에 대한 비답에서 말한 것이다. 계사의 내용이 참으로 옳으니 그리하라.”
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6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서울과 지방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다.

이번 6월 5일 죄수를 관대하게 처결하고 대신과 비
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김
진귀^{金鎭龜}가 아뢰기를,

“지금 삼가 비망기의 말단을 보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단을 설치하고

草記批答中, 有所云云矣, 啓
辭誠然, 依爲之.”

己卯六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東鳴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癘疫死亡人中外賜祭

一. 今六月初五日疏決, 及大
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禮
曹判書金鎭龜所啓: “即伏見
備忘末端, 以癘疫死亡人等設
壇賜祭事, 不可一向遲待其
寢息爲教, 所當即爲舉行, 故

제사를 지내는 일을 전염병이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하교하셨으니, 즉시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정축년¹⁶⁹⁷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는 동교와 서교에 따로 근신을 보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상주 없는 죽은 사람들에게 동서남 세 곳에 역시 근신을 보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으나 두 차례 서울에서만 설행하고 지방에서는 설행하지 않았습니다. 1월의 비망기에 이미 근신을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보내 제사를 지내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도와 개성부^{開城府}·강화부^{江華府}에 나누어 보내야 하는데, 서울에는 몇 곳에 제단을 설치해야겠습니까? 예전에 지방의 전사자가 있는 곳에 제사를 지낼 때 시종을 역임한 사람을 제관으로 차임하여 보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차임하여 보내겠습니다. 만약 여러 도의 감사에게 제사 지낼 곳을 정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제관을 내려보내면 일이 장차 더욱 지체될 것이니, 지금 신의 조^曹(예조)에서 각 도의 중간에 있는 고을에 제사 지낼 곳을 정하고, 서울에서 제관을 나누어 보내며, 그 집사와 제물은 본도에서 마련하여 기다리라고 분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좌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아뢰기를,

“예전에 도성에서 제사 지낼 곳은 두 곳을 정하기도 하고 세 곳을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염병

取考前例，則丁丑年饑死人等處，別遣近臣於東西郊，設壇賜祭，上年十月無主死亡人等，東西南三處，亦遣近臣，設壇賜祭，而兩度只設於京都，外方則不爲設行。正月備忘中，既有分遣近臣於中外，賜祭之教。今番則當分遣於諸道及開城·江華等府，而京都則設壇於幾處乎？曾見外方戰亡處，賜祭時，曾經侍從人，差遣祭官，今亦依此例差遣，而若令諸道監司，定其設祭處，報聞然後，下送祭官，則事將益致遲延。今自臣曹，取各道居中邑，定爲設祭之所，自京分遣祭官，而其執事與祭物，則自本道備待事分付，則似爲合宜矣。”左議政崔曰：“曾前都城祭所，或定二所，或定三所，今番則竊疫死亡，八路同然，當分送侍從而致祭，京中則設壇於東西郊二處，曾聞士族中男女，異其位置，一處各祭以十餘器【常漢男女，亦異其位置，各祭十餘器】數而祭之矣。今

으로 사람이 죽기는 팔도가 마찬가지로이니, 시종신을 나누어 보내 제사를 지내고, 서울은 동교와 서교 두 곳에 제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으니 사족 중에 남녀는 그 위치를 달리하고 한 곳에 각기 십여 그릇【상민 남녀 역시 그 위치를 달리하고 각기 십여 그릇으로 제사를 지냈다.】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해당 조로 하여금 이대로 처음 정한 날에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은 동교와 서교 두 곳에서 설행하고, 지방에서는 그 도의 중간에서 설행하며, 전사자에게 제사 지낸 전례대로 시종을 역임한 사람을 제관으로 차임 하여 보내라.”

하였다. 김진귀가 아뢰기를,

“각 도와 두 도都에는 이렇게 분부하여 거행해야 하나, 서울의 동교와 서교는 이미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냈는데, 경기도는 다시 따로 제사 지내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판부사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강화부와 개성부에 이미 따로 설행하게 하였으니 경기는 일체 따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 역시 따로 설행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작년과 금년에 서울과 지방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亦令該曹, 依此初定之日舉行, 何如?” 上曰: “京中則東西郊二處設行, 外方則各其中道設行, 而依戰亡處賜祭例, 以待從人, 差遣祭官, 可也.” 金曰: “各道及兩都, 當以此分付舉行, 而京都東西郊, 既爲設壇賜祭, 則京圻一道, 更無別爲賜祭之事乎?” 判府事柳尙運曰: “江華·開城府等處, 既令別設, 則京圻似當一體別爲賜祭矣.” 上曰: “京圻亦別爲設行, 可也.” 曹啓曰: “昨今年中外癘疫死亡人等處, 遣近臣賜祭事, 命下矣. 京中則東西郊二處, 六月初十日設行, 開城府·江華府, 並六月十三日設行, 則京圻則水原定處所, 六月十二日設行, 忠清道則公州, 黃海道則海州, 江原道原州定處所, 並六月十五日設行, 全羅道則長城, 慶尙道大丘, 平安道則安州定處所, 並六月十九日設行, 咸鏡道則咸興定處所, 六月二十日設行, 而祭物則比常時厲祭, 從優磨鍊事,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근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서울은 동교와 서교 두 곳에서 6월 10일 설행하고, 개성부와 강화부는 모두 6월 13일 설행하며, 경기는 수원으로 장소를 정하여 6월 12일 설행하겠습니다. 충청도는 공주公州, 황해도는 해주海州, 강원도는 원주原州로 장소를 정하고 모두 6월 15일 설행하며, 전라도는 장성長城, 경상도는 대구大丘, 평안도는 안주安州로 장소를 정하여 모두 6월 19일 설행하며, 함경도는 함흥咸興으로 장소를 정하여 6월 20일 설행하겠습니다. 제물은 평상시 여제厲祭에 비해 넉넉하게 마련하라고 모두 통지하겠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관문關文의 결어結語에, “계하받은 내용을 상고하여 거행하십시오. 집사관과 제물 및 제단을 설치하는 등의 일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향축香祝을 내려보내면 즉시 정한 날짜에 설행하고, 공문이 도착한 일시에 대해 공문을 보내십시오.”

하였다. 흘기笏記【이 흘기는 착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 아래의 신사년¹⁷⁰¹ 흘기에 보인다.】는 다음과 같다.

알자謁者가 집사들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들은 손을 씻는 자리에 나아간다.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데리고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는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담당 관원에게 시행을 청한다. 작헌례酌獻禮를 행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

並爲知委之意，敢啓.” 傳曰：“知道.” 行關結語：“啓下內辭緣，相考舉行爲跡，執事官及祭物設壇等事，預爲整待，香祝下送，即時所定日設行爲乎矣，到付日時移文向事.” 笏記【此笏記，有差誤不用，下見辛巳笏記.】謁者，引諸執事入就位. 諸執事詣盥洗位. 各就次.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行酌獻禮. 謁者，引獻官詣盥洗位. 引詣樽前. 引詣神位前，東向立，三上香，連奠三爵. 次詣西向立. 大祝講祝訖. 引降復位.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 謁者，引獻官出.

도하여 손을 씻는 자리로 나아간다. 술동이 앞으로 인도하여 나아간다. 신위 앞으로 인도하여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고 세 번 향을 올리고 연달아 석 잔을 올린다. 다음으로 서쪽으로 향하여 선다. 대축대(大축대)이 축문을 읽는다.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예가 끝났다고 아뢴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기묘년¹⁶⁹⁹ 6월 9일

●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를 조금 물리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근신을 보내 제사 지내는 날을 개성부와 강화부는 6월 13일, 경기는 6월 12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6월 15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는 6월 19일, 함경도는 6월 20일 설행하겠다고 날짜를 배정하여 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문을 지어 올릴 때 지체되고 말았으니 먼 지방의 여러 곳은 날짜가 촉박하여 할 뜻을 날짜를 배정해 계하받았습니다. 제문을 지어 올릴 때에 지연됨을 면치 못하여 먼 외방의 여러 곳은 일자가 급박하여 비에 막힐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6월 1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는 6월 22일, 함경도는 6월 23일로 조금 물려 설행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己卯六月初九日

● 癘疫人賜祭差退

一. 曹啓曰：“癘疫死亡人等處，遣近臣賜祭之日，開城府·江華府六月十三日，京圻六月十二日，忠清道·黃海道·江原道，六月十五日，全羅道·慶尙道·平安道，六月十九日，咸鏡道，六月二十日設行之意，排日啓下矣。祭文撰進之際，未免遲延，遠外諸處，則日子急迫，不無恐水之慮。忠清道·黃海道·江原道，則六月十八日，全羅道·慶尙道·平安道，則六月二十二日，咸鏡道，則六月二十三日，差退設行之意，敢啓。”傳曰：“知道。”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6월 11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록 비가 조금 내렸으나 곧 날이 개었으니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곡식이 소생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6차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에도 역시 전례대로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말

예조의 단자에,

“진암 분시를 검사하는 일로 경기 양주에 내려가는 예조 낭청이 탈 말과 짐말 및 색리가 탈 말들은 전례대로 병조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己卯六月十一日

● 六次

一. 曹啓曰：“雖得小雨，旋即開霽，久旱之餘，無望蘇枯，更禱之舉，似不可已。六次祈雨祭，不卜日，來十五日，楮子島·龍山江·冠岳山，遣重臣，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亦爲依例設行，而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事，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何如？”傳曰：“允。”

● 馬

一. 曹單子：“辰岩焚柴檢飭事，京圻楊州地下去曹郎廳騎卜馬，及色吏所騎馬等，依例令兵曹題給，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기묘년¹⁶⁹⁹ 6월 1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박연·화적연은 이미 향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는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6차 기우제를 지낼 박연과 화적연 두 곳은 어제
이미 향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장소는 지금 향
을 받아야 하나 큰비가 한창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때는 아뢰어 정지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미 먼저 향을 받은 곳은 어떻게 해야겠
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는 이미 향을 받았으나 오늘은 큰비가 내리는
데 향을 받는다면 성실하지 않은 일이니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六月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東鳴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朴淵·禾積淵, 已受香, 其餘停止

一. 政院啓曰: “六次祈雨祭,
朴淵·禾積淵兩處, 昨已受香.
其餘諸處, 則今當受香, 而大
雨方注. 在前如此之時, 有啓
稟停止之事, 而今番則已有先
爲受香處, 何以爲之?” 傳曰:
“昨日則既已受香, 而今日大
雨中受香, 事欠誠實, 停止, 宜
矣.”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6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전종건^{全宗建}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7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7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金東鳴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己卯六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全
 宗建牒呈內：‘今番下雨後，本
 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
 七尺七寸加漲溢’是如爲白臥
 乎事。” 啓.

七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申守命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기묘년¹⁶⁹⁹ 7월 5일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12일은 입추 절기이니, 정전^{正殿}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7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7월 1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8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七月初五日

● 還御正殿

一. 曹啓曰：“今月十二日，乃
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膳
等事，依例舉行之意，分付，何
如？”傳曰：“允。”

七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申守命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啓.

七月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申守命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7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7월 1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守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3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전종건^{全宗建}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크게 불어 본진^{本津} 평

七月十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申守命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己卯七月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中部水標直申守
命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
審, 則六尺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全
宗建牒呈內: ‘今番下雨後, 江
水大漲,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十七尺加漲溢’是如

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_{布帛尺}으로 17척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₁₆₉₉ 7월 2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가부리_{林加夫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₁₆₉₉ 윤7월 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개부리_{林介夫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1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爲白臥乎事.” 啓.

七月二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林加夫里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二尺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閏七月初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林介夫里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三尺一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기묘년¹⁶⁹⁹ 윤7월 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두만^{崔斗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묘년¹⁶⁹⁹ 윤7월 8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이 든 뒤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 수재가 되
었기에 들판의 곡식이 잠기고 손상되는 우환이 많다
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기가 윤달 가을이 된 지
도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 간혹 개고 간혹 비가
내리며 아직 날이 갠 가뭄이 없습니다. 기청 사문영
제^{祈晴四門禳祭}를 택일하지 말고 10일부터 설행하여 3
일 뒤 중지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閏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斗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閏七月初八日

● 祈晴

一. 曹啓曰：“旱乾之餘，淫雨
過多，因成水災，田野禾穀，多
有漂沒損傷之患云，而至今節
屆閏秋，亦已多日，或晴或雨，
尙無開霽之望，祈晴四門禳
祭，不卜日，初十日爲始設行，
三日而止事，分付，何如？” 傳
曰：“允。”【終日膳肉沒數上曹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종일의 번육(脯肉)을 전 부 예조에 바치라고 사문(四門)의 전사관(典祀官)에게 감 결을 보냈다.】

기묘년¹⁶⁹⁹ 윤7월 9일

● 기청제를 정지하다.

비변사의 계사에,
“예조의 계사로 인하여 이번 10일 기청제를 설행하 라고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입추 이후에 비가 오랫동안 그치지 않으니, 이것이 해당 조에서 전례에 따 라 영제를 설행하도록 청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올 해는 절기가 조금 늦고 농부가 호미를 놓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니, 비록 비가 열흘 동안 이어지더라도 그치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형세는 농사에 해가 되는 지점에 이르지 않는 듯하니, 우선 앞으로 보 아 다시 성상의 뜻을 여쭙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비록 이미 윤택을 내리셨으나 신들의 뜻 은 이와 같으니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답하였다.

기묘년¹⁶⁹⁹ 11월 28일

● 기곡제

예조의 단자에,
“오는 1월 7일 상신일(上辛日) 사직 기곡제(社稷祈穀祭)를 전

事, 捧甘四門典祀官】

己卯閏七月初九日

● 祈晴停

一. 備邊司啓辭: “因禮曹啓辭, 今初十日, 祈晴祭設行事, 允下矣. 立秋之後, 久不止, 此該曹之所以循例請設祭, 而今年節序差晚, 農人之釋鋤未久, 雨雖連旬, 亦多開霽之時, 即今形似不至於病農害穀, 姑觀前頭, 更爲稟旨舉行, 似爲合宜. 雖已允下, 臣等之意, 如此, 敢此仰稟.” 答曰: “依爲之.”

十一月二十八日

● 祈穀祭

一. 曹單子: “來正月初七日, 上辛社稷祈穀祭, 依例, 遣大

례대로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진년¹⁷⁰⁰ 2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1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2월 18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윤홍찬^{尹弘燦}의 첩

臣設行事，知委，何如？”啓依
所啓施行爲良如教。

庚辰二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七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啓。

二月十八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尹
弘燦牒呈內：‘今月十六日下雨

정에,
 ‘이달 16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2척 7촌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3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3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명^{金東鳴}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後, 本津常流水基良中, 尺量
 則以布帛尺, 十二尺七寸加漲
 溢’是如爲白臥乎事.” 啓.

庚辰三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東鳴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三月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東鳴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경진년¹⁷⁰⁰ 5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乙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5월 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乙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5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우주^{梁宇柱}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五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乙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初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乙金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十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梁宇柱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우주^{梁宇柱}의 수본에,
 ‘오늘 오후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5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우주^{梁宇柱}의 수본에,
 ‘어제 저녁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5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최감송^{崔甘松}의 첩
 정에,
 ‘이달 16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0척 7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宇柱手本內：‘今日午後下
 雨，水標看審，則五尺五寸流
 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五月十四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宇柱手本內：‘昨夕下雨，水
 標看審，則七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庚辰五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崔
 甘松牒呈內：‘今月十六日下雨
 後，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十尺七寸加漲溢’是如爲
 白臥乎事。” 啓.

경진년¹⁷⁰⁰ 5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전에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5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6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두만^{尹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8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五月二十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日朝前下
雨，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
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於叱同手本內：‘去夜下雨，
水標看審，則三尺二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斗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八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두만尹斗萬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1700 6월 2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두만尹斗萬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1700 7월 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斗萬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二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斗萬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初四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경진년¹⁷⁰⁰ 7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진년¹⁷⁰⁰ 11월 20일

기곡제

예조의 단자에,
“오는 1월 3일 상신일^{上辛日} 사직 기곡제^{社稷祈穀祭}는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진년¹⁷⁰⁰ 12월 6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눈이 쌓이면 풍년의 징조라고 예로부터 말하였습니
다. 그런데 올해는 한 해가 이미 늦어졌는데 한 번
눈이 내린 뒤로 연일 흐리고 비가 내려 가을에 심은
보리가 필시 얼어 상할 우환이 있으니, 내년의 걱정
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

庚辰七月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十一月二十日

● 祈穀祭

一. 曹單子：“來正月初三日，
上辛社稷祈穀祭，遣大臣設行
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
行爲良如教.

十二月初六日

● 祈雪祭

一. 曹啓曰：“積雪驗豐，自古
有言，而今年歲序已晏，一番
下雪之後，陰雨連日，秋耕牟
麥，必有凍傷之患，嗣歲之憂，
不可勝言。自前如此之時，屢
有祈雪祭設行之例，宗廟·社

는 누차 기설제를 설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종묘·사직·북교에 중신을 따로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2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징^{朴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1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4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稷·北郊，別遣重臣，不卜日，來初九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辛巳二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朴澄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一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四月初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申壽命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신사년¹⁷⁰¹ 4월 22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월 22일 주강^{畫講}에 입시하였을 때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달 10일 비
가 내렸는데 비록 충분히 적시지는 않았으나 열흘
사이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지 않았으므로 기다렸습
니다. 근래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
짐이 막연한데 망종^{芒種}이 다가오도록 파종하지 못
하였으니 앞으로 농사가 지극히 걱정입니다. 결정
한 대로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
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서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1차 기우제

이번 4월 22일 주강에 입시하였을 때 참찬관 홍수
주^{洪受疇}가 아뢰기를,

“근래 가뭄의 재해가 몹시 심하여 비가 내리려다가
내리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며 쨍쨍한 햇볕
이 내리쬘니 앞으로의 걱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
다. 연달아 장계로 아뢴 내용을 보거나 남의 말을
들으니, 전라도는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렸고 경상
도는 메마르지는 않았으나 황해도와 평안도, 경기
와 충청도는 가뭄이 몹시 심하다고 하니, 기우제를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절기가 아직 일러

四月二十二日

● 初次

一. 曹啓曰：“今四月二十二日，
畫講入侍時，祈雨祭設行事，
榻前定奪矣。今月初十日得雨，
雖不周洽，而一句之間，不至
久旱，故有所等待矣。近日淒
風連吹，雨意漠然，節迫芒種，
播種愆期，前頭民事，極爲可
慮，依定奪，初次祈雨祭，風
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
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
二十五日設行之意，知委，何
如？”傳曰：“允。”

● 初次

一. 今四月二十二日，畫講入侍
時，參贊官洪受疇所啓：“近來
旱災太甚，欲雨不雨，淒風連
吹，杲日下曝，將來之憂，有不
可言。連見狀聞，或聞人言，湖
南則雨水太過，嶺南則不至乾
涸，兩西圻湖，旱氣太甚，祈雨
祭似不可已，而節候尙早，該
曹未及啓稟矣。丁丑年臣待罪
本院，陪從聖上，親禱社壇，

해당 조에서 미처 여쭙지 못하였습니다. 정축년¹⁶⁹⁷ 신이 본원에 근무하며 성상께서 사직단에서 친히 기도할 적에 배종한 것이 4월 22일입니다. 마침 오늘이 그날인데, 그때는 신료의 소장으로 인하여 택일하지 않고 설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뭄의 재해가 몹시 심하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부니 몹시 걱정이다. 기우제를 설행하라.”

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4월 25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서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4월 2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沈虎頭}에서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월 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卽四月二十二日, 適丁今日. 伊時因臣僚疏章, 不卜日設行矣, 今亦分付該曹, 何如?” 上曰: “旱災太甚, 淒風連吹, 甚可悶也. 祈雨祭設行, 可也.”

辛巳四月二十五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社稷·宗廟·北郊, 不卜日, 來二十八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四月二十八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不卜日, 來五月初二日設行之意, 知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3차 기우제는 중신과 근시를 보내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3차 기우제는 예전부터 근시를 보내 설행하였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당 조에 분부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덕산·한강에 근시를 보내는 것이 원래 전례이니, 이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5월 2일

● 4차 기우제는 중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 설행하며,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 및 희생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三次. 重臣·近侍

一. 政院啓曰: “三次祈雨祭, 自前遣近侍設行矣, 今亦似當依此例舉行, 以此意分付該曹乎? 敢稟.” 傳曰: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 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遣近侍, 自是前例, 依此舉行.”

辛巳五月初二日

● 四次. 重臣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初六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신사년¹⁷⁰¹ 5월 6일

● 5차 기우제는 종묘에 대신을 보낸다.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焚柴}는 같은 날 역시 전례대로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에서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사직·종묘·북교에 대신을 보내 9일에 설행하라.” 하였다.

● 저자도 등은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5차 기우제를 저자도 등 일곱 곳에서 설행하겠다는 단자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사직·종묘·북교에 대신을 보내 9일에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저자도 등 일곱 곳은 지금 우선 정지하고 성상의 하교대로 사직·종묘·북교에 대신을 보내 5차 기우제를 9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五月初六日

● 五次. 宗社, 大臣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不卜日, 來初十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 遣重臣,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同日亦爲依例設行爲白乎矣, 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事,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 社稷·宗廟·北郊, 遣大臣, 以初九日設行爲良如教.

● 楮子島等停

一. 曹啓曰: “五次祈雨祭, 楮子島等七處設行事單子, 傳曰: ‘社稷·宗廟·北郊, 遣大臣, 以初九日設行’事, 命下矣. 楮子島等七處, 今姑停止, 依聖教, 社稷·宗廟·北郊, 遣大臣, 五次祈雨祭, 以初九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신사년¹⁷⁰¹ 5월 9일

● 사직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몸소 사직단에 기도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택일하지 말고 13일로 정하여 시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상의 하교대로 이날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아헌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13일 기우 친제를 설행할 때 아헌관은 왕세자가 하는 것이 전례인데, 지금 어린 나이이고 또 약을 시중드는 날이니 형세상 예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출궁하고 환궁할 때 지영^{祇迎}하고 지송^{祇送}하는 절목도 모두 근래의 전례대로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전하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

五月初九日

● 社稷親祭

一. 曹啓曰：“備忘記：‘亢旱此酷，民事渴悶，躬禱社壇，不容少緩，不卜日，以十三日定行’事，命下矣。依聖教，以此日舉行事，分付各該司之意，敢啓。”傳曰：“知道。”

● 亞獻

一. 曹啓曰：“今月十三日，祈雨親祭設行時，亞獻官，王世子例爲行之，而方在沖年，且當侍藥之日，勢難行禮。出還宮時，祇迎·祇送節目，並依近例不爲磨鍊之意，敢啓。”傳曰：“知道。”

● 殿下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十三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

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3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塿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높고 낮은 집사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12일 새벽 먼저 제사 지낼 곳에 나아갔다가 대가가 재소에 도착한 뒤 중사·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享所，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享官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十三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塿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私習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隸儀，十二日質明，先詣祭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는 일이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는 13일 기우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12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가 절목대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부

보부報府

- 이번 5월 13일 사직 기우 친제를 지낸다.
-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壚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한다.
- 향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흑단령 차림으로 12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대가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한 후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하라고 계하하였다.

● 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來十三日，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十二日質明，先詣享所，依節目，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報府

- 報府
 - 今五月十三日，社稷祈雨親祭事。
 -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
 - 諸享官，除隸儀，以黑團領，十二日質明，先詣祭所，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大駕將至祇迎後，與中使及近侍，並爲私習儀事，啓下。

신사년¹⁷⁰¹ 5월 1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질이^{金同叱伊}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5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질이^{金同叱伊}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5월 14일

● 6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辛巳五月初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同叱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五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同叱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六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十四日

● 六次

一. 曹啓曰: “傳曰: ‘祈雨祭連
次設行’事, 傳教矣. 六次祈雨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6차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저자도·용산강·관악산에 중신을 보내고, 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는 같은 날 역시 전례대로 설행하되, 박연·화적연·도미진·관악산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에서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사년1701 5월 15일

● 정전을 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삼가 승정원에 내린 전교를 보니, 성상께서 가물을 걱정하고 백성을 우려하여 사직단에 친히 제사 지낸 뒤 또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술을 금지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은 전례대로 거행하되, 복을 치지 않는 일은 이전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호조·사옹원·공상^供上하는 각 관사에 공문을 보내고 감결^{甘結}을 받았다.】

祭, 不卜日, 來十八日, 楮子島·龍山江·冠岳山, 遣重臣,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 同日亦爲依例設行, 而朴淵·禾積淵·渡迷津·冠岳山,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事,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傳曰: “允.”

五月十五日

● 避正殿

一. 曹啓曰: “卽伏見下政院之教, 自上憫旱憂民, 社壇親祀之餘, 又有避正殿·減膳·禁酒之命矣. 撤樂等事, 依例舉行, 而勿擊鼓一款, 則依前定奪, 安徐何如?” 傳曰: “允.” 【戶曹·司饗院·供上各司, 移文捧甘.】

● 말

예조의 단자에,
“진암 분시를 검사하는 일로 경기 양주에 내려가는
예조의 낭청이 탈 말과 짐말 및 색리가 탈 말들은
전례대로 병조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5월 17일

● 전장 등의 장소에 제사를 지낸다.

서부 주부^{西部主簿} 이상징^{李商徵}이 상소하기를,
“……이어서 삼가 생각건대, 여러 산에 정성껏 기도
하고 이어서 몸소 기도하시며, 심지어 직접 죄수를
감형하였으니 천고에 드문 성대한 은전이라 하겠습
니다. 하늘의 이치로 헤아리면 어찌 감동하지 않겠
습니까. 다만 신은 나이가 이미 늙고 누차 기근을
겪어 한 가지 할 말이 있으니 말미에 아뢰고자 합
니다.

지난 신해년¹⁶⁷¹ 4, 5월 무렵 굶어 죽은 사람이 더욱
많았는데, 그 뒤 매년 4월과 5월 사이에는 크든 작
든 반드시 가뭄이 든 지가 여러 해입니다. 병자년¹⁶³⁶과 정축년¹⁶³⁷ 굶주리고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도
4, 5월 무렵에 많았는데, 이번 가뭄도 마침 그 때입
니다. 생각건대 굶어 죽은 사람의 원통한 기운이 매
번 하늘과 땅 사이를 막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

● 馬

一. 曹單子: “辰岩焚柴檢飭
事, 京圻楊州地下, 曹郎廳
騎卜馬, 及色吏所騎馬等, 依
例令兵曹題給, 何如?” 啓依
所啓施行爲良如教.

辛巳五月十七日

● 戰場等處致祭

一. 西部主簿李商徵上疏云
云: “仍伏念虔群望, 繼以躬
禱, 至於親錄囚徒, 可謂千古
盛典, 揆以天理, 豈有不動得
者乎? 第臣年已垂老, 累經飢
荒, 抑有一說, 請陳於尾. 往在
辛亥四五月間, 饑孥尤多, 其
後每於四五月交, 大小間, 必
有旱氣者, 累年. 丙丁飢荒飢
癘死者, 多在於四五月間, 今
此旱乾, 適會其時. 意者餓死
冤氣, 每於伊時否塞兩間而然
耶? 前此祈雨時, 亦有致祭於
設賑處及古戰場之例. 今亦倣
此設行, 而四門外餓死者埋葬

까. 예전에 기우제를 지낼 때도 진흙을 설행한 곳과 옛 전장에 제사를 지낸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설행하고, 사대문 밖 굶어 죽은 사람을 매장한 곳에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재해를 없애는 데 한 가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소를 지은 뒤 이 말을 보태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이승과 저승이 차이가 없으니 죽은 사람도 외람됨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덧붙여 아뢰니, 이는 오직 성상의 채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 치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상징李商徵의 상소로 인하여 옛 전장 및 사대문 밖 굶어 죽은 자를 매장한 곳에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례를 가져다 살펴보니, 이른바 옛 전장은 금산錦山과 진주晉州 등 모두 12곳인데,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역시 번거로우니, 정축년¹⁶⁹⁷의 전례대로 서교西郊의 민충단愍忠壇, 험천險川, 쌍령雙嶺 세 곳에 근신近臣을 보내 먼저 설행하고, 신해년¹⁶⁷¹과 병자년¹⁶³⁶, 정축년¹⁶³⁷ 전후로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동교, 서교, 남교의 정결한 곳에서 예전에 택일한 대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處，特爲設祭，則似是弭之一助也。疏成後，添此剩語，固知煩瀆，而幽明無間，死者亦或不避猥屑，茲敢附陳，此惟聖明採擇焉。”

● 致祭

一. 曹啓曰：“以李商徵上疏，古戰場及四門外餓死者埋葬處，特爲設祭，令該曹舉行事，命下矣。取考前例，則所謂古戰場錦山·晉州等並十二處，一時設祭，亦涉煩褻，依丁丑年例，西郊愍忠壇及險川·雙嶺三處，遣近臣，先爲設行，辛亥丙丁前後餓死人致祭事，則東西南三郊，淨潔處，依前卜日設行，何如？”傳曰：“允。”

● 택일

예조의 단자에,

“민충단^{愍忠壇} 및 험천^{險川}과 쌍령^{雙嶺} 두 곳의 전장과 동교, 서교, 남교의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근신을 보내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제사 지낼 길일을 일관에게 잡게 하였더니, 민충단과 동교, 서교, 남교는 오는 5월 23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였습니다. 험천과 쌍령에 제사 지낼 길일은 25일 역시 길하다고 하니, 이대로 설행하겠습니다. 제물과 집사관^{執事官}은 해당 도^道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게 하고, 각기 정결한 곳에 제단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모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험천과 쌍령의 의주^{儀註}는 한결같이 경술년¹⁶⁷⁰의 등록에 부기된 서송^{書送}대로 하고, 훗날에도 이대로 한다.】

신사년¹⁷⁰¹ 5월 18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다시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다시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擇日

一. 曹單子: “愍忠壇及險川·雙嶺兩處戰場, 東·西·南三郊 餓死人致祭, 遣近臣, 卜日設行事, 啓下矣. 致祭吉日, 令日官推擇, 則愍忠壇·東西南三郊, 則今五月二十三爲日吉云, 以此日設行之意, 分付各該司爲白乎旆, 險川·雙嶺致祭吉日, 則二十五日亦吉云, 依此設行爲白乎矣, 祭物及執事官, 令本道, 考例差定進排, 各其淨潔處設壇等事, 并以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險川雙嶺儀註一依庚戌膳錄所付書送, 後日依此爲之】

辛巳五月十八日

●七次

一. 曹單子: “七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 更遣重臣, 三角山·木覓山·漢江, 更遣近侍, 不卜日, 來二十一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5월 2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5월 22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오랜 가뭄 뒤에 비록 비가 내렸으나 잠깐 개었다가
잠깐 비가 내려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으니 기도하
는 일을 정지할 수 없을 듯합니다. 8차 기우제를 사
직·종묘·북교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
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啓施行爲良如教.

五月二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貴天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寸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二十二日

● 八次

一. 曹單子: “久旱之餘, 雖得
雨澤, 乍晴乍雨, 猶未浹洽, 祈
禱之舉, 似不可停止. 八次祈
雨祭, 社稷·宗廟·北郊, 遣重
臣, 不卜日, 來二十五日設行之
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
行爲良如教.

신사년¹⁷⁰¹ 5월 25일

● 9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9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다시 증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 설행하며,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며,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매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5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五月二十五日

● 九次

一. 曹單子：“九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松岳山等處，更遣重臣，不卜日，來二十九日設行，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各該司及京畿監司處，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五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崔貴天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崔貴天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六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5월 2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9차 기우제는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9차 기우제를 지낼 네 곳에서 향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큰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아뢰어 정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
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신사년¹⁷⁰¹ 5월 28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윤기삼^{尹起三}의 첩
정에,

辛巳五月二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貴天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九次停

一. 政院啓曰: “九次祈雨祭,
四處受香, 方在今日, 而大雨
方注, 自前如此之時, 有啓稟
停止之事. 何以爲之? 敢稟.”
傳曰: “停止.”

五月二十八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尹
起三牒呈內: ‘今番下雨後,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七尺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신사년¹⁷⁰¹ 6월 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5촌 높
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六月初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辛巳六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十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 漢江渡丞 이원형 李元亨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 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 布帛尺으로 10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 韓栗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 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 漢江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李
元亨牒呈內: ‘今番雨水, 本津
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十
尺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十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한울금^{韓栗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六月初十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韓栗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十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5촌 높이로

辛巳六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十尺五寸流下’是如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는 7월 5일 사시^{오전09~11시}는 바로 입추 절기이니, 정전^{正殿}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호조·사옹원·사재감·내자시·내섬시·내주방·장악원·사도시】

신사년¹⁷⁰¹ 6월 2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爲白臥乎事.” 啓.

● 還御正殿

一. 曹啓曰：“來七月初五日巳時，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膳等事，依例舉行之意，分付，何如?” 傳曰：“允.” 【戶曹·司饗·司宰·內資·內贍·內酒·掌樂·司導】

六月二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萬伊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萬伊手本內：‘今朝下雨，水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6월 2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저녁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標看審, 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十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今日夕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啓.

신사년¹⁷⁰¹ 7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이원형^{李元亨}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강물이 넘쳐 강변의 인가가 물
에 잠겨 측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7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辛巳七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 漢江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李
元亨牒呈內: ‘今番下雨, 江水
漲溢, 江邊人家沈沒, 不得尺
量’ 是如爲白臥乎事.” 啓.

七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흘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7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7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七月初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朝下雨，
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啓.

七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신사년¹⁷⁰¹ 7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육선^{李六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7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육현^{李六賢}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7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육현^{李六賢}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七月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六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六賢手本內：‘今曉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辛巳七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六賢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여름에 장맛비가 계속 내려 가을이 되도록 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금 갠 날이 없지 않았으나
항상 비가 내릴 조짐이 있었기에 벼와 기장, 조가 한
창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는 시기에 손상되는 우환
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으레 기청제
祈晴祭를 설행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신의 조에서 한
창 계품하러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전례대로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이달 30
일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종일의 번육(膾肉)은 전
부 예조에 바치라고 사대문의 전사관에게 감결을 보
냈다.】

신사년¹⁷⁰¹ 8월 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祈晴

一. 曹啓曰：“今夏霖雨支離，
涉秋不開。雖無少霽之日，而
每有恒雨之意，禾穀黍粟，正
當發穗成實之際，多有損傷之
患云。如此之時，例有祈晴祭
設行之舉，故臣曹，方欲啓稟，
而大臣之意亦如此，依前例四
門禱祭，不卜日，今月三十日爲
始，三日而止事，知委舉行，何
如？”傳曰：“允。”【終日膾肉，
沒數上曹事，捧甘四門典祀
官】

八月初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啓.

신사년¹⁷⁰¹ 8월 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신사년¹⁷⁰¹ 11월 11일

● 수표제²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납일^{臘日} 전에 세 번 눈이 내리면 내년에 풍년이 들
 징조이다. 그러나 겨울이 절반이 지나려 하는데 날
 씨가 평소와 달라 찬비가 자주 내리고 눈이 내릴 조
 짐이 전혀 없으니 내년의 근심을 이루 말하기 어렵
 다. 해당 조로 하여금 보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기
 설제를 계품하여 설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거의 절반
 이나 지났는데 양기를 닫고 감추는 것이 건고하지
 않아 안개가 솟아나고 비가 새며 눈이 한 점도 내리
 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처럼 평소와 다르니 앞으로
 의 근심은 비단 내년의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기설
 제를 택일하지 말고 종묘·사직·북교에 따로 중신을

² 수표제: 기설제의 오류로 보인다.

八月初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十一月十一日

● 水標祭

一. 曹啓曰：“傳曰：‘臘前三白，
 驗豐來歲，而冬序將半，日候
 乖常，寒雨頻仍，雪意漠然，嗣
 歲之憂，有難勝言。其令該曹
 稍待望間，祈雪祭，啓稟設行’
 事，命下矣。即今冬節殆半，閉
 藏不固，霧涌雨洩，點雪不下，
 時氣之乖常如此，方來之憂，
 不但嗣歲之農候而已。祈雪
 祭，不卜日，宗廟·社稷·北郊，
 別遣重臣，來十四日設行事，
 分付各該司，何如？” 傳曰：
 “允。”

보내오는 14일에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임오년¹⁷⁰² 4월 2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4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壬午四月二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朴同伊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四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朴同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4월 2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4월 3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5월 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四月二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四月三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壬午五月初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5월 2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5월 2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7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壬午五月二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二尺七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5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6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영한^{劉英漢}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6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五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啓.

六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劉英漢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車貴仁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6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양우징^{梁宇徵}의 첩
정에,

‘이번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4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壬午六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丞梁
宇徵牒呈內: ‘今此下雨後, 本
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四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臥
乎事.” 啓.

六月二十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貴仁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6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6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6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귀인^{車貴仁}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六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貴仁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貴仁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貴仁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五寸流下’ 是
如爲白臥乎事.” 啓.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양우징^{梁宇徵}의 첩
 정에,
 ‘연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물가의 인가가 물에 잠
 겨 측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윤6월 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4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梁
 宇徵牒呈內：‘連日下雨後，本
 津水邊人家沈溺，不得尺量’
 是如爲白臥乎事。” 啓.

閏六月初四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五尺四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九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윤6월 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윤6월 1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閏六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閏六月初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윤6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한 달 내내 장맛비가 내린 뒤 근래 비 내리는 기세
 가 더욱 심하여 여러 도에서 수재가 발생하였다는
 장계가 연속하여 오고 있으니, 홍수의 재해가 참으
 로 걱정입니다. 예전부터 입추 이전에 기청제를 지
 낸 전례가 있는데, 지금 가을이 3, 4일밖에 남지 않
 았으니, 기청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
 을 시작으로 3일 뒤에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閏六月十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九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十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祈晴

一. 曹啓曰：“浹月霖雨之餘，
 近日以來，雨勢益甚，諸道水
 患之啓，連續以至，極備之災，
 誠爲可慮。自前立秋之前，祈
 晴其例，卽今秋節，只隔三四
 日，祈晴四門祭，不卜日，來
 十三日爲始，三日而止事，分
 付各該司，何如？” 傳曰：“允。”
 【終日膳肉，依例沒數上曹事，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종일의 번육(膾肉)을 전부 전례대로 예조에 바치라고 송례문·홍인문·숙정문·돈의문 전사관에게 감결을 보냈다.】

임오년¹⁷⁰² 윤6월 1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윤6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우준(梁宇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捧甘于崇禮門·興仁門·肅靖
門·敦義門典祀官】

壬午閏六月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八尺流下’ 是如爲白
乎事.” 啓.

閏六月二十三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梁宇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九尺五寸流下’ 是
如爲白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윤6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우준^{梁宇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2차 기청제

이번 윤6월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사문 기청영제^{四門祈晴靈祭}를 택일하지
말고 다시 설행하되, 오는 27일 시작하여 3일 뒤 중
지하라고 탑전에서 결정하였다. 【이렇게 곧장 거행하
였다.】

임오년¹⁷⁰² 7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閏六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宇俊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七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祈晴再次

一. 今閏六月二十五日，大臣·
備局堂上引見入侍時，四門祈
晴靈祭，不卜日，更爲設行，來
二十七日爲始，三日而止事，榻
前定奪. 【以此直爲舉行】

七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申壽命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7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7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3차 기청제는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여러 달 장마가 저서 곡식에 해가 된 뒤에 비록 며
칠간 비가 그쳤으나 근래 또 비 내리는 기세가 이와
같아 연일 쏟아지니 형세가 마치 동이를 뒤집을 듯
합니다. 수재를 겪고 남은 곡식이 물에 잠겨 썩고 줄

七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申壽命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申壽命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十尺流下’是白臥乎
事。” 啓.

● 三次祈晴，宗社，遣大臣.

一. 曹啓曰：“政院啓辭：‘積月
淫潦，害稼之餘，雖得數日收
霽，近又雨勢如此，彌日大注，
勢若飈盆。水災餘存之穀，將
未免沈腐消縮，民天之憂，誠
爲罔極。臣等，取考日記，則曾

어 들 것이니, 농사 걱정이 참으로 망극합니다. 신들이 일기를 가져다 살펴보니, 예전에 정묘년¹⁶⁸⁷ 7월, 대신의 계사로 인하여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거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해 두 차례 기청제를 지냈으나 응답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따로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전례대로 해당 조로 하여금 속히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본조에 있는 등록을 상고해보니, 정묘년 7월 4일 종묘·사직 기청제는 과연 대신을 보내 설행하였습니다. 지금 기청제를 거행하는 일이 한시가 급하니 전례대로 즉시 택일하지 말고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침 7일의 종묘 추향대제와 겹치니, 그전에는 설행하기 어렵습니다. 8일까지 기다렸다가 설행하라고 분부하고, 제문은 전례에 따르면 대제학이 지어 바치는데, 지금 대제학이 지방에 있으니 예문관으로 하여금 따로 지어 내게 하라고 역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在丁卯年七月，因大臣啓辭，宗廟·社稷，遣大臣祈晴祭設行事，令該曹，稟旨舉行矣。蓋其年兩次行祈晴之祭，而未有其應，故有此別遣大臣祈祭之舉，今亦依此例，令該曹，急速稟處，何如?’ 傳曰：‘允’事，命下矣。本曹所在謄錄相考，則丁卯七月初四日，宗廟·社稷祈晴祭，果爲遣大臣設行矣。卽今祈晴之舉，一時爲急，所當依前例卽爲不卜日舉行，而適與初七日宗廟秋享大祭相值，其前有難設行，待初八日設行事，分付，而祭文則前例大提學製進，而卽今大提學在外，令藝文館，別爲撰出之意，亦爲分付，何如?’ 傳曰：“允。”

임오년¹⁷⁰² 7월 6일

● 기청제를 중지하도록 승정원이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어제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 기청제를 8일에 설행하도록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그쳤고, 오늘은 몹시 맑고 서늘한 기운이 제법 생겼으니, 이제부터 날이 갠 가망이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때 기청제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고 또 성실함이 부족하므로 8일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제사에 대해 여러 신하의 논의는 우선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당초에 제사를 지내자는 청이 승정원에서 나왔기에 신의 조에서 감히 바깥의 논의와 얹은 소견으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다시 여쭙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신수명^{申壽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8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안을 찍었다.

壬午七月初六日

● 祈晴祭停止, 政院稟.

一. 曹啓曰: “昨日, 因政院啓辭, 宗廟·社稷, 遣大臣祈晴祭, 初八日設行事, 覆啓, 允下矣. 自昨夕, 雨勢止歇, 今日則晴意甚快, 涼氣頗生, 自此似有仍爲開霽之望. 此是又爲祈晴之舉, 既涉煩瀆, 且欠誠實, 故初八日宗社設祭事, 群下之議, 姑爲停寢爲宜云, 當初設祭之請, 既出於政院, 臣曹不敢以外議及淺見, 有所容議, 令政院, 更爲稟處, 何如?” 傳曰: “停止.”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申壽命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八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임오년¹⁷⁰² 7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 승^{漢江渡丞} 양우징^{梁宇徵}의 첩
정에,
‘이번에 큰비가 내린 뒤 장맛비가 넘쳐 물가의 집이
잠겨 측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8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鰲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1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8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壬午七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丞梁
宇徵牒呈內：‘今此大雨後，潦
水漲溢，水邊家舍沈溺，不得
尺量’是如爲白臥乎事。” 啓.

壬午八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鰲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一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壬午八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鰲生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二寸流下’是如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8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9월 8일

【예전에는 9월에는 수표 기록을 입계한 일이 없으나
 이번에는 내리는 비가 예상롭지 않았으므로 입계하
 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爲白臥乎事.” 啓.

壬午八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貴天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壬午九月初八日

【曾無九月水標入啓之事, 而此
 則下雨非常, 故入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
 看審, 則七尺五寸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임오년¹⁷⁰² 9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朴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1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에 대해 물어서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지난밤의 비는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여 크게
쏟아지지는 않았으나, 지금 예조의 수표단자를 보
니 5척 1촌에 달하여 몹시 의아하다. 즉시 물어서
아뢰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수표직에게 물었더니,
‘지난밤의 비는 크게 쏟아지지는 않았으나 어제 저
녁에 한 번 갑자기 내린 뒤 여러 물결이 함께 불어났
고, 밤사이에도 날이 개지 않아 물의 기세가 줄어들
지 않아 5척 남짓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壬午九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同手本內：‘去夜下雨，水標
看審，則五尺一寸流下’是如爲
白臥乎事。”

● 水標問啓

一. 曹啓曰：“傳曰：‘去夜之雨，
或下或止，不至大注，而今觀
禮曹水標單子，至於五尺一寸，
殊涉可訝，卽爲問啓’事，命下
矣。問于水標直，則以爲：‘去
夜之雨不至大注，而昨夕一番
暴下之後，衆流合漲，夜間亦
不開霽，水勢不爲減縮，以致
五尺之餘’云，故敢啓。”傳曰：
“知道。”

계미년¹⁷⁰³ 2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동미^{李東美}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3월 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귀천^{崔貴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3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동질이^{李同叱伊} 수
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1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癸未二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東美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癸未三月初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崔貴天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癸未三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同叱伊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一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3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동질이 李同叱伊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4월 1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 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癸未三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同叱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癸未四月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 是
如爲白臥乎事.” 啓.

계미년¹⁷⁰³ 4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7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5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四月十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一尺七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啓下。

五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²日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日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2 尹: 저본에는 ‘金’. 아래 기사에 근거
 하여 수정

계미년¹⁷⁰³ 5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5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日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5월 2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五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日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十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日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二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5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5월 3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6월 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枝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높이로 물

癸未五月二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三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初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承枝江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九尺流下’ 是如爲白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枝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6월 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진 별장^{漢江渡津別將} 이상건^{李尙建}
의 첩정에,
‘지난달 29일 이후 장맛비가 불어 나루 앞에 사는 백
성의 집 뜰이 물에 잠기고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
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12척 5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6월 4일

예조의 단자에,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承枝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三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津別
將李尙建牒呈內: ‘去月二十九
日以後, 潦水漲江, 津頭居民,
門庭水沈, 常流水基尺量, 則
以布帛尺, 十二尺五寸加漲溢’
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枝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6월 12일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진 별장^{漢江渡津別將} 이상건^{李尙建}
 의 첩정에,
 ‘이달 11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3척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돌쇠^{梁堧錫}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承枝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九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癸未六月十二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渡津別
 將李尙建牒呈內：‘今月十一日
 下雨後，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十三尺許加漲溢’是
 如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梁堧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七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계미년¹⁷⁰³ 7월 1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여러 달 장마가 진 뒤에 가뭄 재해가 이처럼 혹독하여 곡식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가을철은 비록 지났으나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는 기우제를 지낸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여 농사가 걱정이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 설행하여 정성껏 기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미년¹⁷⁰³ 7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七月十三日

● 初次

一. 曹啓曰：“連月陰霖之後，旱災此酷，禾穀多有損傷。秋節雖過，自前如此之時，曾有祈雨之例，即今雨意漠然，民事可慮，祈禱之舉，似不容少緩。初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雪祀·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來十六日設行，虔誠祈禱之意，分付，何如？”傳曰：“允。”

七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李懿同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啓.

계미년¹⁷⁰³ 7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계미년¹⁷⁰³ 7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갑신년¹⁷⁰⁴ 4월 25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가뭄 기운이 몹시 심하여 간혹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끝내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가 이미 열흘이 넘었으니 비단 보리
가 대부분 누렇게 말랐을 뿐만 아니라 논에 파종하
는 시기도 놓쳤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

七月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七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甲申四月二十五日

● 初次

一. 曹啓曰：“近來旱氣太甚，
間雖得雨，終未浹洽，而點雨
不下者，已過一句，不但牟麥
舉皆萎黃，水田播種，亦且愆
期，前頭民事，極爲可慮。祈禱
之舉，不宜少緩，初次祈雨祭，

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하니,
1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
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 설행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4월 2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사직·종묘·북교에서 택일하지 말고
오는 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5월 4일

● 3차 기우제는 중신과 근시를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는 풍운뇌우·산천·우사·삼각산·목덕
산·한강 침호두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 설행하
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풍운뇌우·산천·우사에는 중신을 보내고, 삼각
산·목덕산·한강에는 근시를 보내 정성껏 기도하
고 분부하라.”
하였다.

風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
·木覓山·漢江等處，不卜日，
來二十八日設行之意，知委，
何如?” 傳曰：“允。”

四月二十九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社
稷·宗廟·北郊，不卜日，來初
三日設行事，知委，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五月初四日

● 三次. 重臣·近侍.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
雲雷雨·山川·雩祀·三角山·
木覓山·漢江沈虎頭，不卜日，
來初七日設行之意，知委，何
如?” 啓. 風雲雷雨·山川·雩
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
漢江，遣近侍，虔誠祈禱事，分
付爲良如教。

갑신년¹⁷⁰⁴ 5월 7일

● 4차 기우제는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낸다.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는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1일에 설행하되,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 보내며,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며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 4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4차 기우제를 양진 등 다섯 곳에서 설행하겠다는 단자에 대해 전교하기를,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양진 등 다섯 곳은 지금 우선 정지하고, 성상의 하교대로 종묘·사직·북교에 대신을 보내 4차 기우제를 이전에 정한 1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10일에 설행하라고 전교하였다.

甲申五月初七日

● 四次. 宗社, 大臣.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楊津·德津·五冠山·紺嶽山·松嶽山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十一日設行, 典祀官兼大祝祭物, 自京下送, 執事官及犧牲, 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 各該司及京圻監司處, 知委, 何如?” 啓. 宗廟·社稷·北郊, 遣大臣設行爲良如教.

● 四次. 大臣.

一. 曹啓曰: “四次祈雨祭, 楊津等五處設行事單子, 傳曰, 宗廟·社稷·北郊, 遣大臣設行事, 命下矣. 楊津等五處, 今姑停止, 依聖教, 宗廟·社稷·北郊, 遣大臣, 四次祈雨祭, 以前定十一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以初十日設行.”

갑신년¹⁷⁰⁴ 5월 10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 설행하며,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 내며,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 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종묘 친제

전교하기를,
“네 차례 기우제에도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막연 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근심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내 정성이 얕으니 감히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나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친히 기도하는 일을 늦출 수 있겠는가. 예관으로 하여금 종묘에 친히 제사 지내는 일은 택일하지 말고 13일로 정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세자의 아헌

전교하기를,
“이번 종묘 기우 친제 때 세자가 아헌관을 행해야 한다는 뜻을 해당 조▣에 분부하라.”

五月初十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嶽山·松嶽山等處，遣重臣，不卜日，來十四日設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何如？”

● 宗廟親祭

一. 傳曰：“四次禱雨，雨意愈邈，言念民事，憂心如薰。顧予誠淺，敢望上格？而亢旱至此，親禱可緩？其令禮官，太廟親祭，不卜日，以十三日定行。”

● 世子亞獻

一. 傳曰：“今此太廟祈雨親祭時，世子當行亞獻官之意，分付該曹。”

하였다.

● 제문의 말을 만든다.

전교하기를,

“이번 종묘 기우 친제의 제문에 나를 닮는 뜻으로
따로 말을 만들라고 사신(詞臣)에게 말하라.”

하였다.

● 영녕전 제사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 기우 친제는 택일하지 말고 13일로 정하여 행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부터 종묘 친제 때
는 으레 영녕전(永寧殿)에 대신을 보내 집행하는 예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양진 등은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5차 기우제는 중신을 보내 양진 등의 장소에
서 집행하겠다고 계품하였습니다. 종묘 친제를 지내
겠다고 이미 명을 내렸으니 양진 등의 장소는 우선
설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祭文措辭

一. 傳曰：“今此太廟祈雨親祭，祭文中，罪己之意，別爲措辭事，言于詞臣。”

● 永寧殿祭

一. 曹啓曰：“太廟祈雨親祭，不卜日，以十三日定行事，命下矣。自前宗廟親祭時，例有永寧殿遣大臣攝行之禮，今亦依此舉行事，知委，何如？”傳曰：“允。”

● 楊津等停

一. 曹啓曰：“纔以五次祈雨祭，遣重臣設行於楊津等處事，啓稟矣。太廟親祭，既有成命，楊津等處，則姑勿設行，何如？”傳曰：“允。”

● 전하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3일 종묘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재궁^{齋宮}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왕세자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3일 종묘 기우 친제 때 왕세자는 별당에서 2일간 산재하고 재소^{齋所}에서 1일간 치재하며, 궁관^{宮官}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정침^{正寢}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繡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本司}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시강원에 서 보부^{報府}하였다.】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3일 종묘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2

● 殿下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十三日，宗廟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齋宮，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王世子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十三日，宗廟祈雨親祭教是時，王世子，散齋二日於別堂，致齋一日於齋所，宮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享所，諸衛之屬守衛廟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侍講院報府】

● 享官齋戒

一. 曹單子：“今五月十三日，
3 이하 4명은 저본의 위치가 잘못되어 계묘년(1723) 5월 17일-계묘년(1723) 5월 21일로 옮겼다.

일간 묵으며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배종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堽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 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는 일이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13일 기우 친제 때 관원들은 12일 새벽에 향소에 먼저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묘문廟門 안에서 지영하되, 영녕전의 향관들은 12일 새벽에 이미 흑단령 차림으로 향을 받으러 나아가므로 대가가 종묘에 도착할 때 전례대로 그대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되, 왕세자가 도착하면 역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부

보부報府,

1. 이번 5월 13일 종묘 기우 친제를 하라고 계하하였다.

宗廟祈雨親祭敎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從百官諸衛之屬守衛廟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 享官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十三日，祈雨親祭敎是時，諸官，十二日質明，先詣享所，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團領，廟門內祇迎爲白乎矣，永寧殿諸享官，則十二日質明，旣以黑團領，受香進去，大駕詣宗廟時，依前例，仍以黑團領，祇迎爲白乎矣，王世子至，亦爲祇迎事，知委，何如？”啓施所啓施行爲良如敎

● 報府

一. 報府

1. 종묘의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한다.
1. 종묘의 향관들은 흑단령 차림으로 12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차림으로 묘문(廟門) 안에서 대가가 도착하면 지영하라고 계하하였다.
1. 영녕전의 향관들은 12일 새벽에 이미 흑단령 차림으로 향을 받으러 나아가므로 그대로 흑단령 차림으로 대가와 왕세자가 도착하면 지영하라고 계하하였다.

一. 今五月十三日, 宗廟祈雨親祭事, 啓下.

一. 宗廟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散齋二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事.

一. 宗廟諸享官, 以黑團領, 十二日質明, 先詣享所,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 廟門內, 大駕將至祇迎事, 啓下.

一. 永寧殿諸享官, 十二日質明, 既以黑團, 受香進去, 仍以黑團領, 大駕·王世子將至祇迎事, 啓下.

갑신년¹⁷⁰⁴ 5월 13일

● 정전을 피하다.

비망기에,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고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은 해당 조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甲申五月十三日

● 避正殿

一. 備忘記: “自今日避正殿, 益篤敬畏之心, 減膳·撤樂·禁酒等事, 其令該曹, 剴即舉行.”

● 減膳

一. 曹啓曰: “旱災此酷, 至行

“가뭄의 재해가 이처럼 혹독하여 종묘에 친히 기도하는 일까지 하였으나 비 내릴 조짐이 막연하여 한창 근심스럽고 다급한 마음 간절합니다. 방금 승정원에 내리신 하교를 보니,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고 술을 금지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즉시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되, 복을 치지 않는 일은 근래의 전례대로 그만두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5월 14일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기우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연달아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계청한 대로 5차 기우제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에 중신을 보내 설행하며, 전사관 겸 대축·제물은 서울에서 내려보내고, 집사관과 희생은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라고 각 해당 관사 및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親禱太廟之舉，而雨意邈然，方切憂惶。即伏見下政院之教，有避正殿·減膳·撤樂·禁酒之命，即令各該司，依例舉行，而勿擊鼓一款，依近例安徐之意，敢啓。”傳曰：“知道。”

五月十四日

● 五次

一. 曹啓曰：“傳曰：‘祈雨祭，更勿等待，連次設行事，分付’事，命下矣。依前啓請，五次祈雨祭，楊津·德津·五冠山·紺嶽山·松嶽山等處，不卜日，來十九日，遣重臣設行，而典祀官兼大祝祭物，自京下送，執事官及犧牲，則令本道差定進排之意，各該司及京圻監司處，知委，何如？”傳曰：“允。”

갑신년¹⁷⁰⁴ 5월 19일

● 선농단 친제에 대해 수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아, 백성을 위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지 이미 다섯 차례가 되었으나 하늘을 바라보면 아득할 뿐 비가 내릴 조짐이 없다. 절기가 점차 늦어져 농사가 갈수록 급하니, 어찌 편안하게 해 주시지 않는가. 걱정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다만 여러 곳에 두루 제사를 지내는 것은 번거롭다는 혐의가 있으나 모든 방도를 다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다른 생각을 하며 묵묵히 있을 뿐이겠는가. 선농단의 친제는 예문에 실려 있으니, 빛나는 신농^{神農}과 후직^{后稷}이 우리에게 처음 농사를 가르쳐 주어 만세토록 그 은혜를 받고 있다. 풍년을 바라며 정성껏 제사를 지내니, 풍년을 바라는 것도 농사를 위해서요,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도 농사를 위해서다. 그러니 다시 정성을 더 하여 희생을 대신하여 친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예관으로 하여금 즉시 대신에게 묻고 내게 물어 처리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대신에게 물었더니 행 판 중추부사 윤지선^{尹趾善}은,

‘삼가 비망기의 말씀을 읽으니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고 부지런히 우려하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선농단에 기우제를 지낸다는 예문이 비록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으나 이미 설행한 전례

甲申五月十九日

● 先農親祭收議

一. 曹啓曰：“備忘記：‘噫，爲民祈澤，已至五次，而視天夢夢，雨意邈邈，節序漸晚，民事愈急，曷惠其寧？憂心如惓，第念牲璧既遍，群祀嫌瀆，其在靡不用極之道，豈可別有所思，而嘿然而已乎？先農親祀，禮文攸載。於赫神農·后稷，肇我稼穡，萬世以賴。用祈康年，享祀是虔，祈年之寔爲穡事，祈雨亦爲穡事，則更竭菲誠，代犧親禱，不容少緩也。其令禮官，卽爲問于大臣 稟處’事，命下矣。問于大臣，則行判中樞府事尹趾善以爲：‘伏讀備忘，辭旨有以仰見聖上悶旱憂勤之至意。先農壇祈雨之文，雖無『五禮儀』之所載，而既有已行之例，則至誠虔禱，不無冥應之理。伏惟上裁。’行判中樞府徐文重以爲：‘伏見備忘辭旨，有以仰見悶旱祈籲，靡不用極之聖意也。古之帝王，如殷湯之桑林，宋帝之

가 있으니, 지성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감응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행 관중추부사 서문중徐文重은,

‘삼가 비망기의 말씀을 보니 가뭄을 근심하여 기도 하는데 모든 방법을 다하는 성상의 뜻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제왕 중에 은殷나라 탕왕湯은 상림桑林에서, 송宋나라 황제는 태을太乙에게 기도하여 모두 하늘을 감동시켜 복을 받아 천 리에 비가 내렸으니, 오직 나의 진실과 공경을 다할 뿐입니다. 어찌 일정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다만 적전籍田은 곡식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곳으로 세초에 제사를 지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바람, 우레, 구름, 비에게는 남교南郊에서 제사를 지내 진작시키는 공로를 기원하고 적서 주는 은택을 바랍니다. 똑같이 곡식을 위해서이지만 각기 주관하는 바가 있으니 예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정사년¹⁶⁷⁷ 변고에 대처하여 섭행한 일로 말하자면 전례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시행하기보다는 옛 법전을 따라 남교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좌의정 이여李畬는,

‘신의 병세가 한창 심하여 방금 호소하였는데 화기火氣가 올라오고 정신이 혼미하여 인사불성입니다. 그러나 삼가 비망기를 읽으니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모든 방도를 다하는

太乙, 皆能感回上天之休, 以致千里之雨. 唯在盡我誠敬而已, 亦何處所之有常也? 第念籍田, 乃是祈穀之地, 歲首行祀, 以祈有年, 風雷雲雨, 祀於南郊, 以祈振發之功, 以資膏潤之澤. 均是爲穀, 各有所主, 禮不可相錯, 至於丁巳年處變涉攝行之事, 亦不宜援以爲例. 與其扞行新規, 不如爰循古典, 克舉南郊之禮, 爲得宜. 伏惟上裁.’ 左議政李畬以爲: ‘臣病勢方甚, 纔有陳籲. 火升神迷, 昏昏無省, 而伏讀備忘記, 有以仰見聖上悶旱祈澤. 靡極不用之意, 臣何敢以病未任職, 嘿無仰對乎? 神農·后稷, 寔肇我稼穡, 『五禮儀』, 雖無先農壇祈雨之文, 曾在丁巳, 亦有已行之例云, 至誠虔禱, 以求冥應, 恐爲得宜. 伏惟上裁.’ 領議政申琬, 病不收議, 領中樞府事尹趾完, 行判中樞府事崔錫鼎, 在外不得收議. 大臣之意如此, 上裁, 何如?” 答曰: “先農壇親禱之禮, 不卜

뜻을 우리러볼 수 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병으로 직임을 맡지 못한다고 묵묵히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농과 후직은 우리의 농사를 시작하였으니, 『오례의』에 비록 선농단에 기우제를 지낸다는 글은 없지만 예전 정사년에도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성으로 정성껏 기도하여 하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영의정 신완^{申琬}은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고, 영중추부사 윤지완^{尹趾完}, 행 판중추부사 최석정^{崔錫鼎}은 지방에 있어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선농단에 친히 기도하는 예는 택일하지 말고 22일로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5월 20일

● 제물은 대제의 전례를 따른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의 수의^{收議}로 인하여 선농단 기우 친제는 택일하지 말고 22일로 정하여 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절목은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되, 제물은 대사^{大祀}의 전례대로 합니까? 감히

日, 以二十二日定行.”

五月二十日

● 祭物, 大祭例

一. 曹啓曰: “因大臣收議, 先農壇祈雨親祭, 不卜日, 以二十二日定行事, 命下矣. 凡干節目, 分付各該司, 趁卽舉行, 而祭物, 依大祀例爲之乎? 敢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물은 선농단에 친향할 때의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선농단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는 일은 전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고,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하여 급히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아헌관에 대해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선농단 친제 때 왕세자가 궐문 밖에서 지영하고 지송하는 예 및 아헌의 예를 함께 마련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헌의 예는 마련하지 말라.”

하였다.

● 동가

예조가 아뢰기를,

“예전 남교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 2경 초에 동가^{動駕}

稟.” 傳曰：“祭物，依親享先農時例爲之。”

● 壇修理

一. 曹啓曰：“今此先農壇親祭時，壇上修理事，依例別遣戶曹·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同看檢，而亦令膳工監別定監役官，急速修理，何如?” 傳曰：“允.”

● 亞獻稟

一. 曹啓曰：“今此先農壇親祭時，王世子，闕門外祇迎祇送之禮及亞獻之禮，並爲磨鍊乎? 敢稟.” 傳曰：“亞獻之禮，勿爲磨鍊.”

● 動駕

一. 曹啓曰：“曾前南郊祈雨親祭時，上於二更初，動駕出

하여 도성을 나와 단소로 나아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으며,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하는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제관·집사는 21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으로 나아가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우환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산재하고 치재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선농단에 제사 지낼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치재하되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事矣。出宮時刻，今亦依此舉行，而祭官·執事，二十一日質明，先詣祭所，與中使及近侍，並爲私習，俾無失儀之患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 齋戒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今此先農壇行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行舉，何如？”傳曰：“允。”

●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지낼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가 도착하면 지영하라고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22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1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가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부

보부^{報府}.

1. 이달 22일 선농단 기우 친제를 한다.

1. 제관과 집사들은 21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중사·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한다.

1.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한다.

1.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塼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하라고 계하하였다.

● 祗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祗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二十二日，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二十一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祗迎事，知委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報府

一. 報府

一. 今月二十二日，先農壇祈雨親祭事。

一. 祭官·諸執事，二十一日質明，先詣享所，與中使·近侍，依例私習事。

一. 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大駕將至，以黑團領祗迎事。

一.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官諸衛之屬守衛塼門者，各於本司清齋一宿事，啓下。

갑신년¹⁷⁰⁴ 5월 23일

●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다.

전교하기를,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6차 기우제

이번 5월 23일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청대하여
입시하였을 때 저자도와 용산강에 6차 기우제를 중
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 먼저 설행하라
고 탑전에서 결정하였다.【이렇게 거행하였다.】

● 기우제를 대신에게 문의하다.

이번 5월 23일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청대하여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민진후가 아
뢰기를,
“신은 기우제를 지내는 일에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
히 이렇게 우러러 아웁니다. 올해의 큰 가뭄은 진실
로 전에 없던 재해인데, 대저 수해와 가뭄은 나라에
서 반드시 면할 수 없으니, 앞으로 어찌 매년 가뭄
이 들지 않는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예전 기우제의 순서가 어느 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
으나, 풍운뇌우·우사 등과 같은 장소에는 1차, 3차,
7차, 9차, 12차를 연속하여 설행하였으니, 번거롭기
가 막심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甲申五月二十三日

● 祈雨連次

一. 傳曰：“祈雨祭連次設行
事，分付。”

● 六次

一. 今五月二十三日，禮曹判
書閔鎭厚對入侍時，楮子島·龍
山江，六次祈雨祭，遣重臣，不
卜日，來二十六日爲先設行事，
榻前定奪.【以此舉行】

● 祈雨問議大臣

一. 今五月二十三日，禮曹判
書閔鎭厚對引見入侍時，禮曹判
書閔鎭厚所啓：“臣祈雨祭事，有區
區所懷，敢此仰達. 今年大旱，
固是無前之災，而大抵水旱，
有國之所不必免，此後亦安保
每年不旱乎？曾前祈雨祭次
序，未知其定於何時，而如風
雲雷雨·雩祀等處，則初次，第
三次，第七次，第九次，第十二
次，連續設行，煩瀆莫甚. 且
一時行祭處，或至五六處，或

대여섯 곳이 되기도 하고 일곱여덟 곳이 되기도 하니, 향관과 모든 일이 구차한 우환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대신에게 문의하여 한번 정식으로 삼아 먼저는 중요하지 않은 곳에 설행하고 점차 중요한 곳에 설행하며, 먼저는 재신을 보내고 점차 대신을 보내 한 차례 두루 설행한 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돌아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친 제로 말하자면 오직 그때그때 특교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사전에 합당할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옳은 듯하니, 대신에게 물어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 선농단 망료

예조가 아뢰기를,

“선농단에 제사 지내는 예를 마치고 망예望瘞할 때 축판祝板 및 폐백과 서직반黍稷飯을 구덩이에 넣고 흙을 절반 채우는 것은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의주儀註에도 이렇게 마련하여 들였습니다. 그러나 단소壇所에 본래 구덩이를 설치한 일이 없어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 축판과 폐백만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전례대로 망료望瘞를 설치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계제사稽制司에 계하하

七八處，享官及凡事，不無苟簡之患，若問議大臣，一番定式，先行歇處，漸及重處，先遣宰臣，漸及大臣，一次遍行之後，猶未得雨，則周而復始，未爲不可，而至於親祭，則惟在臨時特教之如何 以此斷定，似合於祀典矣.” 上曰：“所達似是，問于大臣，定式，可也。”

● 先農望瘞

一. 曹啓曰：“享先農禮畢望瘞時，取祝板及幣黍稷飯 置於坎 置土半坎者，乃是五禮儀所載。故今番儀註中，亦以此磨鍊以入，而壇所本無設坎之事，曾前行祭時，只以祝幣瘞火云，今亦依前例，設望瘞之意，敢啓.” 傳曰：“知道.” 【制司啓下】

였다.】

● 여러 단의 망에 유무

전교하기를,

“아침에 예조의 초기草記를 보았더니 선농단에 망에 위望望位가 없어 망료위望燎位를 설행하겠다고 아뢰었다. 사직단은 본디 논할 것 없으나 남교와 북교, 우사, 한강 등 여러 곳의 제단에는 모두 망예위가 없는 데 망료를 설치할 것인가? 선농단에만 망료를 설치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온당치 않으니, 이번에 친히 제사 지낼 때는 미처 변통하지 못하였으나, 제사를 마친 뒤 여러 곳에 망예위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일체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단소 망에

이번 5월 23일 예조 판서 민진후가 청대하여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민진후가 아뢰기를, “선농단 망예위望燎位의 일에 대해 방금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자세히 물었더니, 여러 단소壇所에서는 돌을 놓고 돌 위에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쟁반 위에서 불을 태우기도 하는데, 모두 구덩이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단소는 수직守直하는 관원이 없고, 이른바 단지기壇直 역시 조금 먼 곳에 있어 석함石函을 봉한 뒤 혹시 더러워져 난처해질 우환이 있기에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구덩

● 諸壇望瘞有無

一. 傳曰：“朝見禮曹草記，則先農壇，無望瘞位，以望燎位設事，稟啓矣。社稷壇則固無可論，而南北郊·雩祀·漢江等，諸處祭壇，皆無望瘞位，而設望燎耶？先農壇獨爲望燎，則事體未安，今番親祭時，則雖未及變通，祭罷後，卽問其諸處望瘞有無，一體爲之事，分付。”

● 壇所望瘞

一. 今五月二十三日，禮曹判書閱請對引見入侍時，禮曹判書閱所啓：“先農壇望瘞位事，纔有傳教矣。詳細問之，則諸壇所，或置石就石上燎火，或於盤上燎火，而皆不設坎云。蓋壇所，既無守直官員，所謂壇直，亦在稍遠之地，石函封鎖之後，或有污穢難處之患，此亦不可不慮。曾前不爲設坎

이를 설치하지 않는 데는 의도가 없지 않은 듯합니다. 일의 형세는 비록 이와 같으나 반드시 망예위를 설치합니까?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반드시 망예위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직은 본디 논할 것 없고, 그 밖의 단소는 간혹 망예위가 있으나 이곳만 없으니 온당치 않은 듯하다. 그러므로 전교에서 여러 곳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 일체 하라고 하였다. 다른 곳에 망예위가 없다면 이곳 역시 설치할 필요 없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앞으로는 예전대로 망료위를 설치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者，似不無其意。事勢雖如此，必設望瘞位乎？敢此仰稟。”

上曰：“予亦非欲必設望瘞位也。社稷固無可論，其他壇所，或有望瘞位，而獨此無之，則似爲未安，故傳教中，使問諸處有無，一體爲之矣。他處既無望瘞位，則此亦不必設之矣。” 鎮厚曰：“此後依前設望瘞位乎？” 上曰：“依爲之。”

갑신년¹⁷⁰⁴ 5월 26일

● 7차 기우제와 동자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지금 설행해야 하는데 서울 가까운 산천은 모두 이미 두루 설행하였고 더 이상 남은 곳이 없습니다. 풍운뇌우·산천·우사는 예전에 재차 제사를 지냈으나 번거롭게 고한다는 혐의를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 다시 중신을 보내 설행하겠습니다.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

甲申五月二十六日

● 七次, 童子.

一. 曹單子：“七次祈雨祭，今當設行，而近京山川，皆已遍行，更無餘處，風雲雷雨·山川·雩祀，曾雖再次行祭，瀆告之嫌，有不暇顧，不卜日，來二十九日，更遣重臣設行，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閭

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동자군 실차實差 100명, 예차預差 50명은 선명한 의복을 입은 자로 가려 뽑아 하루 전에 점고하고 그대로 재숙齋宿 하라고 형조에 공문을 보냈다. 무신 헌관과 감찰은 공복公服을 착용하고 누기漏器의 숫자대로 둘러서며, 동자군 50명씩 돌아가며 내자시, 내점시, 예빈시가 음식을 대접하고, 향을 받는 것은 29일에 하며, 재계는 없고, 이튿날과 사흘째의 향은 제용감에서 진배한다.】

● 적대

“이 감결은 이번 29일 7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다시 중신을 보내 설행하고,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를 지낼 때의 적대楹大 등의 일은 감역관을 따로 정하여 속히 거행하는 일입니다.”

● 전사자가 있는 곳에 제사를 지내다.

이번 5월 26일 경상 감사 김연金演이 머물러 대령하다가 성상이 인견하여 입시하였을 때, 전사자가 있는 곳에 근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답전 하교하였다. 【근신近臣은 옥당玉堂이다.】

閭屏柳，亦於同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童子軍實差一百名，預差五十名，衣服鮮明者抄擇，前一日逢點，仍爲齋宿事，移文刑曹. 武獻官·監察，着公服，以漏器數回立，童子軍五十名式輪回，供饋內資·內贍·禮資，受香二十九日爲之，無齋戒，翌日三日，香濟用監進排.】

● 楹大

一. “右甘結，今二十九日，七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更遣重臣設行，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時，楹大等事，別定監役官，急速舉行事.”

● 戰亡處致祭

一. 今五月二十六日，慶尙監司金演留待引見入侍時，戰亡處，遣近臣致祭事，榻前下教，【近臣玉堂】

● 날짜를 정하다.

예조의 단자에,

“전사자가 있는 곳에 근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민충단^{愍忠壇}은 택일하지 말고 이달 28일 설행하며, 험천^{險川}·쌍령^{雙嶺}은 이달 30일 설행하되, 제물의 진배와 집사관의 차정, 단소의 수리와 청소 등의 일은 전례를 살피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와 경기 감영에 아울러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공문의 결어에 “신사년¹⁷⁰¹대로 거행하고, 의주^{儀註}는 경술년¹⁶⁸⁰ 등록에 부록으로 적힌 것을 제관에게 써서 준다.” 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5월 30일

● 굶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서부 주부^{西部主簿} 이상징^{李商徵}의 상소로 인하여 그간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일체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관에게 날을 잡게 하였더니 오는 6월 6일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동교, 서교, 남교의 정결한 곳에 신사년¹⁷⁰¹의 전례대로 근신을 보내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定日

一. 曹單子：“戰亡處，遣近臣致祭事，命下矣。愍忠壇，則不卜日，今月二十八日設行爲白乎旆，險川·雙嶺，則今月三十日設行爲白乎矣，祭物進排·執事官差定·壇所修掃等事，考例舉行事，各該司京圻監營并以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行移結語，依辛巳年舉行事，儀註，則庚戌年膳錄所付書寫書給祭官。】

甲申五月三十日

● 餓死人致祭

一. 曹啓曰：“以西部主簿李商徵上疏，有前後餓死人等，一體致祭事，令該曹舉行之命矣。令日官推擇，則來六月初六日爲吉云，以此日，東西南三郊淨潔處，依辛巳年例，遣近臣設行，何如？” 傳曰：“允。”

갑신년¹⁷⁰⁴ 6월 2일

● 8차 기우제와 동자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를 사직·북교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늘 5일 설행하며, 경회루慶會樓 연못가의 석척
 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 역시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6월 7일

● 9차 기우제. 문을 여닫고 토룡제를 설행할지는 다시 여쭙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경복궁 연못가의 동자 기우童子祈雨는 비가 오늘 그쳤
 으니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
 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9차 기우제를 내일로 계품
 하려고 하였는데, 방금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연달
 아 설행하라는 특교가 있었습니다. 차례로 말하자
 면 종묘에 설행해야 할 듯한데, 그간 친히 기도한 것
 까지 합하여 제사를 지낸 것이 이미 3차에 이르렀습
 니다. 한결같이 번거롭게 고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나머지 여러 곳에 제사를 지낸 것도 모두 두세 차례
 인데, 오직 용산강과 저자도만 한 차례 설행하였습

六月初二日

● 八次, 童子

一. 曹單子: “八次祈雨祭, 社稷·北郊, 遣重臣, 不卜日, 來初五日設行, 而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 亦於同日爲始, 三日而止事, 知委, 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教.

六月初七日

● 九次, 開閉門土龍更稟

一. 曹啓曰: “傳曰: ‘景福宮蓮池邊童子祈雨, 雨止今日, 不待明日, 祈雨祭連次設行事, 分付該曹’事, 命下矣. 九次祈雨祭, 欲於明日啓稟矣, 卽者有不待明日連次設行之特教, 以次第言之, 則似當設行於宗廟, 而前後行祭并親禱, 既至三次, 一向瀆告, 卽所未安. 其餘諸處行祭, 亦皆二三次, 而唯龍山江·猪子島, 只行一次, 不卜日, 來初十日, 更遣重臣設行, 於龍山江·猪子島, 而閉南門開北門·遷市等事, 亦自

니다.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 다시 중신을 보내 용산강과 저자도에 설행하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도 그날부터 거행하고, 토룡제土龍祭 역시 택일하여 설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해년¹⁶⁴⁷에 가뭄의 재해가 몹시 심하여 모화관慕華館·경회루慶會樓·춘당대春塘臺 연못가에서 동자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였으니 전례를 살펴 거행하고, 토룡제는 9차 이후에 다시 내게 물으라.”

하였다.

● 춘당대의 동자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예조}의 초기에 대해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해년¹⁶⁴⁷에 가뭄의 재해가 몹시 심하여 모화관·경회루·춘당대 연못가에서 동자 기우제를 연달아 설행하였으니 전례를 살펴 거행하고, 토룡제는 9차 이후에 다시 내게 물으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춘당대 연못가의 동자 기우제도 10일에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其日舉行，土龍祭，亦爲擇日設行事，知委各該司，何如？”

傳曰：“依啓。丁亥年，因旱災太甚，慕華館·慶會樓·春塘臺池邊童子祈雨，連次設行，考例舉行，而土龍祭，九次後更稟爲之。”

● 春塘臺童子祈雨

一. 曹啓曰：“因本曹草記，傳曰：‘依啓。丁亥年，因旱災太甚，慕華館·慶會樓·春塘臺池邊童子祈雨，連次設行，考例舉行，而土龍祭，九次後更稟爲之’事，命下矣。春塘臺池邊童子祈雨，亦於初十日爲始，三日而止事，知委各該司之意，敢啓。”傳曰：“知道。”

갑신년¹⁷⁰⁴ 6월 10일

● 동자군의 재숙

승정원이 아뢰기를,
 “춘당대 연못가의 동자 석척 기우제소의 헌관과 감찰이 전하는 말에,
 ‘날이 저물어 우선 파한 뒤 헌관과 감찰은 궐내에 머물러야 하는데, 동자 1백 명을 궐 밖으로 내보내면 치재하는 본뜻이 전혀 없으니, 이러한 뜻을 넘기지 시 여쭙어 분부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조의 해당 아전을 불러 물으니,
 ‘정해년¹⁶⁴⁷의 전례를 살펴보니 근거할 만한 글이 없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궐문이 닫히기 전에 형세상 초기를 올려 여쭙어 정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헌관이 이미 청양문^{靑陽門} 밖에서 재숙^{齋宿}하니, 동자가 궐 밖의 민간에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헌관이 재숙하는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머물러 묵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이렇게 분부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6월 1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五寸}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甲申六月初十日

●童子軍齋宿

一. 政院啓曰：“春塘臺池邊童子蜥蜴祈雨所獻官·監察送言，日暮姑罷之後，獻官·監察，當留宿闕內，而童子一百名，出送闕外，則殊無致齋本意，以此意微稟分付爲言矣。招問禮曹該吏，則以爲取考丁亥年前例，既無可據之文，日勢已暮，闕門未閉之前，勢未及草記稟定云。獻官既已齋宿於靑陽門外，則童子不當散處於闕外閭閻，並於獻官齋宿之處，限祈雨間留宿，似爲合宜。以此分付之意，敢啓。” 傳曰：“知道。”

甲申六月十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李震碩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갑신년1704 6월 13일

● 토룡제는 다시 보고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예전에 본조예조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토룡제는 9차
기우제 이후 다시 여쭙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비가 제법 충분히 내렸으니, 토룡제는 우선 설
행하지 말고 앞으로 다시 형세를 보아 여쭙어 처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1704 6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의 수본에,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震碩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寸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甲申六月十三日

● 土龍祭更觀稟

一. 曹啓曰: “曾因本曹草記,
有土龍祭九次後更稟爲之之
命矣. 日間雨澤頗洽, 土龍祭,
姑勿設行, 更觀前頭形勢, 而
稟處, 何如?” 傳曰: “允.”

甲申六月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震碩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진석李震碩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도漢江津渡의 수본에,
‘이번 10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5촌이 불어났습
니다.’

하였습니다.”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震碩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震碩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渡手
本內: ‘今初十日下雨後, 本津
常流水基良中, 尺量則以布帛
尺, 五尺五寸加漲溢’是如爲白
臥乎事.” 啓. 【當以別將姓名書
啓, 而罷職未差, 故如是.】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별장의 성명을 써서 아뢰어야 하나, 파직하고 아직 차임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다.】

● 남문을 여는 등의 일

예조가 아뢰기를,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어 시장을 옮기는 등의 일은 모두 가뭄을 근심하고 재해를 쫓기 위해 모든 방도를 다 하는 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소간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장맛비가 이와 같아 기도하는 일을 모두 이미 정지하였으니, 이 일을 복구하는 것은 가을까지 천천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례를 살펴도 명백하게 근거 삼을 것이 없으니, 오늘부터 남문을 열고 북문을 닫고 시장을 돌려놓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6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弼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開南門等事

一. 曹啓曰：“閉南門開北門·遷市等事，蓋出於悶旱禳災，靡不用極之道，而其間亦不無多小弊端矣。卽今霖雨如此，祈禱之舉，皆已停罷，則此事復舊，不必遲待秋節，而考之前例，亦無明白可據。自今日，開南門閉北門·遷市之意，分付，何如？”傳曰：“允。”

甲申六月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崔弼金手本內：‘今朝下雨，水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啓。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도漢江津渡의 수본에,
 ‘16일에 비가 내린 후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7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갑신년¹⁷⁰⁴ 6월 29일

● 기우제 순서의 정식

이번 6월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
 시하였을 때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청대하였을 때 기우제의 일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의 재해는 나라가 반드시 벗어날 수 없
 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우제의 규례는
 몹시 난잡하니, 대신에게 물어 한번 바로잡아 영구
 히 규례로 삼으소서.’
 라고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이 감히 먼저 차
 례를 정하여 직접 가서 대신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삼각산·목멱산·한강의 제관은 으레 삼
 품관으로 차임하여 보내고, 산천은 우사·뇌우의 신
 에 비해 조금 가벼우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 마땅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삼각산·목멱산·한강
 은 1차, 용산강·저자도는 2차, 우사·뇌우는 3차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좌의정 이여李畬는 우사·뇌우가 실로 기우제

一. 曹單子：“節呈漢江津渡手
 本內：‘十六日下雨後，本津常
 流水基良中，以布帛十七寸加
 漲溢’是如爲白臥事。” 啓.

六月二十九日

● 祈雨祭次序定式

一. 今六月二十五日，大臣·備
 局堂上引見入侍時，禮曹判
 書閔鎭厚所啓：“臣於頃日請
 對時，因祈雨祭事，以水旱之
 災，有國之所必不免，而我朝
 祈雨祭式例，甚爲雜亂，問于
 大臣，一番釐正，以爲永規之
 意，陳達蒙允矣。臣乃敢先自
 排次，親往問議于諸大臣，而
 蓋臣意，則三角·木覓·漢江祭
 官，例以三品官差送，山川，比
 雩祀·雷雨之神，亦稍輕，自
 下達上，似爲得宜，故以三角
 ·木覓·漢江爲初次，龍山·楮
 島爲再次，雩祀·雷雨爲三次。
 而左議政李畬以爲：‘雩祀·雷

의 주된 대상이니, 제관의 차례를 바꾸더라도 이것을 1차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부사 윤지선 尹趾善은 신이 배정한 것과 좌의정이 말한 것이 각기 의도가 있으니 모두 안 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천군 平川君 신완 申完은 신이 배정한 것이 옳다고 하였고, 판부사 서문중 徐文重의 뜻도 그러합니다. 다만 좌의정은 반드시 뇌우에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면 1차는 차례가 전도된 듯하니, 차라리 용산강·저자도와 바꾸어 2차에 선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상의 앞에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고, 좌의정 이여가 아뢰기를,

“『오례의 五禮儀』에 우사와 풍운뇌우를 기우제 지낼 장소로 삼았으니, 여기서 응답이 없으면 산천의 여러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이것이 이른바 ‘여러 곳에 두루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예법의 의도가 이와 같은 듯하므로 예전에 이 뜻을 민진후에게 언급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신이 제 소견을 억지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祀典의 본뜻으로 말하자면 풍운뇌우가 주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풍운뇌우가 참으로 주가 되어야 하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예조 판서의 의견도 소견이 있다.”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雨, 實主祈雨, 祭官雖倒次, 當以此爲初次’云. 判府事尹趾善以爲: ‘臣之所排, 左相之所言, 各有其意, 皆未爲不可’云. 平川君申完, 以臣之所排爲是, 判府事徐文重之意亦然, 而但以爲: ‘左相, 如必欲先行於雷雨, 則初次, 終覺倒次, 無寧如龍山·楮島, 相換而行於再次’云. 此不可不定奪於上前, 故敢此仰稟.’ 左議政李曰: “『五禮儀』, 以雩祀及風雲雷雨, 爲祈雨之所, 於此無應, 然後似當禱於嶽瀆諸神, 所謂遍走群望者也. 禮意似如此, 故曾及於此意於閣矣. 諸議如此, 則臣不必強立己見, 而以祀典本意言之, 則風雲雷雨, 似當爲主矣.” 上曰: “風雲雷雨, 固當爲主, 而自下達上, 似爲得宜, 禮判之意, 亦有所見矣.” 鎮厚曰: “然則以臣所排次者, 仍爲書入啓下乎?” 上曰: “依爲之.” 鎮厚曰: “祈雨祭, 周而復始, 故三角等處, 再次之時, 又以三品官差定, 則

“그렇다면 신이 배정한 차례를 써넣어 계하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기우제는 한 번 돌고 다시 시작하므로 삼각산 등의 장소는 2차로 설행할 때 또 3품 관원을 차임하여 정하면 성상께서 간혹 특별히 근시를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근시를 바로 계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관부사 서문중은,

‘누차 기우제를 지낼 때 대신을 보내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 예전에는 해당 조에서 감히 곧장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일의 체모가 자별하기 때문이지만, 지금 만약 바로잡으면 종묘사직 등에 2차 기우제를 지낼 때 곧장 대신으로 계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좌의정 이여가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옳으니 이대로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自上, 或特命遣近侍矣. 今後, 以近侍, 直爲啓下, 恐宜, 未知何如?” 上曰: “依爲之.” 鎮厚曰: “判府事徐又以爲: ‘累次祈雨之時, 不可無遣大臣之舉, 曾前該曹之不敢直請, 雖由於事體之自別, 而今若釐正, 則似當於宗社等處再次之時, 直以大臣啓下’云. 此未知何如.” 左議政李曰: “此言誠然, 依此定式, 似好矣.” 上曰: “依爲之.” 鎮厚曰: “楊津·德津·五冠山·紺岳山·冠岳山·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等處, 道里稍遠, 頗有弊端, 故臣曾以自本道設行之意, 陳達矣. 依此定式施行乎?” 上曰: “外方山川, 皆自各其道設行, 而此等處, 則以距京稍近之故, 自京差送矣. 今後亦令本道, 依外方例設行, 可也.” 鎮厚曰: “戰亡處, 癘疫·飢死人, 先農壇致祭事, 曾不入於循例設祭之中, 必待特教設行, 故今亦以待特教設行之意, 書於末端矣.” 上曰: “依爲之.”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관악산·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등의 장소는 거리가 조금 멀어 제법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예전에 본도에서 설행하자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이대로 정식으로 삼아 시행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방의 산천은 모두 각 도에서 설행하였으나, 이러한 곳들은 서울에서 조금 가까우므로 서울에서 차임하여 보냈다. 앞으로는 역시 본도에서 지방의 전례대로 설행하라.”

하였다. 민진후가 아뢰기를,

“전사자가 있는 곳과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은 사람, 선농단에서 제사 지내는 일은 예전에 전례대로 제사를 설행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특교를 기다려 설행하였으므로 이번에도 특교를 기다려 설행하라고 말단에 쓰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6월 30일

● 기우제 순서에 대한 별단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 순서 별단은 다음과 같다. 삼각산【3품 관원】

甲申六月三十日

● 祈雨次序別單

一. 曹單子: “祈雨祭次序別單
三角山【三品官】·木覓山【三品

·목멱산【3품 관원】·한강【3품 관원】, 이상은 1차이다. 용산강【재신】·저자도【재신】, 이상은 2차이다. 풍운뇌우·산천【재신】·우사【재신】, 이상은 3차이다. 북교【재신】·사직【중신】, 이상은 4차이다. 종묘【중신】, 이상은 5차이다. 삼각산【근시】·목멱산【근시】·한강침호두【근시】, 이상은 6차이다. 용산강【중신】·저자도【중신】, 이상은 7차이다. 풍운뇌우·산천【중신】·우사【중신】, 이상은 8차이다. 북교【중신】·모화관【慕華館】연못가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무신 가선대부】·민간의 병류, 이상은 9차이다. 사직【대신】·경회루慶會樓 연못가 석척동자 기우제【무신 가선대부】, 이상은 10차이다. 종묘【대신】·춘당대 연못가 석척동자 기우제【무신 가선대부】·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고 시장을 옮기는 일, 이상은 11차이다. 오방 토룡제【3품 관원】, 이상은 12차이다. 양진·덕진·오관산·감악산·송악산·관악산·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 분시, 이상은 본도本道에서 설행한다. 전사자가 있는 곳, 전염병이나 굶어 죽은 사람·선농단, 이상 특교特敎를 기다려 설행한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서울과 지방의 총재로 기양제祈穰祭를 지내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행 이조 판서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벌레의 재해는 비단 갈두산葛頭山만 그럴 뿐 아니

官】·漢江【三品官】，以上初次，龍山江【宰臣】·楮子島【宰臣】，以上再次，風雲雷雨·山川【宰臣】·雩祀【宰臣】，以上三次，北郊【宰臣】·社稷【重臣】，以上四次，宗廟【重臣】，以上五次，三角山【近侍】·木覓山【近侍】·漢江沈虎頭【近侍】，以上六次，龍山江【重臣】·楮子島【重臣】，以上七次，風雲雷雨山川【重臣】·雩祀【重臣】，以上八次，北郊【重臣】·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武臣嘉善】·閭閻屏柳，以上九次，社稷【大臣】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武臣嘉善】，以上十次，宗廟【大臣】·春塘臺池邊蜥蜴童子祈雨【武臣嘉善】·閉南門開北門·遷市，以上十一次，五方土龍祭【三品官】，以上十二次，楊津·德津·五冠山·紺嶽山·松嶽山·冠嶽山·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柴，以上自本道設行，戰亡處·癘疫飢死人·先農壇，以上待特敎設行.” 啓.

라 고금도^{古今島}·완도^{莞島} 등의 장소에도 이러한 우환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점차 번성하면 배를 만들 재목이 이 때문에 없어질 것입니다. 급할 때 사용할 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니, 실로 나라의 막대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에도 서울의 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한 일이 있으니, 향축을 내려보내 수사로 하여금 설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고,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는, ‘신 역시 이 일을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진 뒤에 벌레는 으레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들었으므로 우선 다시 형세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유가 이미 말을 꺼냈으니, 신이 다 아뢰고자 합니다. 비단 전라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황해도에도 벌레의 재해 때문에 비국에 알렸고, 도성과 경기도 점차 치성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를 지내면 과연 영험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든 방도를 다 하는 도리에 있어서 심상하게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모두 제사를 지낸다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고, 좌의정 이여^{李爾}는, ‘이것은 몹시 급박한 우환입니다. 예로부터 기양제를 지내는 법이 있었으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라도와 평안도는 제사를

● 京外蟲災祈禱

一. 曹啓曰：“今六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吏曹判書李濡所啓：‘蟲損之災，非但葛頭山爲然，似聞古今島·完莞島等處，亦不無此患云。若或漸至熾蔓，則缸材從此盡矣。緩急之用，更無所賴，實是國家莫大之憂，此非人力之所可止者，而前日京山，亦有設祭祈禱之事，下送香祝，令水使設行，似當矣。’禮曹判書閔曰：‘臣亦欲以此事仰達，而似聞潦雨之後，蟲勢例爲稍殺，故姑欲更觀形勢矣。今李既已發端，臣請畢陳。非但湖南爲然，海西亦以蟲災，報備局，京城及圻甸，漸至熾盛，雖未知設祭之果有靈驗，而其在靡不用極之道，不可置之尋常，今若並爲設祭，則似爲得宜矣。’左議政李曰：‘此爲切急之患，而自古有禳災之法，使之設祭，似好矣。’上曰：‘依爲之’事，命下矣。湖南·海西可合設祭處，令本道，商

지내기 합당한 곳을 본도로 하여금 헤아려 아뢰게 한 뒤 향축을 내려보내고, 이 밖의 다른 도 역시 간혹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일체 알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도성과 경기로 말하자면 근래 과연 조금 줄어드는 기세가 있다고 하니, 우선 앞으로 보아 다시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7월 1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모을노^{朴毛乙老}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갑신년¹⁷⁰⁴ 7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이상건^{李尙建}의 첩정에,

‘이번 11일 장맛비에 수표는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

量啓聞後，下送香祝，此外他道，亦或有如此之事，一體知會，恐爲得宜．至於京城·畿甸，則近來果有稍殺之勢云，姑觀前頭，更爲稟處，何如？”傳曰：“允．

甲申七月初十日

● 水標

一．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朴毛乙老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啓．

七月十一日

● 水標

一．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李尙建牒呈內：‘今十一日潦水，水標段，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九尺八寸加漲

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9척 8촌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제자인을 찍었다.

갑신년¹⁷⁰⁴ 7월 21일

● 황해도의 총재로 기양제를 지내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임윤원^{任胤元}의 계본에,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번에 제하하신 예조의 계사에,
 『지난 6월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
 시하였을 때, 행 이조 판서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벌
 레의 재해는 비단 갈두산^{葛頭山}만 그러할 뿐 아니라
 고금도^{古今島}·완도^{莞島} 등의 장소에도 이러한 우환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점차 번성하면 배를 만들
 재목이 이 때문에 없어질 것입니다. 급할 때 사용할
 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니, 실로 나라의 막대
 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에도 서울의 산에서 제사를 지내
 며 기도한 일이 있으니, 향축을 내려보내 수사로 하
 여금 설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고,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는 『신 역시 이 일을 아뢰고
 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진 뒤에 벌레는 으레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들었으므로 우선 다시 형세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유가 이미 말을 꺼냈으
 니, 신이 다 아뢰고자 합니다. 비단 전라도만 그러한

溢’是如爲白臥乎事.” 啓.

七月二十一日

● 黃海蟲災祈禳祭

一. 黃海監司任胤元啓本內：
 “節到付禮曹關內：『節啓下教
 曹啓辭，「去六月二十五日，大
 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
 吏曹判書李濡所啓：『蟲損之
 災，葛頭山爲然，似聞古今島
 ·完莞島等處，亦不無此患云。
 若或漸至熾蔓，則舡材，從此
 盡矣。緩急之用，更無所賴，
 實是國家莫大之憂，此非人力
 之所可止者，而前日，京山亦
 有設祭祈禳之事，下送香祝，
 令水使設行，似當矣。』禮曹判
 書閔曰，『亦欲以此事仰達，而
 似聞潦雨之後，蟲勢例爲稍
 殺，故姑欲更觀形勢矣。今李
 濡既已發端，臣請畢陳。非但
 湖南爲然，海西亦以蟲災，報
 備局，京城及畿甸，漸至熾盛，

것이 아니라 황해도에도 벌레의 재해 때문에 비국에
알렸고, 도성과 경기도 점차 치성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를 지내면 과연 영험이 있는지 알 수 없으
나, 모든 방도를 다 하는 도리에 있어서 심상하게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모두 제사를 지낸다면 마땅
할 듯합니다.』 하였고, 좌의정 이여李畬는 『이것은 몹
시 급박한 우환입니다. 예로부터 기양제를 지내는
법이 있었으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
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라고 명을 내
리셨습니다. 전라도와 평안도는 제사를 지내기 합당
한 곳을 본도로 하여금 헤아려 아뢰게 한 뒤 향축
을 내려보내고, 이 밖의 다른 도 역시 간혹 이와 같
은 일이 있으니 일체 알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도성과 경기로 말하자면 근래 과연 조금 줄어드는
기세가 있다고 하니, 우선 앞으로 보아 다시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여 계하하였습니다. 계하한
내용을 살펴 시행하십시오.’

라고 관문을 보냈습니다. 소나무를 기르는 산에 벌
레의 재해가 붙어났으니, 제사를 지낼 만한 곳을 급
히 첩보牒報하여 속히 아뢰게 하라는 일로 소강진所江
鎭에 분부하였더니, 해당 진의 방어사 이여송李汝松의
첩정에,

‘이번 제사의 설행은 예전에 단소를 설치한 적이 없
는 곳이니 갑자기 단정할 수 없기에 여러 장교와 상
의하였더니, 도내 연변의 소나무를 기르는 공산公山

殊未知設祭之果有靈驗，而其
在靡不用極之道，亦不可置之
尋常，今若並爲設祭，則似爲
得宜矣.』 左議政李畬曰：『此
爲切急之患，而自古有禳災之
法，使之設祭，似好矣.』 上曰：
『依爲之』事，命下矣. 湖南·
湖西可合設祭處，令本道，商
量啓聞後，下送香祝，此外他
道，亦或有如此之事，一體知
會，恐爲得宜. 至於京城·畿
甸，則近來果有稍殺之勢云，
姑觀前頭，更爲稟處，何如?』
傳曰：「允」事，啓下爲有置.
啓下內辭緣，奉審施行事，關
是白置有亦. 養松山蟲災滋蔓，
可以設祭處，急急牒報，以爲
趁卽啓聞之地事，分付所江鎭
爲白有如乎，節呈同鎭防禦使
李汝松牒呈內：‘今此設祭，曾
未有設壇之所，猝不可斷定，
與諸將校相議，則道內沿邊，
公·私山養松諸處，則姑無蟲
損之患是乎矣，至於登山鎭，
則松蟲熾盛，自鎭東南邊，幾
盡食損是遣，西北邊段，姑未

·사산^{私山} 여러 곳은 아직 벌레의 우환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진^{登山鎭}은 송충이가 치성하여 진의 동남쪽부터 거의 다 먹었고, 서북쪽은 아직 치성하지 않으니, 제사는 이곳에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등산진 남쪽 등산곶^{登山串} 어귀는 인가가 조금 멀고 바다를 마주한 정결한 곳이므로 등산곶 어귀를 제사 지낼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하신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황해 감사 임윤원의 장계를 보니, 도내 연변의 소나무를 기르는 공산·사산 여러 곳은 아직 벌레의 우환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산진은 송충이가 치성하여 거의 다 먹었으니, 등산곶 어귀를 제사 지낼 곳으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양제의 향축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마련하여 급히 내려보내 때맞추어 택일하여 설행하게 하고, 제물과 제관·집사는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여 배정하고 진배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43년 7월 21일, 동부승지 맹만택^{孟萬澤}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7월 8일은 입추 절기이니, 정전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熾盛，祭祀宜設於此處’是如爲白臥乎所，登山鎭南邊，登山串頭，則人家稍遠，臨海精潔處是乎等以，同登山串頭，祭所斷定”事據曹啓曰：“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黃海監司任啓聞，則道內沿邊，公·私山養松諸處，姑無蟲損之患，而登山鎭，松蟲熾盛，幾盡食損，登山串頭，祭所斷定是如爲白有置。祈禳祭香祝，令該司照例磨鍊，急速下送，隨時卜日設行，而祭物及祭官·執事，亦令本道，差定進排之意，分付，何如？”康熙四十三年，七月二十一日，同副承旨臣孟萬澤次知，啓依允。

● 還御正殿

一. 曹啓曰：“今七月初八日，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膳等事，依例舉行事，分付，何如？”傳曰：“允。”【戶曹·京折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호조·경기·공상^{供上}하는 각 관사·내시부·액정서·경영주인】

·供上各司·內侍府·掖庭署·京營主人】

갑신년¹⁷⁰⁴ 8월 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甲申八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朴同伊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갑신년¹⁷⁰⁴ 8월 14일

● 전라도에 기양제를 지낸다.

전라 감사 민진원^{閔鎭遠}의 서장^{書狀}에,
“방금 도착한 우수사 신찬^{申璨}의 첩정에,
‘방금 도착한 관찰사의 관문에,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예조의 계사에,
〈지난 6월 25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
시하였을 때, 행 이조 판서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벌
레의 재해는 비단 갈두산^{葛頭山}만 그러할 뿐 아니라
고금도^{古今島}·완도^{莞島} 등의 장소에도 이러한 우환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점차 번성하면 배를 만들
재목이 이 때문에 없어질 것입니다. 급할 때 사용할

甲申八月十四日

● 全羅祈禳祭

一. 全羅監司閔鎭遠書狀內：
“節到付右水使申璨牒呈內：
‘節到付使關內：『節到付禮曹
關內：『節啓下教曹啓辭：<去
六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行吏曹判書李濡
所啓：『蟲損之災，非但葛頭
山爲然，似聞古今島·莞島等
處，亦不無此患云。若或漸至
熾熾，則缸材，從此盡矣。緩急
之用，更無所刺，實是國家莫

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으니, 실로 나라의 막대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에도 서울의 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한 일이 있으니, 향축을 내려보내 수사로 하여금 설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고,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는 『신 역시 이 일을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진 뒤에 벌레는 으레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들었으므로 우선 다시 형세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이유가 이미 말을 꺼냈으니, 신이 다 아뢰고자 합니다. 비단 전라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황해도에도 벌레의 재해 때문에 비국에 알렸고, 도성과 경기도 점차 치성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를 지내면 과연 영험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든 방도를 다 하는 도리에 있어서 심상하게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모두 제사를 지낸다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고, 좌의정 이여李爾는 『이것은 몹시 급박한 우환입니다. 예로부터 기양제를 지내는 법이 있었으니,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전라도와 평안도는 제사를 지내기 합당한 곳을 본도로 하여금 헤아려 아뢰게 한 뒤 향축을 내려보내고, 이 밖의 다른 도 역시 간혹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일체 알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도성과 경기로 말하자면 근래 과연 조금 줄어드는 기세가 있다고 하니, 우선 앞으로 보아 다시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大之憂, 此非人力之所可止者, 而前日京山, 亦有設祭祈禳之事, 下送香祝, 令水使設行, 似當矣.』 禮曹判書閔曰: 『臣亦欲以此事仰達, 而似聞潦雨之後, 蟲災例爲稍殺, 故姑欲更觀形勢矣. 今李濡既已發端, 臣請畢陳. 非但湖南爲然, 海西亦以爲蟲損, 報備局, 京城及圻甸, 漸至熾盛, 雖未知設祭果有靈驗, 而其在靡不用極之道, 亦不可置之尋常, 今若並爲設祭, 則似得宜矣.』 左議政李爾曰: 『此爲切急之患, 而自古禳災之法, 使設祭, 似好矣.』 上曰: 『依爲之』 事, 命下矣. 湖南·海西, 可合設祭處, 令本道, 商量啓聞後, 下送香祝, 此外他道, 亦或有如此之事, 一體知會, 恐爲得宜. 至於京城·圻甸, 則近來果有稍殺之勢云, 姑觀前頭, 更爲稟處, 何如?> 傳曰: <允>事, 啓下爲有置. 啓下內, 奉審施行向事』 關是白置有亦. 海島中靈驗各山, 可以設祭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여 계하하였습니다. 계하한 내용을 살펴 시행하십시오.』

라고 관문을 보냈습니다. 해도海島 중에 영험한 산으로 제사 지낼 만한 곳을 관문이 도착한 즉시 본영本營에서 지적하여 첩보하여 향축을 계청할 것입니다.』

라고 관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水使가 전일에 갈두산葛頭山 등의 섬에 벌레 먹은 소나무를 적간摘奸하기 위하여 직접 가서 두루 살폈더니, 벌레가 누에처럼 먹은 곳이 간혹 있었으나 미처 처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멈추지 않으면 형세상 여러도에 퍼질 것이니 참으로 몹시 걱정입니다. 신지도薪智島가 관장하는 동곶東串과 잉읍거도荊邑巨島, 고금도古今島 등은 비록 치성하지 않으나 역시 벌레 먹은 우환이 있는데, 제거할 방법을 몰라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기양제를 지내겠다는 명령이 내려오니, 실로 재해에 대응하는 급선무입니다. 갈두산은 본영 근처 바닷가 여러 산의 조종祖宗이며, 고금도·완도·잉읍거도 등은 그 지엽입니다. 모두 먼 바다에 있어 갈두산과 거리가 멀지 않아 서로 바라다보일 뿐 아니라 단지 몇 개의 언덕만 있어 모두 제사를 지낼 만한 영험한 곳이 없습니다. 갈두산 달마봉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당하니,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

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갈두산의 송충이가 치성한 곳에 제사를 지낼 때 향축은 해당 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십시오.”

處，到關卽時，自本營指酌牒報，以爲香祝啓請之地向事」

關是乎亦乙用良，水使前日葛頭山等島，蟲損松摘奸次，親往遍審，則同蟲損如蠶食，而間有未及處是乎乃，若今不止，則勢將有延及諸島者，誠甚可慮是乎旅，薪智島，所掌東串之及，荊邑巨島，古今等段置，雖未熾盛，亦有蟲損之患是乎矣，莫知除去之方，夙夜憂慮是在如中，有此設祭祈禳之令，實爲應災之急務是如乎。葛頭山，卽本營近處沿海諸山之祖宗也，古今島·莞島·荊邑巨島等，乃其枝葉，而俱在於外洋，與葛頭山，相距不遠，相望之間岔不喻，只有數丘壠，而並無設祭靈驗之所，葛頭山達摩峯良中，設祭可合，緣由牒報爲臥乎所，牒呈是白置有亦。上項葛頭山，松蟲熾蔓處，設祭時香祝，令該曹磨鍊下送”事據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全羅監司閔狀啓，則葛頭山，蟲損如蠶食，而間

라는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에,
 “계하하신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전라 감사
 민진원의 장계를 보니, 갈두산은 벌레가 누에처럼
 먹은 곳이 간혹 있으나 미처 처치하지 못하였습니
 다. 잉읍거도·완도·고금도는 비록 치성하지 않으나
 역시 벌레 먹은 우환이 있습니다. 갈두산은 근처 바
 닷가 여러 산의 조종이고, 고금도·완도·잉읍거도 등
 은 그 지엽입니다. 갈두산 달마봉에 제사를 지내겠
 다고 하였으니, 장계의 내용대로 기양제의 향축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마련하여 급히 내
 려보내 때맞추어 택일하여 설행하게 하겠습니다. 제
 물과 제관·집사는 본도로 하여금 차출하고 배정하
 여 진배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43년 8월 14일 동부승지 신 김
 치룡(金致龍)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갑신년¹⁷⁰⁴ 11월 20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겨울이 절반이 지났는데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 눈
 이 쌓이는 것이 풍년의 징조인데 아직 세 차례 내리
 지 않았으니 내년의 걱정을 형언하기 어렵다. 기설
 제를 해당 조^曹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종묘·사직·북교에 전례대

有未及處，苐呂巨島·莞島·古
 今島等段置，雖未熾盛，亦有
 蟲損之患是乎矣，葛頭山，即
 近處沿海諸山之祖宗也，古今
 島·莞島·苐呂巨島等，乃其枝
 葉，葛頭山達摩峯良中，設祭
 亦爲自有臥乎所，依狀啓，祈
 禳祭香祝，令該司，照例磨鍊，
 急速下送，隨時卜日設行，而
 祭物及祭官·執事，亦令本道，
 差定進排之意，分付，何如？”
 康熙四十三年，八月十四日，
 同副承旨臣金致龍次知，啓依
 允。

甲申十一月二十日

● 祈雪

一. 曹啓曰：“備忘記：‘冬序過
 半，而日氣乖常。積雪驗豐，而
 三白尙靳，嗣歲之憂，有難形
 喻。祈雪祭，令該曹，不卜日設
 行’事，命下矣。宗廟·社稷·北
 郊，依前例，遣重臣，來二十三
 日，設行之意，分付，何如？”

로 중신을 보내 오는 23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향을 받는 날 정사^문辭는 모두 승정원에 보류하고 들이지 않았다.】

갑신년¹⁷⁰⁴ 11월 26일

● 2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설제를 설행한 지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여전히 따듯하며, 눈이 내릴 조짐이 더욱 없으니 이는 실로 범상치 않은 재해입니다. 2차 기설제를 설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례대로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내고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갑신년¹⁷⁰⁴ 11월 29일

● 기곡제

예조의 단자에,

“오는 1월 6일 상신일^{上辛日} 사직 기곡제는 전례대로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傳曰：“允.”【受香日呈辭，留院不入.】

甲申十一月二十六日

● 祈雪再次

一. 曹啓曰：“祈雪設行，已過累日，而天氣尚暖，雪意愈邈，此實非常之災異，不可無再次設行之舉，依前例，風雲雷雨·山川·雪祀，遣重臣，三角山·木覓山·漢江，遣近侍，不卜日，來二十九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十一月二十九日

● 祈穀祭

一. 曹單子：“來正月初六日上辛 社稷祈穀祭，依例，遣大臣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을유년¹⁷⁰⁵ 4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만억^{趙萬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윤4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5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승지강^{承智康}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乙酉四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萬億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寸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乙酉閏四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乙酉五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承智康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5월 14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과 여름 이래 비가 충분히 내리지는 않았으나 간혹 비가 조금 내려 완전히 메마르지는 않았으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월이 다 되도록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작년에 결정한대로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을유년¹⁷⁰⁵ 5월 18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五月十四日

● 初次

一. 曹啓曰：“今年春夏以來，雨澤雖不周洽，或有一雨，不至全然旱乾，故有所等待矣。節近季夏，淒風連吹，雨意漠然，前頭農事，誠爲可慮。祈禱之舉，不容少緩，依上年定奪，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不卜日，來十七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五月十八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楸子島，遣宰臣，不卜日，來二十一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을유년¹⁷⁰⁵ 5월 2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이남^{金二男}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5월 25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에 설행하라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五月二十二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二十五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二男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乙酉五月二十五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二十八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을유년¹⁷⁰⁵ 5월 28일

● 5차 기우제는 대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월 1일에 설행하겠습니다. 예문禮文에 ‘삭망제朔望祭가 별제別祭와 겹치면 별제만 설행한다.’ 하였으니, 예문대로 기우제만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을유년¹⁷⁰⁵ 6월 1일

● 남교 친제

비망기에,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지 벌써 다섯 차례인데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막연하니 근심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친히 남교에서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4일로 정하여 행하게 하라.”

하였다.

● 출궁할 때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정축년¹⁶⁹⁷ 남교 기우

五月二十八日

● 五次祈雨, 遣大臣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宗廟, 遣重臣, 不卜日, 來六月初一日設行, 而禮文內: ‘朔望若值別祭, 則只行別祭’云, 依禮文, 只行祈雨祭事, 知委, 何如?” 啓依允, 遣大臣設行爲良如教.

六月初一日

● 南郊親祭

一. 備忘記: “憫旱禱雨, 已至五次, 雨意愈邈, 憂心如惓. 親禱南郊, 不容少緩, 其令禮官, 不卜日, 以初四日定行.”

● 出宮時私習

一. 曹啓曰: “取考臚錄, 則丁丑年南郊祈雨親祭時, 上於二

친제 때 성상께서 2경 초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와 단소(壇所)로 나아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고,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하는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제관과 집사는 3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왕세자의 아헌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왕세자가 궐문 밖에서 지영(祇迎)하고 지송(祇送)하는 예 및 아헌(亞獻)하는 예를 모두 마련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어가를 따를 것이니 지송하는 절차는 마련하지 말라.”

하였다.

● 단상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4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남교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

更初, 動駕出城, 詣壇所, 仍爲行祭還宮, 而無野次經宿之規矣. 出宮時刻, 今亦依此舉行, 而祭官·執事, 初三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及近侍, 依例並爲私習, 俾無失儀事, 知委, 何如?” 傳曰: “允.”

● 王世子亞獻

一. 曹啓曰: “今初四日, 南郊祈雨親祭時, 王世子, 闕門外祇迎祇送之禮及亞獻之禮, 並爲磨鍊乎? 敢稟.” 傳曰: “依啓. 旣已隨駕, 則祇送一節, 不當磨鍊矣.”

● 壇上修理

一. 曹啓曰: “今初四日, 南郊祈雨親祭時, 命下矣. 在前南郊親祭時, 壇上修理修補事, 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 眼同看檢. 今亦依此舉行, 亦

행하며,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해 속히 수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전하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4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 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에서 1일간 산재하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왕세자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4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왕세자는 별당에 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궁관宮官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정침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墻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시강원에 보부報府하였다.】

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修理事，分付，何如？”傳曰：“允。”

● 殿下齋戒

一. 曹單子：“今六月初四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王世子齋戒

一. 曹單子：“今六月初四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王世子，散齋二日於別堂，致齋一日於享所，宮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享所，諸衛之屬守衛墻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侍講院報府】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4일 남교 기우 친제 때 모든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堽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보부報府】

● 향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祗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4일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3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보부報府】

● 궁관·내시는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4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왕세자가 아헌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3일 새벽에 중사·승지·내시·향관들이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사사로이 연습할 때 세자궁의 내시 및 궁관 역시 흑단령 차림으로 가

● 享官齋戒

一. 曹單子：“今六月初四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堽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報府】

● 享官祗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祗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初四日，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三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祗迎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報府】

● 宮官內侍私習

一. 曹單子：“今六月初四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王世子亞獻事，啓下矣。初三日質明，中使·承旨諸享官，先詣祭所，私習時，世子宮內侍及宮官，亦以

서 참석하여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시강원에
 서 보부_{報府}하고 병조와 각 관사에 감결을 보냈다.】

● 왕세자를 향관이 지영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4일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3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대가가
 도착하면 지영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왕세자가 도
 착하면 역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시강원에
 서 보부_{報府}하고 각 관사에 감결을 보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_{張士維}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_{張士維}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黑團領，進參行禮，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教。【侍講
 院報府，兵曹各司移甘。】

● 王世子享官祗迎

一. 曹單子：“今六月初四日，
 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初
 三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
 領，大駕將至祗迎事，啓下矣。
 王世子至亦爲祗迎事，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
 如教。【侍講院報府，各司捧
 甘。】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흘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6월 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친제를 조금 미루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오랜 가뭄 끝에 이렇듯 단비가 내렸으니 참으로 지
극히 기쁘고 다행입니다. 지금 비가 그치지 않으니
남교에 친히 기도하는 일은 우선 조금 물렀다가 앞
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대신의 뜻
도 이와 같으니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보부. 1일에 글을 올리다.

보부^{報府},

1. 이번 6월 4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낸다.

臥乎事.” 啓.

乙酉六月初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親祭差退

一. 政院啓曰: “久旱之餘, 得
此甘霖, 誠極喜幸, 而卽今雨
勢不止, 南郊親禱, 姑爲差退,
以觀前頭, 恐合事宜, 大臣之
意, 亦如此, 惶恐敢啓.” 傳曰:
“依啓.”

● 報府. 初一日上書

一. 報府

一. 今六月初四日, 南郊祈雨

1. 제관과 집사는 3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중사·근시, 세자궁 내시·궁관과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한다.
1. 향관들은 3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대가와 왕세자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한다.
1. 향관들 및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와 궁관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堽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한다.

을유년¹⁷⁰⁵ 6월 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의 수본에,

親祭事.

一. 祭官·執事, 初三日質明,
先詣祭所, 與中使·近侍·世子
宮內侍宮官, 依例私習儀事.

一. 諸享官, 初三日質明, 先詣
享所, 大駕·王世子將至, 以黑
團領祇迎事.

一.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
者, 宮官應從升者, 並散齋二
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堽門
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六月初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6월 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도 별장^{漢江津渡別將} 이숙화^{李肅和}의 첩정에,

‘이번 3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
서 포백척^{布帛尺}으로 6척 4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標看審, 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乙酉六月初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渡別
將李肅和牒呈內: ‘今初三日下
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
布帛尺, 六尺四寸加漲溢’是如
爲白臥乎事.” 啓.

을유년¹⁷⁰⁵ 6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장사유^{張士維}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6월 2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7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애남^{李愛男}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六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張士維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五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愛男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애남李愛男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하하였다.

을유년1705 7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애남李愛男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도진 별장漢江渡津別將 이숙화李肅
和의 첩정에,
‘지난 6월 29일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愛男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下.

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愛男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渡津
別將李肅和牒呈內: ‘去六月
二十九日下雨後, 本津常流水
基良中, 以布帛尺, 七尺三寸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3촌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을유년¹⁷⁰⁵ 7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돌쇠^{崔乙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4월 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乙酉七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乙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丙戌四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병술년¹⁷⁰⁶ 4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5월 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말종^{金耑種}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5월 1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말종^{金耑種}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四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初七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耑種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耑種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5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5월 24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한강진도 별장^{漢江津渡別將} 이숙화^{李肅和}의 첩
정에,
‘이번 20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2촌이 늘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丙戌五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五同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四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渡別
將李肅和牒呈內: ‘今二十日下
雨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
布泉帛尺, 五尺二寸加漲溢’是
如爲白臥乎事.” 啓.

병술년¹⁷⁰⁶ 5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5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¹⁷⁰⁶ 5월 27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도 별장^{漢江津渡別將} 이숙화^{李肅和}
의 첩정에,

‘이번 25일에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

五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五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六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五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五月二十七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渡別
將李肅和牒呈內：‘今二十五日
下雨後，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十二尺五寸加漲溢’

준에서 포백척_{布帛尺}으로 12척 5촌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병술년₁₇₀₆ 6월 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_{朴同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₁₇₀₇ 4월 12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임신민_{林信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丁亥四月十二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林信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정해년¹⁷⁰⁷ 4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3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최두응^{崔斗應}의
첩정에,

‘이번 3일 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

四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六月初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三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崔斗應牒呈內: ‘今初三日下雨
後,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
帛尺, 五尺二寸加漲溢是如爲

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2촌이 붙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白臥乎事.” 啓.

六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六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정해년¹⁷⁰⁷ 6월 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최두응^{崔斗應}의
첩정에,

‘이달 4일 이후 장맛비가 크게 불어 물가의 인가가
모두 물에 잠겼으며,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
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26척 2촌이 불어났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1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입추 전의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요즘 장맛비가 계속 내려 거의 반달이 지나 시내와
도랑이 넘치고 곡식이 손상되니 실로 근래 보지 못

六月初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崔斗應牒呈內：‘今月初四日以
後，潦水大漲，水邊人家皆沈，
常流水基尺量，則以布帛尺，
二十六尺二寸加漲溢’是如爲
白臥乎事。” 啓.

丁亥六月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同伊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 立秋前祈晴

一. 曹啓曰：“近日潦雨支離，
殆將半月。川渠之漲溢，禾穀
之傷損，實是近年之所未見。

한 일입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는 비록 입추 전이라도 계품하여 기청제를 설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을 시작으로 설행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17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최두응^{崔斗應}의 첩정에,
‘이달 16일 강물이 크게 불어 강변의 민가가 침수되었습니다.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28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승두민^{承斗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在前如此之時，則雖立秋前，或有啓稟設行祈晴祭之例。大臣之意亦如此，四門禱祭，不卜日，來十六日爲始設行，三日而止事，知委各該司，何如？”
傳曰：“允。”

六月十七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崔斗應牒呈內：‘今月十六日，江水大漲，江邊民家漂沈。常流水基尺量，則以布帛尺，二十八尺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六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承斗民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안을 찍었다.

정해년¹⁷⁰⁷ 6월 25일

● 2차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어전에 나갔을 때 2차 기우제는 우선 며칠
본 뒤에 계품하여 설행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
뒤 장맛비가 연일 개지 않고 지금도 날이 갠 기약이
없으니, 곡식이 손상되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
다. 전례대로 2차 사문영제^{四門營祭}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설행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정해년¹⁷⁰⁷ 7월 23일

● 승정원에서 3차 기청제를 여쭙니 우선 앞으로 보겠다고 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가을비가 지루하게 계속되어 나흘 밤낮으로 크게
쏟아졌습니다. 한창 곡식의 이삭이 패는 때라 필시
손상된 것이 많을 것이니, 앞으로의 농사가 지극히
걱정입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3차 기청제
를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 설행한 전례가 있는

六月二十五日

● 祈晴再次

一. 曹啓曰：“頃日登對時，再
次祈晴祭，姑觀數日後，啓稟
設行事，下教矣。其後霪雨連
日不開，即今開霽無期，禾
穀之損傷，更無可言者。依前
例，再次四門營祭，不卜日，來
二十七日爲始設行，三日而止
事，知委各該司，何如？”傳
曰：“允。”

丁亥七月二十三日

● 政院三次祈晴稟。姑觀 前頭

一. 政院啓曰：“秋雨支離，四
晝夜大注，正當禾穀發穗之
時，傷害必多，前頭民事，極涉
可慮。從前如此之時，亦有三
次祈晴祭，宗廟·社稷，遣大臣
設行之例，而即今禮曹堂上，

데, 지금 예조 당상이 명을 받들고 지방에 있거나 정사^{呈辭}하여 말미를 받아 현재 공무를 행할 인원이 없어 계품하지 못하였습니다. 방금 대신의 뜻을 들으니 역시 속히 계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해당 방을 맡고 있으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을 맨 뒤의 가물은 농가에서 꺼리는 것인데, 홍수 이후에 한결같이 가물었으니 본디 좋은 징조가 아니다. 16일에 내린 비는 원래 단비였고, 18일에 내린 비는 한바탕 소나기였고, 어제의 비는 저녁이 되어서야 그쳤으며, 아침부터 오던 비 역시 크게 쏟아지지 않으니, 이른바 ‘나흘 밤낮으로 크게 쏟아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꺼낸 것인가. 참으로 알 수 없다. 더구나 개성 유수^{開城留守}의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한 장계에는 단지 18일의 소나기만 말하였으니, 16일에 내린 비가 여러 도에 두루 내렸을지는 확실할 수 없다. 이번 기청제의 청은 경솔한 듯하다. 지금 이미 날이 갠 조짐이 있으니 우선 앞으로 보아 다시 내게 물으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⁰⁸ 6월 1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或奉命在外, 或呈辭受由, 時無行公之員, 無以啓稟矣. 卽聞大臣之意, 亦以爲不可不趁速啓稟云, 臣待罪該房, 故敢此仰稟.” 傳曰: “鋤後之旱, 農家所忌, 極備之後, 一向旱乾, 本非佳兆也. 十六日之雨, 自是甘雨, 十八日之雨, 一陣驟雨, 昨日之雨, 向夕乃止, 朝來之雨, 亦不大注, 則所謂四晝夜大注之說, 何所據而發也? 誠未可曉也. 況開城留守雨澤狀啓, 但云十八日驟雨, 則十六日之雨, 遍及諸道, 亦未可必也. 今此祈晴之請, 似涉輕遽, 卽今已有開霽之意, 姑觀前頭, 更稟可也.”

戊子六月十三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傳曰: ‘自去月晦

“전교하기를,

‘지난달 그믐 무렵 비가 갠 뒤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비가 내릴 조짐이 없다. 한창 큰비가 내리는 계절에 가뭄이 또 이와 같은데, 입추가 머지않았으니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다. 예관으로 하여금 기우제에 대해 나의 뜻을 물어 설행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지난달 비가 그친 뒤로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니, 농사가 애타고 근심스럽기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자년¹⁷⁰⁸ 6월 1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間, 雨霽之後, 今過一旬, 雨意邈然, 正當大雨時行之節, 旱乾又復如此, 立秋不遠, 民事渴悶, 其令禮官, 祈雨祭稟旨設行’事, 命下矣. 自去月雨霽之後, 雨意邈然, 民事之渴悶, 誠如聖教,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不卜日, 來十六日設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六月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萬伊手本內: ‘今朝下雨, 水標看審, 則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무자년¹⁷⁰⁸ 6월 16일

● 전사자가 있는 곳에 제사를 지낸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여러 곳의 전사자에게 근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예전에 특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친제親祭를 지내고 비가 내렸기에 택일한 뒤에 우선 중지하였습니다. 기우제를 지금 또 설행하니, 이미 내린 명령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전 성상의 하교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여 감히 이렇게 우리러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험천 등의 장소에 제사를 지낸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전사자가 있는 곳에 근신을 보내어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전에 계하한 대로 험천險川·쌍령雙嶺 등의 장소에 근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에 설행하며, 제물을 진매하고 집사관을 차출하여 배정하고, 단소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등의 일은 속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행이行移의 결어結語에 “갑신년¹⁷⁰⁴의 전례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의주儀注는 경술년¹⁶⁷⁰ 등록에 부록으로 적힌 것을 써서 주었고, 제문은 어제御製이다.】

六月十六日

● 戰亡處致祭

一. 政院啓曰：“諸處戰亡人，遣近臣設祭事，曾有特敕，而因親祭得雨，卜日後，姑爲停止矣。祈雨祭今又設行，成命不可中寢，似當依前聖教舉行。敢此仰稟。”傳曰：“依爲之。”

● 險川等處設祭

一. 曹啓曰：“因政院啓辭，戰亡人處，遣近臣設行事，命下矣。依前啓下，險川·雙嶺等處，遣近臣，不卜日，來二十日設行，而祭物進排·執事官差定·壇所修掃等事，急速考例舉行之意，京圻監司處，知委，何如？”傳曰：“允。”【行移結語，依甲申年例，考例舉行。儀注則庚戌謄錄所付書寫書給。祭文則御製也。】

무자년¹⁷⁰⁸ 6월 1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정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비가 내린 뒤 다시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6월 22일은 바로 입추 절기이니, 정전^{正殿}으로 돌아가는 일과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들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니 결코 돌아가기 어렵다. 비가 내린 뒤 다시 내게 물으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⁰⁸ 6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검^{車斗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7촌 높이로 물

戊子六月十七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來二十日設行事, 分付,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還御得雨更稟

一. 曹啓曰: “今六月二十二日, 乃是立秋節, 還御正殿·復常膳等事, 依例舉行事, 分付, 何如?” 傳曰: “亢旱斯酷, 決難還御, 得雨後更稟, 可也.”

六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尺七寸流下’是如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자년¹⁷⁰⁸ 6월 2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중신을 보내 정성껏 기도하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⁰⁸ 6월 25일

● 남교 기우 친제

비망기에,

“아, 이번 가뭄은 어찌 이렇게 혹독한가. 여름철이 다 지나려 하는데 끝내 큰비가 내리지 않았다. 김맨 뒤의 가뭄은 농가에서 꺼리는 것인데, 7월이 되었으니 추수할 가망이 없다. 농사를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겠다. 내가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껏 남교에서 친히 기도할 것이니, 예관으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28일로 정하여 행하게 하라.”

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一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遣宰臣，不卜日，來二十四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遣重臣虔誠祈禱。

六月二十五日

● 南郊祈雨親祭

一. 備忘記：“噫，今茲旱亢，胡至此酷？三夏將盡，大需終靳，鋤後之旱，農家所忌，而節屆流火，望斷有秋，言念民事，罔知攸措。予當潔體虔誠親禱南郊，其令禮官，不卜日，以二十八日定行。”

하였다.

● 친제는 2경 초에 동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를 28일에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남교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는 2경 초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가 단소(壇所)에 가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고,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하는 시각은 이번에도 그대로 거행하고, 제관과 집사는 27일 새벽에 먼저 제사 지낼 곳에 가서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전례에 따라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28일 남교 기우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전례대로 함께 검사하며,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해 속히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세자의 아헌을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 親祭二更初動駕

一. 曹啓曰：“南郊祈雨親祭，以二十八日設行事，命下矣。曾前南郊祈雨親祭，上於二更初，動駕出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規矣。出宮時刻，今亦依此舉行，而祭官·執事，二十七日質明，先詣祭所，與中使及近侍，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傳曰：“允。”

● 壇所修理

一. 曹啓曰：“今二十八日，南郊祈雨親祭時，壇上修理修補事，別遣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依例眼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舉行事，分付，何如？”傳曰：“允。”

● 世子亞獻稟

一. 曹啓曰：“今此南郊祈雨親

“이번 남교 기우 친제 때 왕세자가 아헌 및 지영·지송하는 예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영하고 지송하는 예만 행하라.”
 하였다.

● 전하와 향관의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산재하고 치재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남교 친제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치재하되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며, 향관들과 근시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재숙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墻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은 먼저 향소에 간다.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행할 때에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祭時，王世子，亞獻及祇迎祇送之禮，何以爲之？敢稟。”傳曰：“只行祇迎祇送之禮，可也。”

●殿下及享官齋戒

一. 曹啓曰：“南郊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南郊親祭，只隔三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墻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享官先詣享所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

지영^{祗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28일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7일 새벽에 향소에 먼저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검^{車斗檢}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무자년¹⁷⁰⁸ 6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검^{車斗檢}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친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二十八日, 祈雨親祭敎是時, 諸享官, 二十七日質明, 先詣享所, 以黑團領祗迎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三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啓.

● 親祭停止

一. 政院啓曰: “今此親禱之

“이번에 친히 기도하는 일은 실로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고 백성을 우려하여 모든 방도를 다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단비가 크게 쏟아지니, 한때의 소나기에 비할 바 아닙니다. 메마르고 타들어 가던 곡식이 소생할 가뭄이 충분하니, 이것은 모두 성상께서 지성으로 근심하고 근면하여 위로 하늘의 마음에 닿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신민의 기뻐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은 끝내 하늘을 성실히 섬기는 방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만약 그대로 장마가 된다면 도리어 농사에 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의 뜻은 이와 같으니, 을유년¹⁷⁰⁵의 전례대로 남교에 친히 기도하는 일은 우선 정지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구구한 소회를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사가 이와 같으니 지금은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정전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라는 초기^{草記}에 대해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렇게 혹독하니 결코 돌아가기 어렵다. 비가 내린 뒤 다시 물으라.’

舉，實出於聖上憫旱憂民，靡不用極之至意，即今甘霖大霈，有非一時驟雨之比，枯槁焦涸，恰有蘇潤之望，此無非聖上至誠憂勤，上格天心而然，臣民歡忭，曷有其已？得雨而禱雨，終非事天以實之道，況今秋節已屆，若或仍以成霖，則反有害稼之慮。大臣之意亦如此，依乙酉年例，南郊親禱之舉，姑爲停止，恐合事宜，區區所懷，惶恐敢啓。”
傳曰：“啓辭如此，今姑停止。”

● 還御正殿

一. 曹啓曰：“頃日還御正殿·復常膳草記，傳曰：‘亢旱斯酷，決難還御，得雨後更稟可也’事，命下矣。立秋已過，猶不還御復膳，雖出於聖上悶旱之至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입추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 정전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지 않으시니, 비록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전례에 있어서 과중한 듯합니다. 지금 단비가 이미 쏟아졌으니 농사가 몹시 다행스럽습니다. 내일부터 정전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전례대로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29일부터 거행하라.”
하였다.

무자년¹⁷⁰⁸ 7월 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龍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자년¹⁷⁰⁸ 11월 29일

● 기곡제

예조의 단자에,

意, 其在事例, 恐涉過重, 及今
甘澤既霑, 民事萬幸, 自明日
還御正殿, 復常膳等事, 依例
知委舉行, 何如?” 傳曰: “自
二十九日舉行, 可也.”

七月初六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龍同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戊子十一月二十九日

● 祈穀祭

一. 曹單子: “來正月初九日,

“오는 1월 9일 상신일^{上辛日} 사직 기곡제는 전례대로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기축년¹⁷⁰⁹ 4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대봉^{崔大奉}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4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최대봉^{崔大奉}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上辛社稷祈穀祭，依例遣大臣
設行事，知委，何如？” 啓依所
啓施行爲良如教。

己丑四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大奉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四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崔大奉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기축년¹⁷⁰⁹ 4월 1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양태봉^{梁太奉}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4월 1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질이^{朴同叱伊}의 수
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질이^{朴同叱伊}의 수
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四月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梁太奉手本內: ‘今曉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四月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叱伊手本內: ‘今朝下雨,
水標看審, 則二尺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同叱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尺流下’ 是如爲
白臥乎事.” 啓.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5월 2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오동^{金五同}³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5월 2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오동^{朴五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3 김오동(金五同): 아래 등장하는 박오동(朴五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己丑五月二十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五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五月二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五同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기축년¹⁷⁰⁹ 5월 28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최두응^{崔斗應}의
첩정에,

‘이달 28일 강물이 크게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8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6월 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一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6월 1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높이로 물이

五月二十八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崔斗應牒呈內：‘今月二十八日，
江水大漲，本津常流水基良
中，以布帛尺，七尺八寸加漲
溢’是如爲白臥乎事。” 啓.

六月初三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一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寸流下’是如爲白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6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6월 1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臥乎事.” 啓.

己丑六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三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啓.

六月十八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六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啓.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깍^{車斗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0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7월 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만이^{金萬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7월 1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億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車斗劫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十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初九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萬伊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七月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億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啓.

기축년¹⁷⁰⁹ 7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7월 29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기축년¹⁷⁰⁹ 8월 8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七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七月二十九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啓.

己丑八月初八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夫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가을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어 비가 오기도 하고 개기도 하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므로 우선 천천히 기다렸는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 아침 내내 내렸습니다. 지금 가을이 이미 깊었는데 폭우가 이와 같으니 곡식이 손상되어 농사가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전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를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기축년¹⁷⁰⁹ 8월 10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최두응^{崔斗應}의 첩정에,
‘이달 9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8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爲白臥乎事.” 啓.

● 祈晴

一. 曹啓曰: “近日秋霖支離, 而或雨或晴, 有時驟雨, 故姑爲遲待矣. 夜來雨勢非常, 以至終朝, 即今秋節已深, 而暴雨如此, 禾穀損傷, 民事可慮. 祈晴之舉, 似不可已, 依前例, 不卜日, 來初十日爲始, 四門禋祭, 三日而止事, 知委舉行, 何如?” 傳曰: “允.”

八月初十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崔斗應牒呈內: ‘今月初九日, 潦水漲江, 本津常流水基尺量, 則以布帛尺, 七尺八寸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啓.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인년¹⁷¹⁰ 4월 27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해 봄과 여름 이래 가뭄 기운이 몹시 심하여 나
쁜 바람이 계속 불고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쬘었
습니다. 망종이 이미 다가왔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여 밀과 보리가 날마다 메마르고 논에 파종
할 시기를 놓쳤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
고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
니, 예전에 결정한 대로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덕
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
고 오는 5월 2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5월 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는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
하지 말고 오는 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庚寅四月二十七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以來，旱氣太甚，惡風連吹，烈日杲杲。芒種已迫，雨意漠然，兩麥日就枯損，水田播種愆期，前頭民事，誠爲渴悶。祈禱之舉，不容少緩，依前定奪，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不卜日，來五月初二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五月初三日

● 再次祈雨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來初六日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경인년¹⁷¹⁰ 5월 9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7일에 거행해야 하나 연달아 비가 뿌렸으므로 2일 물려서 올렸다.】

경인년¹⁷¹⁰ 5월 12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5월 1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庚寅五月初九日

● 三次祈雨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雪祀等處，遣宰臣，不卜日，來十一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初七日當爲舉行，而連有雨灑，差退二日呈之。】

五月十二日

● 四次祈雨

一. 曹單子：“四次祈雨祭，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不卜日，來十五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五月十六日

● 五次祈雨

一. 曹單子：“五次祈雨祭，宗廟，遣重臣，不卜日，來十九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5월 20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5월 25일

● 7차 기우제는 산천에 대신을 보내다.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가 내리려 하다가 내리지 않고 아직 단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지극히 걱정이다. 풍운뇌우·산천에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五月二十日

● 六次祈雨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二十四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五月二十五日

● 七次祈雨. 山川遣大臣

一. 曹單子：“七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重臣，不卜日，來二十八日設行之意，知委，何如？” 傳曰：“欲雨不雨，甘霈尙靳，言念民事，殊極悶慮。風雲雷雨·山川，遣大臣設行”爲良如教。

경인년¹⁷¹⁰ 5월 26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一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계자인을 찍었다.

경인년¹⁷¹⁰ 5월 27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7차 기우제는 지금 향을 받아야 하나 어저께 신시^{申時} 이후부터 어제까지 간혹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연달아 비가 내렸으며 지금도 개지 않았으니, 그대
로 설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대신들의 뜻도 이
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지금은 우선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윤일금^{尹一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五月二十六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一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五月二十七日

● 祈雨停止

一. 政院啓曰：“七次祈雨祭，
今當受香，而自再昨申後至昨
日，或雨或止，而連次得雨，即
今亦未開霽，似不必仍爲設行。
諸大臣之意亦如此。何以爲
之？敢稟。”傳曰：“今姑停止。”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尹一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5월 2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보흥^{金寶興}의
첩정에,

‘이달 28일 장맛비로 강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6척 5촌이 불어
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6월 17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庚寅五月二十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金寶興牒呈內: ‘今月二十八日,
潦水漲江, 本津常流水基良
中, 以布泉帛尺, 六尺五寸加
漲溢’是如爲白臥乎事.”

六月十七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夫億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三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경인년¹⁷¹⁰ 6월 2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7월 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喆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7월 15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喆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六月二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夫億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二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七月初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喆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七月十五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喆同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7월 30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윤7월 9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가을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어 비가 내리기도 하고 개기도 하며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폭우가 예사롭지 않아 곡식이 손상되었으니 농사가 걱정입니다. 기청제를 거행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전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를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庚寅七月初三十日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閏七月初九日

● 祈晴

一. 曹啓曰：“近日秋霖支離，
而或雨或晴，有時驟雨矣。夜
來暴雨非常，禾穀損傷，民事
可慮。祈晴之舉，似不可已，依
前例，不卜日，來十一日爲始，
四門祭，三日而止事，知委
舉行，何如？”傳曰：“允。”

경인년¹⁷¹⁰ 윤7월 11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보흥^{金寶興}의
첩정에,

‘이번 9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13척 6촌이 불어났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윤7월 13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깍^{車斗叱劾}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8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인년¹⁷¹⁰ 윤7월 14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깍^{車斗叱劾}의 수본에,

閏七月十一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金寶興牒呈內: ‘今初九日, 潦
水漲江, 常流水基良中尺量,
則以布泉帛尺十三尺六寸加
漲溢’是如爲白臥乎事.”

閏七月十三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叱劾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三尺八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閏七月十四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叱劾手本內: ‘今日下雨,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2차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영제를 방금 지냈는데 장맛비가 연일 내려 날이 갠 기약이 없으니, 곡식이 손상되는 것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전례대로 2차 사문영제를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에 시작하여 설행하고 3일 뒤 중지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5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올봄에 비가 계속 내려 지난달부터 가뭄 기운이 생겼습니다. 그믐 전에 비가 조금 내렸으나 마른 땅을 적시지 못하였고, 그 뒤로 계속해서 가물었습니다. 간혹 잠깐 먹구름이 끼다가도 햇빛이 짹짹 내리쬐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익어 가던 보리가 간혹 누렇게 말랐으며, 모내기도 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니 농사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5월의 기우제를 예전에는 10일 이전에 설행한 적이 있으니, 지금은 조금도 늦

水標看審, 則六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 祈晴再次

一. 曹啓曰: “祭纔行, 而淫雨連日, 開霽無期, 禾穀之損傷, 誠爲可慮. 依前例, 再次四門祭, 不卜日, 來十六日爲始設行, 三日而止事, 分付各該司, 何如?” 傳曰: “允.”

辛卯五月初五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今春雨水連下, 自前月始有旱⁴氣, 晦前小雨, 不能沃其焦乾, 其後一向乾旱, 間或片時陰暄, 杲日旋燭, 淒風連吹, 向熟牟麥, 既就枯黃, 水田移秧, 亦將愆期, 民事誠可悶慮. 五月祈雨, 在前, 有

4 旱: 저본에는 ‘寒’. 『승정원일기』 1711년 5월 5일 기사에 근거하여 수정

출 수 없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이 두 곳에 청룡·백룡 및 거위⁴를 사용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11일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4 청룡·백룡 및 거위: 화룡기우(畫龍祈雨)에 필요한 물품이다. 『문헌통고(文獻通考)』 권77 교사고(郊祀考) 10 우(雩)에 따르면, 용, 물고기, 거북 등의 그림이 있는 제단에 수조(水鳥)인 거위의 피를 바치고 수목(水木)인 버들가지로 물을 뿌렸다.

始自旬前者, 則即今不容少緩. 大臣之意如此,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 遣三品官, 不卜日, 來初八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辛卯五月初九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來十二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此兩處, 青白龍及鵝子用之.】

辛卯五月十一日

● 水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李夫億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의 수본에,
‘지금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 제문을 고쳐 짓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아침에 기우제 제관이 이미 향을 받았는데 지금 비
내리는 기세가 이와 같으니, 제문에 비가 내린다는
뜻을 보태 넣어야 할 듯합니다. 지제교로 하여금 말
을 만들어 보태 넣고 향실^{香室} 관원으로 하여금 속히
모시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1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부억^{李夫億}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夫億手本內：‘卽今下雨，水
標看審，則五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祈雨祭文改撰

一. 政院啓曰：“朝者祈雨祭
官，旣已受香，而卽今雨勢如
此，祭文中，似當添入得雨之
意。令知製教，措辭添入，使
香室官員，急速陪進，何如？”
傳曰：“允。”

辛卯五月十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夫億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1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보흥^{金寶興}의
첩정에,

‘이번에 비가 내려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

辛卯五月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六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辛卯五月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辛卯五月二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金寶興牒呈內: ‘今番下雨, 潦
水漲江,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五尺六寸加漲溢’是

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6촌이 불
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5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6월 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如爲白臥乎事.”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辛卯五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辛卯六月初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姜惡發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6월 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6월 1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6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臥乎事.”

辛卯六月初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姜惡發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辛卯六月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辛卯六月二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 ‘去夜下雨, 水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7월 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동이^{朴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7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점이^{趙占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묘년¹⁷¹¹ 7월 24일

예조의 단자에,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辛卯七月初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朴同伊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辛卯七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趙占伊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辛卯七月二十四日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보흥金寶興의
 첩정에,
 ‘이달 23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
 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16척 5촌이 불어났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4월 23일

● 기우제를 결정하다.

이번 4월 23일 주강晝講에 입시하였을 때, 대강 오명
 항吳命恒이 아뢰기를,
 “신은 가뭄이 들자 목공穆公이 한 질문의 글뜻으로
 인하여 감히 아웁니다. 옛날 성군聖君이 가뭄을 만나
 면 반드시 지성으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며 몸을
 굽히고 자신을 닦으며 하늘을 감동시키기를 기약하
 였으니, 참으로 수신하고 반성하는 근본입니다. 하
 늘이 응답하는 효험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릅니
 다. 지금 가뭄이 또한 심하고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
 니, 밀과 보리는 이미 흉년으로 결정되어 농사가 참
 으로 걱정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지금 잠자리가 불
 안하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번번
 이 기우제를 설행하였는데, 매번 절기가 늦은 뒤에
 거행하니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4월이
 다 지나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창 다급하

金寶興牒呈內：‘今月二十三日，
 雨水漲江，常流水基良中尺
 量，則以布帛尺，十六尺五寸
 加漲溢’是如爲白臥乎事。”

壬辰四月二十三日

● 祈雨祭定奪

一. 今四月二十三日，晝晝講
 入侍時，待講吳命恒所啓：“臣
 於歲旱穆公之間，因文義敢
 達。古昔聖君遇旱，必以至誠
 祈雨，側身罪己，期於感天，固
 爲修省之本，而冥應之效，捷
 於影響矣。即今旱乾亦甚，雨
 意邈然，兩麥已判凶歉，民事
 誠爲可慮，伏想丙枕不安於此
 矣。自前如此之時，輒設祈雨
 祭，於而每於節晚之後舉行，
 得效未易。即今初夏已盡，望
 雨政急，虔禱之節，不容少緩。
 祈雨祭及時設行事，分付該曹，
 何如？”上曰：“旱乾此甚，前

니, 정성껏 기도하는 절차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우제를 제때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앞으로 농사가 걱정이다. 기우제를 해당 조에 분부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탑전에서 하교하셨습니다.

1차 기우제를 이전에 결정한 대로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⁷¹² 4월 2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0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頭民事可慮，祈雨祭，分付該曹，舉行，可也。”

● 初次祈雨

一. 曹啓曰：“祈雨祭設行事，榻前下教矣。初次祈雨祭，依前定奪，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不卜日，來二十六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壬辰四月二十七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來三十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임진년¹⁷¹² 5월 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5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9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壬辰五月初二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初四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辰五月初五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初八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辰五月初九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宗廟, 遣重臣, 不卜日, 來十二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遣大臣設行爲良如教.

임진년¹⁷¹² 5월 13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12일

●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음악을 중지하다.

비망기에,

“아, 국가가 불행하여 하늘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니 혹심한 가뭄이 올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여름이 된 뒤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낮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별이 반짝인다. 비가 조금 내리다도 곧 개어 아직 큰비가 쏟아지지 않아 보리는 이미 흉년이고 짝은 메마르려 한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추수를 바라겠는가.

아, 나라가 믿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은 먹는 것이다.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고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임금 노릇을 하겠는가. 아, 하늘은 헛되이 응하는 법이 없으니 죄는 실로 나에게 있다. 밤낮으로 반성하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어찌 끝이 있겠는가. 희생을 대신하여

壬辰五月十三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來十六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辰五月十二日

● 避正殿·減膳·撤樂

一. 備忘記：“嗚呼，國家不幸，天災荐至，而旱暵之酷，未有甚於今年也。入夏以來，膏澤不降，晝晝以風淒，夜則星嘒。小雨旋霽，大需尙靳，麥既歉矣，苗將枯矣。失今不雨，奚望西成？嗚呼，國之所恃者民，而民之所天者食。民而無食，國而無民，吾誰與爲君？嗚呼，天不虛應，罪實在予。夙夜自省，慚懼何極？切欲代犧，親禱社壇，而脚疾難強，終未果焉。只自憂鬱，如添一病。予何敢安於廣廈之上玉食之美也？嗚呼，眇予小子，否德系

친히 사직단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다릿병 때문에 억지로 하기 어려워 결국 하지 못하였다. 그저 스스로 걱정하고 답답해하며 병 하나를 보탠 듯하다. 내가 어찌 감히 넓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히 여기겠는가.

아, 보잘것없는 내가 덕 없이 왕위에 오른 지 이제 38년이다. 다스림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다스림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백성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하였다. 자신의 사욕을 이기는 공부에 미진한 점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도량이 넓지 못하다. 기강을 진작시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너진 기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실질적인 노력에 힘쓰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짓된 풍습이 아직 많으니, 모두 나의 잘못이다. 지금 하늘이 내린 재해도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은 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내가 반성하고 자책하며 신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이다.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여 더욱 경외하는 정성을 돈독히 할 것이니, 감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이하게 할 수 있겠는가.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의 초고를 작성하고, 정부에서 널리 직언을 구해야 마땅하다. 각기 소회를 말하며 숨기지 말라. 강직한 말은 내가 가상히 여기니, 말이 중도를 지나치더라도 나는 죄로 여기지 않겠다.

아, 재해는 실로 나 때문이니, 나는 스스로 수신하기

位，三十有八年于茲。予之心切於致治，而治不見其效，予之心切於愛民，而民不被其澤。克己之切，有所未盡，虛受之量，有所不弘。非不言振紀綱，而頽靡之違彌甚，非不欲務實功，而虛偽之習尚多，皆予之失也。今天之降災，安知不由於此耶？此予所以反躬自責，求助於臣隣者也。自今日避正殿，益箴對越之誠。敢弛戒懼之心？承旨，代予草教。宜自政府，廣求直言，各陳所懷，毋有所隱。言之剴切，予所嘉尚，言雖過中，予不以罪。嗚呼，災實由予，予當自修之不暇，何可責人？而其在交相儆戒之道，亦豈無一二加勉者乎？惟公惟正，可以服人。天官，居六卿之首，而語其職，則任人也。果能賢才是用，不肖是斥，用捨公而是非明，則不惟大小之官，各得其任，朝著之和靖，亦有此可期矣。若夫方岳之臣，廉白自持，威惠並行，黜陟幽明一出公心，節鎮

에 겨를이 없어야 한다. 어찌 남을 책망하겠는가. 그러나 서로 경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한두 가지 더욱 권면할 것이 없겠는가. 공정해야 남을 복종시킬 수 있다.

이조吏曹는 육경六卿의 으뜸으로서 그 직분을 말하자면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다. 과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며 취사가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다면 높고 낮은 관원이 각기 직임을 맡아 조정의 평화롭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사로 말하자면 청렴결백하게 몸가짐을 지키고 위엄과 은혜를 함께 시행하여 취사선택이 한결같이 공정한 마음에서 나오고, 절도사와 병사가 사졸을 다독여 훈련을 철저히 하여 항상 적진을 대하는 것처럼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거의 조정에서 중임을 맡긴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 너희 서울과 지방의 신료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유념하여 공경히 받들라. 또 생각건대, 예로부터 가뭄을 초래하는 일이 본디 한 가지가 아니지만, 대부분 원통함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왔다. 3년 동안 가뭄이 든 것은 실로 효부孝婦 때문이었고, 5월에 서리가 내린 것은 연燕나라 신하 때문이었다. 원통한 기운이 맺혀 위로 하늘에 닿으면 온화한 기운을 손상시켜 재해를 초래하니, 이 또한 자연의 이치이다. 지금 가뭄을 걱정하는 때 모든 방도를 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과 지방의 관원에게 만약 지극한 원통함을 품고 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 아

之帥，撫爾士卒，詰爾戎兵，答常對壘，毋敢點忽，則庶不負朝家委寄之重矣。咨爾中外臣僚，體予至意，或克欽承。抑又思之，自古致旱，固非一端，而多出於抱冤。三年枯旱，實緣孝婦，五月罪霜，良由燕臣。蓋冤氣鬱結，上澈穹蒼，感傷和氣，致有災沴，亦自然之理也。當此憫旱之日，宜矣所不用其極。着令中外之官，若有抱至冤而未伸者，方加詳察以聞。至於斷獄斷訟，去請去私，勿以強約弱爲立落，其伸其屈一循曲直，則小民庶可無怨矣。外方官吏，因喜怒濫刑殺人之弊，予屢言之矣。今當恤囚，尤當申嚴，一布告，威使聞知。且近來士大夫風習不美，或行公未久，旋尋辭單，或除拜累月，終不應命，或受由出去，久不還來，或廉隅義太勝，違召紛紜，或朝遞其職，夕已歸鄉，往來憧憧，在官日鮮，癘曠之弊職由於此。若此不已，將何以備百官而成國家之貌樣

되게 하라. 옥사와 송사를 판결할 적에는 청탁과 사정을 제거하고, 강약으로 결정하지 말라. 펴고 굽히는 것을 한결같이 곡직에 따른다면 백성에게 원망이 없을 것이다. 지방의 관리들이 기쁨과 분노로 형벌을 남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폐단을 내가 누차 말하였다. 지금 죄수를 심리할 적에는 더욱 엄격해야 하니, 한 번 포고하여 알게 하라.

또 근래 사대부의 풍습이 아름답지 않아 공무를 행한 지 오래지 않아 곧 사직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임명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끝내 명에 응하지 않기도 한다. 말미를 받고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염치와 의리가 지나쳐 너도나도 소명을 어기기도 한다. 아침에 체직되면 저녁에 고향으로 돌아가 바빠 왕래하느라 관청에 있는 날이 드무니, 직무를 방기하는 폐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백관을 갖추고 나라의 모양을 이루겠는가.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사대부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감히 수고롭다고 하지 않고 감히 사사로움을 말하지 않아 모두 서울에 모여 분주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의 사대부는 이와 다르니, 이것이 내가 세도를 위하여 항상 마음속으로 개탄하던 것이다. 아, 가뭄을 한탄하는 일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는가마는 극심한 재해가 올해 더욱 심하니, 타는 듯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乎? 去昔壬辰兵亂之後, 滿目灰燼, 士大夫艱苦之狀, 爲如何? 而不敢告勞, 不敢言私, 咸聚輦鼓之, 奔走率職. 今之士大夫異於是, 此予爲世道心常慨然者也. 嗚呼, 雲漢之歎, 何世無之? 而蘊隆之災, 今年太甚, 如惓如焚, 無以爲心. 嗟爾群公, 毋安圖安便, 欽乃職事, 用答天譴. 減膳·撤樂·禁酒等事, 其令有司舉行.”

아, 너희 여러 관원은 편의를 도모하지 말고, 직무를
공경히 수행하여 하늘의 건책에 답하라. 음식 가짓
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고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은 담당 관원에게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복을 치지 않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승정원에 내리신 전교를 보니, 오늘부터 정전
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며 음악을 중지하고
술을 금지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되, 복을
치지 않는 일은 근래의 규례대로 그만두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勿擊鼓

一. 曹啓曰：“卽伏見下政院之
教，自今日避正殿·減膳·撤樂
·禁酒之命矣。撤樂等事，依
例舉行，而勿擊鼓一款，依近
例，安徐之意，敢啓。”傳曰：
“知道。”

壬辰五月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三寸流下’是如爲白
臥乎事。”

임진년¹⁷¹² 5월 17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용산강·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齡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이번 5월 20일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건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기우제를 정지하라고 탑전에서 결정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齡同}의 수본에,

壬辰五月十七日

● 七次

一. 曹單子: “七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重臣, 不卜日, 來二十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辰五月二十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李齡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 祈雨停止

今五月二十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祈雨祭停止事, 榻前定奪.

壬辰五月二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李齡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5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龍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6월 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龍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辰五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龍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辰六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龍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임진년¹⁷¹² 6월 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나득좌^{羅得佐}의
첩정에,

‘오늘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6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똥이^{朴腿伊}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6월 1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 나득좌^{羅得佐}의 첩정에,

‘이달 18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4척 5촌 높이로 물이

壬辰六月初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羅得佐牒呈內: ‘今日潦水漲
江, 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十五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壬辰六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腿伊手本內: ‘今朝下雨, 看
審則七尺流下’是如爲白臥乎
事.”

壬辰六月十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羅得佐牒呈內: ‘今月十八日,
潦水漲江, 本津常流水基良
中, 以布帛尺, 十四尺五寸流

흘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6월 25일

● 정전으로 돌아가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는 7월 7일은 바로 입추 절기이니, 정전으로 돌아
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진년¹⁷¹² 6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똥이^{朴毘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7월 1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下’是如爲白臥乎事.”

壬辰六月二十五日

● 還御

一. 曹啓曰：“來七月初七日，
乃是立秋節，還御正殿·復常
膳等事，依例舉行事，分付，何
如?” 傳曰：“允.”

壬辰六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毘伊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辰七月十四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今日下雨，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7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승두민^{承斗民}의 수본에,
‘오늘 새벽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진년¹⁷¹² 8월 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점^{趙點}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壬辰七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承斗民手本內：‘今曉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壬辰八月初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點手本內：‘去夜下雨，水標
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임진년¹⁷¹² 8월 6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가을철의 찬비는 농사에 가장 방해가 되는데 근래 비가 오기도 하고 개기도 하며 여러 날 그치지 않아 이삭이 팬 곡식이 쉽게 손상되니 농사가 지극히 걱 정입니다.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 하니 전례대로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를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점^{趙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9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¹³ 윤5월 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가팔리^{姜加八里}의 수 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壬辰八月初六日

● 祈晴

一. 曹啓曰：“秋節冷雨，最有妨於穡事，而近日或雨或晴，累日不止，發穗之穀，易致損傷，民事極涉可慮。祈晴之舉，似不可已，依前例，不卜日，來初八日爲始，四門祭，三日止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趙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九寸’是如爲白臥乎事。”

癸巳閏五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姜加八里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¹³ 윤5월 1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¹³ 윤5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¹³ 윤5월 28일

● 수표를 넘쳐흐른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겁^{車斗劫}의 수본에,

癸巳閏五月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姜惡發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癸巳閏五月二十五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 是如爲白
臥乎事.”

癸巳閏五月二十八日

● 水標過流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수표를 넘쳐흘렀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나득좌羅得佐의
첩정에,

‘이번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
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1척 3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사년¹⁷¹³ 6월 14일

●충청도 기우제

충청 감사의 장계에,

“지금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고 가뭄이 몹시 심하
여 모내기하지 않은 곳은 이미 가뭄이 없고, 그 밖
에 일찍 파종하고 모내기한 논과 기장, 조 및 뿌리갈
이한 밭은 날로 점차 메마르고 있으니, 보기에 참혹
합니다. 그러므로 각 경내의 영험한 산천에 정성껏
기우제를 설행하라는 뜻으로, 한편으로 관문을 보
내 분부하라는 연유로 급히 아뢰니다.”

하였다.

標看審，則水標過流’是如爲白
臥乎事.”

●漢江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羅得佐牒呈內：‘今番潦水漲
江，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
帛尺，十一尺三寸加漲溢’是如
爲白臥乎事.”

癸巳六月十四日

●忠清祈雨

一. 忠清監司狀：“即今雨意
漠然，旱乾太甚，未移秧之處，
已無可望，而其他早付種移秧
番庫及黍粟及根耕等田，日漸
焦枯，所見慘然是白乎等，以
各其境上山川靈驗處，虔誠祈
雨祭設行之意，一邊發關分付
緣由馳啓”事.

계사년¹⁷¹³ 6월 29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이번 달이 이미 다 지났는데 비가 끝내 내리지 않고
간간이 가랑비만 내려 먼지를 적시는 정도에 불과하
다. 김맨 뒤의 가뭄은 농가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니,
농사를 생각하면 몹시 걱정스럽다. 기우제를 택일하
지 말고 설행하라고 해당 조^曹에 분부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전에 결정한 대로 1차 기우
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택일하지 말
고 오는 7월 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계사년¹⁷¹³ 6월 3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똥이^{朴蔄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癸巳六月二十九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傳曰：‘今月已盡，
霈澤終闕，間有霖霖，不過沍
塵，鋤雨之旱，農家最忌，言念
民事，殊甚悶慮，祈雨祭，不卜
日設行事，分付該曹’事，傳教
矣。依前定奪，初次祈雨祭，三
角山·木覓山·漢江等處，不卜
日，來七月初二日設行事，知
委，何如？”傳曰：“允。”

癸巳六月三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朴蔄伊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계사년¹⁷¹³ 7월 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사년¹⁷¹³ 7월 7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사년¹⁷¹³ 7월 11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증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癸巳七月初三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來初六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巳七月初七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初十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巳七月十一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十四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계사년¹⁷¹³ 7월 1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사년¹⁷¹³ 7월 19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사년¹⁷¹³ 7월 22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는 날짜 수로 계산하면 이번 26일에 중신을 보내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설행해야 하나, 향을 받는 날이 방물^{方物}을 싸서 봉하는 날과 겹치니, 25일로 당겨 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癸巳七月十六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宗廟，遣重臣，不卜日，來十八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巳七月十九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二十二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巳七月二十二日

● 七次

一. 曹啓曰：“七次祈雨祭，以日數計之，則今二十六日，當爲遣重臣設行於龍山江·楮子島，而受香適與方物封裹相值，進行於二十五日之意，分付各該司，何如？” 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계사년¹⁷¹³ 7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정삼명^{鄭三命}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¹⁴ 4월 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성민^{金星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¹⁴ 4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癸巳七月二十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鄭三命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甲午四月初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星民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甲午四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¹⁴ 4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
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甲午四月二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갑오년¹⁷¹⁴ 5월 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차팔리^{姜次八里}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3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甲午五月初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姜次八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三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갑오년¹⁷¹⁴ 6월 4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태명^{朴太明}의 수본에,

甲午六月初四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太明手本內: ‘今日下雨, 水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¹⁴ 6월 2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이두경^{李斗慶}의
첩정에,
‘이달 29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9척 7촌이 불어났습
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갑오년¹⁷¹⁴ 7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甲午六月二十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李斗慶牒呈內：‘今月二十九日，
潦水漲江，本津常流水基良
中，以布帛尺，九尺七寸加漲
溢’是如爲白臥乎事.”

甲午七月二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介老味手本內：‘今日下雨，
水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갑오년¹⁷¹⁴ 7월 28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이두경^{李斗慶}의
첩정에,

‘오늘밤 장맛비로 강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
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3척 2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4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 봄과 여름 이래로 비가 간간이 적서 주어 완
전히 메마르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점차

甲午七月二十八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李斗慶牒呈內: ‘今夜潦雨漲
江,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
帛尺, 十三尺二寸加漲溢’是如
爲白臥乎事.”

乙未四月二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介老味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乙未五月初三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今年春夏以來,
雨澤間間霑濡, 不至全然旱
乾, 故苦待其漸致周洽矣. 卽

충분히 적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여 익어가던 보리는 날마다 누렇게 마르고 논에 파종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이전에 결정한 대로 삼각산·목덕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7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1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今淒風連吹, 雨意漠然, 向熟牟麥, 日就枯黃, 水耨播種, 亦且愆期, 前頭民事, 誠爲渴悶. 祈禱之舉, 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依前定奪,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不卜日, 來初六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乙未五月初七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來初十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乙未五月十一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 遣宰臣, 不卜日, 來十四日設行之意, 知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15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성민^{金成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17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4차 기우제는 지금 향을 받아야 하나,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가 그칠 조짐이 없으니 그대로 설행할 필요

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乙未五月十五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十八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成民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三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乙未五月十七日

● 祈雨停

一. 政院啓曰: “四次祈雨祭, 今當受香, 而自昨始雨, 達宵不止, 卽今亦無開霽之意, 似不必仍爲設行, 姑爲停止, 更

는 없을 듯합니다. 우선 정지하고 다시 앞으로 보아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1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성민^{金成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5월 2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구가^{朴九加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觀前頭稟處事，分付，何如？”

傳曰：“允。”

乙未五月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成民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乙未五月二十三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朴九加金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이두경李斗慶의
 첩정에,
 ‘이달 24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6척 5촌 높기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6월 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동李懿同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기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6월 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이두경李斗慶의 첩정에,
 ‘이번 9일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25척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李斗慶牒呈內：‘今月二十四
 日，潦水漲江，本津常流水基
 良中，以布帛尺，十六尺五寸
 流下’是如爲白臥乎事。”

乙未六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同手本內：‘今朝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乙未六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李斗慶牒呈內：‘今初九日，潦
 水漲江，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二十五尺加漲溢’是
 如爲白臥乎事。”

을미년¹⁷¹⁵ 6월 2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악발^{姜惡發}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을미년¹⁷¹⁵ 7월 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동이^{金同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5월 13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점이^{趙点伊}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乙未六月二十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姜惡發手本：‘去夜下雨，水標
看審，則一尺流下’是如爲白臥
乎事。”

乙未七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同伊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丙申五月十三日

一. 曹單子中：“節呈中部水標
直趙点伊手本內：‘去夜下雨，
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병신년¹⁷¹⁶ 5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의 수
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5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개노미^{李介老味}의 수
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세진^{金世珍}의
첩정에,
‘지난밤 비가 내려 장맛비로 강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
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丙申五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介老味手本: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丙申五月二十一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介老味手本內: ‘今朝下雨,
水標看審, 則七尺流下’是如爲
白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金世珍牒呈內: ‘去夜下雨, 潦
水漲江,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七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5월 24일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세진^{金世珍}의
첩정에,

‘지난밤 장맛비로 물이 크게 불어나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25척 8촌이 불어났
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6월 1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안의금^{安義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丙申五月二十四日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
金世珍牒呈內: ‘去夜潦水大
漲, 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
帛尺, 二十五尺八寸加漲溢’是
如爲白臥乎事.”

丙申六月十六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安義金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병신년¹⁷¹⁶ 6월 20일

● 1차 기우제

예조의 아뢰기를,

“올해 농사는 5월 이전에는 때맞추어 비가 자주 내려 풍년이 들 조짐이 조금 있었는데, 6월 이후로는 홍수가 난 뒤 가뭄이 갑자기 심해져 거의 수십 일 동안 동풍이 연이어 불고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하여 들판이 메말라 이미 가뭄이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구제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역시 고루 적시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입추 이후 기우제를 설행한 일은 이미 가까운 전례가 있고, 대신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6월 23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6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丙申六月二十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農事，五月以前，時雨頻注，稍有登稔之徵，六月以後，大水之餘，旱災旋酷，東風連吹，殆浹數旬，雨意漠然。田野焦枯，已無可望，言念民事，罔知攸濟。日昨雖得驟雨，亦不均霑云。立秋後設祈雨祭，已有近例，而大臣之意，亦如此，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不卜日，來二十二日設行之意，知委，何如？”傳曰：“允。”

丙申六月二十三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來二十六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병신년¹⁷¹⁶ 6월 27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월 1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6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안의금^{安義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7월 2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사직에는 대신을 보내고 북교에는

丙申六月二十七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七月初一日設行之意, 分付,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申六月二十八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安義金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丙申七月初二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初五日設行事, 分付, 何如?” 依啓. 社稷, 遣大臣, 北郊, 遣重臣設行爲良如教.

중신을 보내 설행하라.”

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7월 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9일에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을 보내 설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7월 10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7월 14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丙申七月初六日

● 五次

一. 曹單子：“五次祈雨祭，宗廟，遣重臣，不卜日，來初九日設行，何如？” 啓. 遣大臣設行爲良如教.

丙申七月初十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十三日設行事，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申七月十四日

● 七次

一. 曹單子：“七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重臣，不卜日，來十七日設行事，分付，何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7월 16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7차 기우제 두 곳의 향을 오늘 받아야 하나,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때는 계품하여 정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정지하라고 전교하였다.

병신년¹⁷¹⁶ 7월 2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구가금^{金九加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¹⁷ 5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丙申七月十六日

● 祈雨停止

一. 政院啓曰：“七次祈雨祭二處受香，當在今日，而自曉至朝雨勢方注，在前如此之時，有 啓稟停止之事，今亦何以爲之，敢稟。” 傳曰：“停止.”

丙申七月二十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九加金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丁酉五月二十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金儉同手本內：‘今日下雨，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검동金檢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¹⁷ 5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주생趙周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세진金世珍의
 첩정에,
 ‘지난밤 비가 내려 장맛비로 강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
 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1척 1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丁酉五月二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趙周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金世珍牒呈內：‘去夜下雨，潦
 水漲江，本津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十一尺一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정유년¹⁷¹⁷ 6월 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유만세^{俞萬世}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¹⁷ 6월 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태준^{李太俊}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세진^{金世珍}의
첩정에,
‘장맛비로 강이 불어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25척 8촌이 불어났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丁酉六月初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俞萬世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丁酉六月初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太俊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金世珍牒呈內：‘潦水漲江，本
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
二十五尺八寸加漲’是如爲白
臥乎事。”

정유년¹⁷¹⁷ 7월 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강재주姜載周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유년¹⁷¹⁷ 7월 2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지하징池夏澄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4월 30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 기운이 몹시
 심합니다. 절기가 망종에 가까운데 비가 내릴 조짐
 이 막연하여 논에 파종할 가망이 없으니, 농사가 애
 타고 걱정스럽기가 날이 갈수록 심합니다. 기도하
 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삼각
 산·목맥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

丁酉七月初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姜載周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丁酉七月二十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池夏澄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戊戌四月三十日

● 初次祈雨

一. 曹達曰：“近日以來，淒風
 連吹，旱氣太甚。節近芒種，
 雨意漠然，水田無望播種，民
 事渴憫，日甚一日。祈禱之舉，
 不容少緩，初次祈雨祭，三角
 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
 官，不卜日，來初三日設行事，

하지 말고 오는 3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령_{下令}하였다.

무술년₁₇₁₈ 5월 4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
하지 말고 오는 7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_{達下}하였다.

무술년₁₇₁₈ 5월 8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처소에 재
신_{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_{達下}하였다.

무술년₁₇₁₈ 5월 12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分付, 何如?” 令曰: “依.”

戊戌五月初四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
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
日, 來初七日設行事, 分付, 何
如?” 達依所達施行爲良如教.

戊戌五月初八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
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
臣, 不卜日, 來十一日設行事,
分付, 何如?” 達依所達施行
爲良如教.

戊戌五月十二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

“4차 기우제를 복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5월 15일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오는 19일에 설행해야 하나, 그날 시호의 선포를 고하는 제사와 겹치니, 기우제는 18일로 당겨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령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5월 19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2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하였다.

郊遣宰臣，社稷遣重臣，不卜日，來十五日設行事，何如？”
達依所達施行爲良如教。

戊戌五月十五日

● 五次

一. 曹達曰：“五次祈雨祭，宗廟，遣重臣，來十九日，當爲設行，而其日與宣謚告祭相值，祈雨祭，以十八日進行事，知委，何如？”令曰：“依。”

戊戌五月十九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二十二日設行事，知委，何如？”達依所達施行爲良如教。

무술년¹⁷¹⁸ 5월 23일

● 7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오는 26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5월 25일

● 세자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뭄의 재해가 몹시 혹심하니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고 영^令을 내리셨습니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일은 방금 전교가 있었고, 음악을 중지하는 일은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이미 아뢰었습니다. 술을 금지하는 것도 역시 하령대로 일체 거행하라고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령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영지^{令旨}에서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본궁^{本宮}에 공상^{供上}하는 것이다.”

하였다.

戊戌五月二十三日

● 七次

一. 曹單子：“七次祈雨祭，龍山漢·楮子島，遣重臣，來二十六日設行事，知委，何如？” 達依所達施行爲良如教。

戊戌五月二十五日

● 世子宮減膳撤樂

一. 曹達曰：“以旱災孔酷，減膳·禁酒·撤樂等事，令該曹舉行事，令下矣。減膳一款，纔有傳教，而撤樂則依例舉行事，已爲陳啓矣。禁酒，亦依下令一體舉行之意，分付各該司，何如？” 令曰：“依達，令旨中減膳，卽本宮供上矣。”

● 대전이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다. 동궁이 방금 영지를 내려 간언을 구하였으니, 오늘 부터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일을 해당 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가뭄이 한 달을 넘어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누차 기도하였으나 아직 비가 내릴 조짐이 없습니다.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애태우고 근심하는 마음이 한창 간절한데, 지금 이 전교는 실로 가뭄을 근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지성에서 나왔습니다. 보고 듣는 자라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전부터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을 전례대로 거행하였습니다. 복을 치지 않는 일은 결정한 대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5월 27일

● 8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오는 1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 大殿避正殿減膳

一. 曹啓曰：“傳曰：‘亢旱斯酷，民事渴悶，東宮才下令旨，求言矣。自今日避正殿減膳事，令該曹舉行’事，命下矣。亢旱踰月，民事渴悶，累次祈禱，雨意尙靳，上下焦憂，方切于中矣。今此傳教，實出閔旱恤民之至誠，凡在瞻聆，孰不感動，自前避正殿·減膳之時，撤樂等事，依例舉行，勿擊鼓一款，依定奪安徐，今亦依此舉行，何如？”傳曰：“允。”

戊戌五月二十七日

● 八次

一. 曹單子：“八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雪祀等處，遣宰臣，來初一日設行事，知委，何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5월 28일

● 세자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도록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예조}의 초기로 인하여,

‘영지^{令旨}에서 음식 가짓수를 줄이라는 것은 본궁^{本宮}에 공상^{供上}하는 것이다.’

라고 영을 내리셨습니다. 예전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 본궁의 공상은 근거 삼을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하령하기를,

“이전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 으레 멍쌀의 뒷수를 줄였으니 이대로 하라.”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5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점동^{金占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如?” 達依所達施行爲良如教.

戊戌五月二十八日

● 世子宮減膳定奪

一. 曹達曰: “因本曹草記: ‘令旨中, 減膳卽本宮供上矣’事, 令下矣. 自前減膳時本宮供上, 則無可據之例, 今則何以爲之? 敢稟.” 令曰: “自前減膳時例, 減粳米升數, 依此爲之.”

戊戌五月二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金占同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6월 1일

● 세자궁의 멍쌀을 줄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음식 가짓수를 줄이도록 아뢰는 초기에 대해

‘이전부터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 으레 멍쌀의 뒷수를 줄였으니 이대로 하라.’

라고 영을 내리셨습니다. 사옹원의 전례를 살펴보니, 대전^{大殿}에 날마다 공상하는 멍쌀 6되 중에서 음식 가짓수를 줄일 때는 반으로 나누어 3되를 봉진^{封進}하였습니다. 지금 봉궁의 멍쌀을 만약 이 전례대로 한다면 원래의 수량 4되 5홉을 반으로 나누면 2되 2홉이 되니, 날마다 공상하는 수량이 3되가 되지 않습니다. 일의 체모에 있어서 지극히 온당치 않으니, 원래의 수량에서 1되 5홉을 줄이고, 날마다 3되를 봉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하령하였다.

● 9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그저께 단비가 종일 내렸으니 참으로 지극히 다행스러웠으나 여전히 통쾌하게 적시지는 못하고 곧 날

戊戌六月初一日

●世子宮粳米減

一. 曹達曰:“本曹減膳稟達草記, 以自前減膳時例, 減粳米升數, 依此爲之事, 令下矣. 司饗院前例相考, 則大殿日次供上粳米六升內, 減膳時, 則折半以三升封進, 今此本宮粳米, 若依此例, 則元數四升五合內, 折半當爲二升二合零, 一日供上未滿三升, 其在事體, 極爲未安, 就元數中一升五合減除, 每日三升封進, 似爲得宜. 惶恐敢達.” 令曰:“知道.”

●九次

一. 曹單子:“再昨甘雨終日, 誠極多幸, 而猶未快洽, 旋又開霽, 祈禱之舉, 不可中止, 九

이 개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중지할 수 없으니, 9차 기우제를 북교에 중신을 보내 오는 5일에 설행하며,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는 무신武臣 가선대부를 보내고, 민간의 병류屏柳도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6월 6일

● 수표를 넘쳐흐른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안기금^{安起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수표 위로 넘쳐흐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동자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 9차는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와 민간의 병류屏柳를 5일부터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달하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지금 비가 크게 쏟아지고 그칠 기색이 없으니, 그대로 설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지금 우선 정지하고 다시 앞으로 보아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

次祈雨祭, 北郊, 遣重臣, 來初五日設行, 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 遣武臣嘉善, 閭閻屏柳, 亦於同日爲始, 三日止事, 分付舉行, 何如?” 達依所達施行爲良如教.

戊戌六月初六日

● 水標過流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安起金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水標上過流’是如爲白臥乎事.”

● 童子祈雨停

一. 曹達曰: “祈雨祭九次, 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 及閭閻屏柳, 自初五日爲始, 三日而止事, 達下舉行矣. 即今雨勢大注, 無開霽之色, 似不必仍爲設行. 姑令停止, 更觀前頭稟處, 恐爲得宜, 敢稟.” 令

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령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6월 7일

● 기우제 헌관을 써서 들이다.

전교하기를,

“9차 기우제의 헌관 이하 및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

祈雨祭의 무신 종2품 관원을 모두 써서 아뢰라.”

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안기금^{安起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6월 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세진^{金世珍}의 첩정에,

‘지난밤 장맛비로 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10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曰：“依爲之。”

戊戌六月初七日

● 祈雨獻官書啓

一. 傳曰：“九次祈雨祭獻官以下，及蜥蜴童子祈雨武臣從二品官，並書啓。”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安起金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五尺流下’是如爲白臥乎事。”

戊戌六月初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漢江津別將金世珍牒呈內：‘去夜潦水漲溢，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十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6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노미이^{李老味伊}의 수
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7월 5일

● 정전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7월 12일은 바로 입추 절기이니 정전으로 돌
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전례대로 거
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세자궁의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7월 12일은 바로 입추 절기이니 대전께서 정전
으로 돌아가고 평상시의 음식을 회복하는 일을 전
례대로 거행하라고 방금 이미 계품하여 윤허를 받

戊戌六月二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老味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
如爲白臥乎事.”

戊戌七月初五日

● 還御復常膳

一. 曹啓曰: “今七月十二日,
乃是立秋節, 還御正殿·復常
膳事, 依例舉行事, 分付, 何
如?” 傳曰: “允.”

● 世子宮復常膳

一. 曹達曰: “今七月十二日,
乃是立秋節, 大殿還御正殿·
復常膳事, 依例舉行事, 纔已
啓稟, 允下矣. 本宮復常膳等

왔습니다. 본궁^{本宮}의 평상시 음식을 회복하는 등의
일도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하령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7월

● 수표를 넘쳐흐른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오동^{金五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수표 위로 넘쳐흐
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7월 1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후강^{朴厚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수표를 물어 아뢰다.

하령하기를,
“지난밤의 비는 뿌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여 수표

事, 亦爲分付舉行, 何如?” 令
曰: “依.”

戊戌七月

● 水標過流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五同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水標上過流’是如
爲白臥乎事.”

戊戌七月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朴厚江手本內: ‘去夜下雨, 水
標看審, 則五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水標問達

一. 令曰: “去夜之雨, 或灑或
止, 水標決不至五寸, 而禮曹

가 결코 5촌에 이르지 않는 것을, 예조의 단자에 ‘5척 높이로 물이 흘렀다.’라고 써서 들었다. 해당 조에 물어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하령하기를……이라고 달하하였습니다. 예조 낭관을 불러 물으니,
‘하령으로 인하여 다시 수표직에게 물었더니,
『어제의 비는 본래의 강물이 제법 많았고, 오늘 새벽 또 몇 차례 비가 내려 여러 지류가 모였으므로 수표의 측량이 과연 5촌에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하령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박후강^{朴厚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무술년¹⁷¹⁸ 8월 22일

예조의 단자에,

單子中, 以五尺流下書入, 問于該曹以達.”

一. 政院達曰: “令曰云云事, 達下矣. 招問禮曹郎官, 則以爲: ‘因下令, 更問于水標直, 則: 『昨日之雨, 本水頗多, 今曉又添數次之雨, 衆水聚會. 故水標尺量, 果至五寸』云矣.’ 敢達.” 令曰: “知道.”

一. 曹單子: “節呈中部中標直朴厚江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五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戊戌八月二十二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안의금^{安義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5월 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태종^{金太種}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5월 3일

●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김로^{金璐}⁵의 첩
 정에,
 ‘연일 빗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2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5 김로(金璐) : 1719년 7월 1일 기사에 등장하는 임로(任璐)일 가능성이 있다.

安義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亥五月初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太種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亥五月初三日

● 漢江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金璐牒呈內：‘連日雨水漲溢，
 常流水基尺量，則以布帛尺，
 五尺二寸流下’是如爲白臥乎
 事.”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5월 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種}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5월 1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임금^{金任金}의 수본에,
‘오늘 아침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5월 28일

● 수표를 거의 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노미이^{李老味伊}의 수
본에,

己亥五月初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太種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亥五月十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金任金手本內: ‘今朝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亥五月二十八日

● 水標幾越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老味伊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十二尺幾越’是如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2척이 거의 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6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種}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6월 2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種}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爲白臥乎事.”

己亥六月二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太種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己亥六月二十九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太種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기해년¹⁷¹⁹ 7월 1일

● 한강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임로^{任璐}의 첩
정에,
‘장맛비가 연일 개지 않아 지금 강물이 크게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7척 5촌 높
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7월 2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임금^{金任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임로^{任璐}의 첩
정에,
‘오늘 장맛비가 쏟아져 강물이 크게 불어 평상시 수
위 기준에서 측량하니 포백척^{布帛尺}으로 35척 높이로

己亥七月初一日

● 漢江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任璐牒呈內：‘霖雨連下不霽，
卽今江水大漲，常流水基良
中，尺量則以布帛尺，七尺五
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己亥七月初二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任金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
任璐牒呈內：‘今日霖雨暴注，
江水漂流，常流水基尺量，則
以布帛尺尺，三十五尺流下’是
如爲白臥乎事。”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8월 4일

● 기청제

예조가 아뢰기를,
“요즈음 계속 흐린 날씨가 개지 않고 나쁜 바람이 계속 불어 비록 크게 쏟아지지는 않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 날도 없습니다. 곡식이 손상되어 농사가 걱정이니, 기청제를 지내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대신의 뜻도 그러하니, 오는 6일을 시작으로 사문영제를 3일 뒤 중지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하령하였다.

기해년¹⁷¹⁹ 11월 30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납일^{臘日} 전에 세 번 눈이 오면 내년의 풍년을 짐칠 수 있는데, 지금 겨울이 이미 늦었고 납일이 머지않았는데 싸락눈만 잠깐 뿌리고 큰 눈이 아직 내리지 않아 가을에 심은 보리가 얼어 상하였으니, 내년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己亥八月初四日

● 祈晴祭

一. 曹達曰：“近日積陰不開，惡風連吹，雖不大注，亦無不雨之日，禾穀傷損，民事可慮。祈晴之舉，有不容少緩，大臣之意亦然，來初六日爲始，四門禱祭，三日而止事，知委，何如？”令曰：“依。”

己亥十一月三十日

● 祈雪祭

一. 曹達曰：“臘前三白，可占來歲之豐熟，今者冬候已晏，臘日不遠，微霰乍灑，大雪尙靳，秋耕牟麥，未免凍傷，嗣歲之憂，有不可言。自前如此之時，多有祈雪祭設行之規，依

때에는 기설제를 설행한 규례가 많았으니, 전례대로 종묘·사직·북교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3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하령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5월 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검^{車斗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6월 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근래 여러 달 비가 내리지 않았고, 파종할 때가 이미 지났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없으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도록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 이미 파종한 싹과 옮겨 심지 않은 모가 메마르고 말았으니, 농사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6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前例, 宗廟·社稷·北郊, 遣重臣, 不卜日, 來初三日設行之意, 分付, 何如?” 令曰: “依.”

庚子五月初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車斗劫手本內: ‘今日下雨, 水標看審, 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庚子六月初三日

● 初次祈雨

一. 曹達曰: “近來彌月不雨, 而播種之時已過, 且不無雨態, 故有所等待矣. 節屆季夏, 尙靳一雨, 已播之苗, 未移之秧, 未免枯損, 農事誠爲可慮. 祈禱之舉, 不容少緩,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不卜日, 來初六日設行事, 知委, 何如?” 令

하니, 그리하라고 하령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6월 4일

● 성상의 체후가 더욱 위중하여 대신에게 기양제 설행에 대해 수의하다.

하령하기를,

“성상의 체후가 이렇게 위중하니 근심스럽고 애가 타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기도하고 죄수를 풀어 주는 일이 있었으니, 지금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애타는 마음은 이를 벗어나지 않는데,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우의정 이견명^{李健命}이 아뢰기를, “성상의 체후가 계속 위중하여 나아질 형세가 보이지 않으니, 서울과 지방 신민의 근심스럽고 애타는 마음을 어찌 다 아뢰겠습니까. 모든 방도를 다 하는 도리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지금 대궐에서 아뢰고자 하였습니 다. 삼가 승정원에 내리신 영지를 보니, 기도하여 액운을 푸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종묘와 사직에 대신을 보내고 삼각산·백악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비록 밤이 깊더라도 즉시 향을 받아 제사를 지내게 하고, 죄수를 풀어 주는 일은 의금부와 형조의 당상

曰: “依.”

庚子六月初四日

● 上候添重, 議大臣祈禳設祭

一. 令曰: “聖候添重至此, 憂遑煎迫, 罔知攸措. 在前如此之時, 已有祈禱疏釋之舉, 宜乎今日不容少緩. 小子焦思, 不外乎此, 大臣之意, 何如?”

一. 領議政^{政金昌集}·右議政^{李健命}達曰: “聖候一向添重, 尙未見差減之勢, 中外臣民憂遑煎迫, 曷勝盡達? 其在靡不用極之道, 宜有祈禱之舉, 故臣等今在闕中, 將欲稟達矣. 伏見下政院令旨, 以祈禱·疏釋不容少緩爲教. 祈禱則宗廟·社稷, 遣大臣, 三角·白岳·木覓·漢江等處, 遣重臣, 雖至夜深, 卽爲受香行祭, 疏釋則禁府·刑曹堂上及三司, 並卽牌招,

및 삼사^{三司}를 모두 즉시 패초^{牌招}하여 죄수를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령하였다. 【같은 날 4경 2 점에 향을 받았다.】

경자년¹⁷²⁰ 6월 5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문차금^{文次金}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기우제는 지금 향을 받아야 하나 밤부터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쏟아질 가망이 있으니, 우선 조금 물렀다가 형세를 보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하령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문차금^{文次金}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6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以爲疏釋之地，何如？”令曰：

“依達。”【同日四更二點受香。】

庚子六月初五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文次金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一. 政院達曰：“因禮曹草記，祈雨祭，今當受香，而夜自甘澍既始，庶有沛然之望，姑爲差退觀勢舉行，何如？”令曰：“依。”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文次金手本內：‘去夜下雨，水標看審，則一尺六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7월 15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7월 15일 비국 당상이 인건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기우제는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답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7월 19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21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7월 20일

● 강원도 기우제

예조의 계목에,

庚子七月十五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七月十五日，備局堂上引見入侍時，祈雨祭，不卜日設行事，榻前定奪矣。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庚子七月十九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二十一日設行事，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子七月二十日

● 江原祈雨

一. 曹啓曰：“粘連啓下是白有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강원 감사江原監司 유송俞崇의 장계를 보니,

‘도내강원도에 가뭄이 몹시 심하여 며칠 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장차 황무지가 되는 지경을 면치 못할 것이니, 농사가 너무도 급박합니다. 지금 국휼國恤로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였으니, 제멋대로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예전에 국휼 때 기우제를 설행한 전례가 이미 있으므로 서울에서는 지금 연달아 설행하였고, 경상도, 경기도에서는 관찰사가 제사를 지내 기도하겠다는 뜻을 연속하여 급히 아뢰었습니다. 일체 기우제를 설행하라고 회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59년¹⁷²⁰ 7월 18일 동부승지 신윤석래尹錫來가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 전라도 기우제

예조의 계목에,

“계하받은 문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전라 감사全羅監司 신사철申思喆의 장계를 보니,

‘절기가 초가을이 되었는데 가뭄 귀신이 이렇게 혹독하니 앞으로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도내의 각 고을에서 기우제를 설행하겠다는 뜻을 연속하여 보고하였는데, 크고 작은 제사를 중지한 때 감히 제멋대로 기우제를 지낼 수 없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성상의 뜻을 여쭙어 분부하게 하소서.’

亦，觀此江原監司俞崇狀啓，則以爲：‘道內旱乾太甚，數日之內，若不得雨，則將未免赤地之境，民事萬分切急，而當此國恤大中小祀停止，則擅行祈禱，有所不可’亦爲白有臥乎所，曾前國恤時，祈雨祭設行，已有前例乙仍于，京中段置，今方連次設行，而慶尙·京圻兩道，道臣亦以設祭祈禱之意，連續馳啓爲白有置，一體設行祈雨之意，回移，何如？”康熙五十九年七月十八日，同副承旨臣尹錫來次知，啓依允。

● 全羅祈雨

一. 曹啓曰：“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全羅監司申思喆狀啓，則以爲‘節屆初秋，旱魃斯酷，前頭民事，誠爲渴悶，道內各邑，以祈雨祭設行之意，連續報來是白乎所，大小祀停廢之日，不敢擅行祈雨，令該曹稟旨，分付’亦爲白有臥乎所，纔因江原監司啓聞，依前例，國

하였습니다.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가 아뢰는 일로 인하여 전례대로 국휼^{國恤} 때 기우제를 속히 설행하도록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아 분부하였습니다. 일체 기도하라고 회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59년¹⁷²⁰ 7월 20일 우승지 신 한 중희^{韓重熙}가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경자년¹⁷²⁰ 7월 22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7월 25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7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恤時，祈雨祭斯速設行事，覆啓蒙允分付爲白有置，一體祈禱之意，回移，何如？”康熙五十九年 七月二十日 右承旨 臣韓重熙次知，啓依允。

庚子七月二十二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雲雷雨·山川·雪祀等處，遣宰臣，不卜日，來二十四日設行事，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子七月二十五日

● 四次

一. 曹單子：“四次祈雨祭，北郊遣宰臣，社稷遣重臣，不卜日，來二十七日設行事，分付，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경자년¹⁷²⁰ 7월 28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8월 2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경자년¹⁷²⁰ 8월 4일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의 단자에,

“기우제를 연이어 설행하였습니다. 그저께 다행히 비가 조금 내렸고, 오늘 내리는 비도 제법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기도하는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庚子七月二十八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宗廟, 遣重臣, 不卜日, 來初一日設行事, 分付,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子八月初二日

● 六次

一. 曹單子: “六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 遣近侍, 不卜日, 來初四日設行事, 分付,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庚子八月初四日

● 祈雨停

一. 曹單子: “祈雨祭, 連爲設行矣. 再昨幸得小雨, 今日之雨, 亦頗潤枯, 而秋節已深, 祈雨之舉, 停止,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신축년¹⁷²¹ 4월 23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 봄과 여름 이래로 간혹 비가 내려 비록 완전히 가물지는 않았으므로 우선 기다렸습니다. 근래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아 끝내 한 번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밀과 보리가 메마르고 파종할 기일을 놓쳤으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이전에 결정한 대로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멩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5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辛丑四月二十三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春夏以來，間或得雨，而不至全然旱乾，故姑爲等待矣。近日欲雨不雨，終靳一需，兩麥枯損，播種愆期，前頭民事，誠爲渴悶。祈禱之舉，不容少緩，依前定奪，初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三品官，不卜日，來二十五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신축년¹⁷²¹ 4월 26일

● 2차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8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辛丑四月二十六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日，來二十八日設行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신축년¹⁷²¹ 4월 29일

● 3차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2일

● 4차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5일

● 5차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辛丑四月二十九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初一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初二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初四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初五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宗廟, 遣重臣, 不卜日, 來初七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신축년¹⁷²¹ 5월 8일

● 6차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덕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11일

● 7차

예조의 단자에,

“7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차두검^{車斗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7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辛丑五月初八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初十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十一日

● 七次

一. 曹單子：“七次祈雨祭，龍山江·楮子島，遣重臣，不卜日，來十三日設行之意，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車斗劫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七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신축년¹⁷²¹ 5월 14일

● 8차

예조의 단자에,

“8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17일

● 9차

예조의 단자에,

“9차 기우제를 북교에 중신을 보내 오는 19일에 설행하며, 모화관^{慕華館}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는 무신^{武臣} 가선대부를 보내고, 민간의 병류^{屏柳}도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22일

● 10차

예조의 단자에,

“10차 기우제를 사직에 대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4일에 설행하며, 경회루^{慶會樓}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는 무신 가선대부를 보내 역시 같은 날 시

辛丑五月十四日

● 八次

一. 曹單子: “八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重臣, 不卜日, 來十六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十七日

● 九次

一. 曹單子: “九次祈雨祭, 北郊, 遣重臣, 來十九日設行, 而慕華館池邊蜥蜴童子祈雨, 遣武臣嘉善, 閭閻屏柳, 亦於同日爲始, 三日而止事, 分付舉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二十二日

● 十次

一. 曹單子: “十次祈雨祭, 社稷, 遣大臣, 不卜日, 來二十四日設行, 而慶會樓池邊蜥蜴童子祈雨, 遣武臣嘉善, 亦於同

작하여 3일 뒤 중지하라고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27일

● 11차

예조의 단자에,

“11차 기우제를 종묘에 대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에 설행하며, 춘당대 연못가의 석척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는 무신武臣 가선대부를 보내 같은 날 시작하여 3일 뒤 중지하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옮기는 등의 일도 그날부터 거행하며, 토룡제土龍祭는 전례대로 택일하여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신축년¹⁷²¹ 5월 28일

● 12차, 오방토룡제

관상감의 청정에,

“오방 토룡제五方土龍祭 길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 청룡은 갑일甲日이니 오는 6월 4일 조성하여 5일과 6일 제사를 지내고, 남방 적룡은 병일丙日이니 같은 달 6일 조성하여 7일과 8일 제사를 지내고, 중앙 황룡은 무일戊日이니 같은 달 8일 조성하여 9일과 10일

日爲始，三日而止事，分付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二十七日

● 十一次

一. 曹單子：“十一次祈雨祭，宗廟，遣大臣，不卜日，來二十九日設行，而春塘臺池邊蜥蜴童子祈雨，遣武臣嘉善，同日爲始，三日而止爲白乎矣，閉南門開北門·遷市等事，亦自其日舉行，而土龍祭段，依例擇日舉行之意，分付，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辛丑五月二十八日

● 十二次. 五方土龍祭

一. 觀象監牒呈內：“五方土龍祭吉日，東方青龍，甲日是在，來六月初四日造成，初五日初六日行祭，南方赤龍，丙日是在，同月初六日造成，初七日初八日行祭，中央黃龍，戊

제사를 지내고, 서방 백룡은 경일(庚日)이니 같은 달 10일 조성하여 11일과 12일 제사를 지내고, 북방 흑룡은 임일(壬日)이니 같은 달 12일 조성하여 13일과 14일에 하루를 더하여 15일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였다. 예조의 계목에,

“첨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토룡제 길일은 첨정대로 시행하되, 제관은 결정한 대로 3품 관원을 차출하여 배정하고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강희 60년 5월 28일 우승지 신 황선(黃璿)이 담당하여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日是在，同月初八日造成，初九日初十日行祭，西方白龍，庚日是在，同月初十日造成，十一日十二日行祭，北方黑龍，壬日是在，同月十二日造成，十三日十四日加一日十五日行祭”事，曹啓曰：“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土龍祭吉日，依牒呈施行爲白乎矣，祭官段，依定奪，以三品官，差定設行之意，分付，何如？”康熙六十年，五月二十八日，右承旨臣黃璿次知，啓依允。

신축년¹⁷²¹ 5월 29일

● 동자는 궐내에서 유숙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신년¹⁷⁰⁴ 승정원의 계사에,

‘춘당대 연못가의 석적동자 기우제(蜥蜴童子祈雨祭) 때 헌관과 감찰은 청양문(靑陽門) 밖에서 유숙해야 하나 동자 100명을 궐 밖으로 내보내면 치재(致齋)하는 본뜻이 전혀 없으니,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헌관이 있는 곳에서 함께 묵게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를 내렸습니다. 이번 기우제 때 동자군

辛丑五月二十九日

● 童子關內宿

一. 曹啓曰：“取考膳錄，則甲申年政院啓辭，春塘臺池邊蜥蜴童子祈雨時，獻官·監察，當留宿於靑陽門外，而童子一百名，出送關外，殊無致齋本意，限祈雨間，並宿於獻官處事，允下矣。今此祈雨時，童子軍，亦依此舉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역시 이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5일

● 토룡제 1차,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15일

● 선농단과 전사자가 있는 곳에 제사를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방 토룡 기우제는 오늘 다 설행할 것인데, 비가 내
릴 조짐이 한결같이 막연하고 간간이 뿌리기는 하였
으나 끝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경기의 가
뭇물이 가장 심하여 며칠 사이에 만약 비가 내리지 않
으면 장차 황무지가 되는 참혹함을 면하지 못할 것
이니 앞으로의 농사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본디 모든 방도를 다 해야 하니, 예전에도 이와
같은 때에는 선농단, 전사자가 있는 곳, 전염병으로

辛丑六月初五日

● 土龍初次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富貴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辛丑六月十五日

● 先農戰亡設祭

一. 曹啓日：“五方土龍祈雨
祭，今日當爲舉行，而雨意一
向漠然，間有沾灑，終不霑然，
其中所旬枯旱最甚，數日之內，
若不得雨，則將不免赤地之
慘，前頭民事，極爲可慮。祈禱
之舉，固當靡不用極，在前如
此之時，亦有先農壇·戰亡處·
癘疫飢死人設祭祈雨之例，而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제사를 지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교를 기다려 거행하라는 뜻으로 선조先朝 때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기로 정하여 설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농단, 전사자가 있는 곳,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16일

● 선농단 및 여러 곳에 제사 지내는 날을 택일하다.

예조의 단자에,

“본조의 계사로 인한 초기에 대해,

‘선농단, 전사자가 있는 곳,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선농단은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9일, 전사자가 있는 곳은 민충단에 오는 20일, 쌍령과 험천에 오는 24일,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은 동교·서교·남교에 단소壇所를 설치하여 오는 22일에 근신을 보내 설행하며, 쌍령과 험천의 제물과 집사를 차출하고 배정하여 진배하는 일은 경기 감영 및 각 해당 관

待特教舉行之意，曾在先朝有所定奪，今則以何處爲始定行乎？敢稟。”傳曰：“先農壇·戰亡處·癘疫飢死人處，一併設行，宜矣。”

辛丑六月十六日

● 先農及諸處設祭擇日

一，曹單子：“因本曹啓辭草記，先農壇·戰亡處·厲疫飢死人處，一併設行宜矣事，命下矣。先農壇，則遣重臣，不卜日，來十九日，戰亡處，則愍忠壇來二十日，雙嶺·險川來二十四日，厲疫飢死人處，東西南三郊，設爲壇所，來二十二日，遣近臣設行，而雙嶺·險川，祭物執事差定進排事，京圻監司營及各該司，考例舉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

사에 전례를 살펴 거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기우제를 설행하지 못한 곳에 일체 거행하였다.

“예조가 상고할 일입니다. 지금 한창 가뭄이 이렇게
혹심하여 오방 토룡 기우제를 지금 마쳐 가는데 끝
내 비가 내리지 않으니, 다른 곳에 제사를 설행하는
일을 방금 계품하였습니다. 본도^{本道}에서 예전에 제
사를 설행한 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감악산^{紺嶽山}·송악산^{松嶽山}·관악산^{冠嶽山}·박연^{朴淵}·화적연^{禾積淵}·도미진^{渡迷津}·진암^{辰岩} 분시^{焚柴}는 본도에서 이미 설
행하였으니, 거행할지 여부를 상고하여 속히 회답하
여 의거하여 처리할 바탕으로 삼도록 하십시오.”【회
답한 관문^{關文}에 “아직 설행하지 않은 곳은 일체 설
행하십시오.”라고 경기에 회답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24일

● 종묘에 대신을 보낼 것을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선농단, 전사자가 있는 민충단과 쌍령·협천, 전염병
으로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동교·서교·남교
에서 기우제를 어제 이미 마쳤습니다. 근래 비록 간

啓施行爲良如教.

● 祈祭未及設行處，一體舉行事

一. “曹爲相考事. 今方亢旱此
酷, 五方土龍祈雨祭, 今當畢
行, 而終不得雨, 以他處設祭
事, 今方啓稟是在果, 本道曾
前設祭爲在, 楊津·德津·五冠
山·紺嶽山·松嶽山·冠嶽山·
朴淵·禾積淵·渡迷津·辰岩焚
柴, 自本道亦已設行是喻, 舉
行與否相考, 急速回移, 以爲
憑處之地向事.”【回關內: “未
及設行處, 一體設行”事, 回移
京圻.】

辛丑六月二十四日

● 宗社遣大臣稟

一. 曹啓曰: “先農壇·戰亡處
愍忠壇·雙嶺險川·厲疫飢死
人東西南三郊祈雨祭, 昨日既
已畢行矣. 近日雖間間下雨,

간이 비가 내렸지만 곧바로 날이 개어 끝내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경기의 가뭄은 다른 곳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절기가 이미 늦었으니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모든 신에게 거의 다 하였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저 평상시의 규례만 따를 수 없습니다.

등록을 살펴보니, 예전 을묘년¹⁶⁷⁵ 기우제를 마친 뒤 사직에 친히 기도하겠다는 명이 있었는데, 곧 신하들이 아뢴 일로 인하여 친제親祭는 정지하고 대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에서 섭행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나, 일의 체모가 중대하여 아래에서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직에 친히 기도하는 일을 마련하라.”

하였다.

● 김 집의의 상소로 기우 친제를 설행하다.

집의 김고金樸가 상소하기를,

“이번 가뭄은 예전에 없던 것으로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 밀과 보리는 이미 흉년입니다. 백성이 당황하여 지금 바라는 것은 그저 때맞추어 모내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되니, 이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기운이 위축됩니다. 엇그제 선농단과 전사자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 일체 기우제를 설행하라

而旋即開霽，終未浹洽，圻甸枯旱，比他尤甚，節序已晚，民事渴悶。祈禱之舉，殆至於靡神不舉，而到此地頭，不可只循常規。考見膳錄，則曾在乙卯年祈雨祭，畢行之後，有社稷親禱之命，而旋即諸臣陳達，親祭則停止，遣大臣攝行於宗廟·社稷。似當依此舉行，而事體重大，自下不敢擅便，何以爲之，敢稟。”傳曰：“社稷親禱事，磨鍊。”

● 金執義上疏祈雨親祭設行

執義金樸上疏：“今此亢旱，振古所無，欲雨不雨，淒風連吹，兩麥已歉。民間遑遑，即今所望，只是及時移秧，而蹉過數日，又將愆期，言念及此，不覺氣短。日昨先農·戰亡等處，一併設祭之教，有以見我聖上憫旱如悵之盛意也。第伏念前

는 전교가 있었으니, 우리 성상께서 애타게 가뭄을 근심하는 성대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그간 기도하며 모든 방도를 다 하였으나 조금도 응답이 없고 비가 내릴 조짐이 갈수록 막연합니다. 예전에 선조先朝 때 이와 같은 때에는 반드시 정성껏 친히 기도하여 단비가 내렸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조께서 이미 시행한 법전과 탕왕湯王이 상림桑林에서 기도한 일을 유념하여 타는 듯한 가뭄을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바로 내 뜻에 맞는다. 해당 조로 하여금 택일하지 말고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택일을 물어 아뢰는 것

전교하기를,

“친림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고 분부하였다. 지금 예조의 초기를 보니 2일로 택일하여 들였다. 이달 내의 날짜는 국기일國忌日을 위하여 재계하는 날과 겹쳐서 그러한 것인가? 똑같은 재계이니 달리 구애받을 단서가 없다.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승정원이 조사하여 아뢰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한 일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조의 낭청을 불

後祈禱，靡不用極，而少無其應，雨意逾邈。嘗在先朝如此之時，必虔誠親禱，乃得甘霖，伏願殿下，體先朝已行之典法，成湯桑林之禱，以思救焚沃焦之道焉。” 答曰：“省覽爾疏，正合予意。令該曹，不卜日舉行。”

●擇日問啓

一. 傳曰：“親臨祈雨祭，不卜日設行事，分付矣。今觀禮曹草記，則以初二日，擇日以入，今月內日子，尙多連值國忌齋戒而然耶？同是齋戒，則別無拘碍之端，問啓。”

●政院查啓

一. 政院啓曰：“云云事，命下矣。招問禮曹郎廳，則以爲：

러 물으니,

‘이번 사직 친제는 이미 택일하지 말고 설행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그름 이전으로 날을 정해 들여야 하나, 27, 28일은 연달아 국기일과 겹치니, 비록 똑 같이 재계하는 날이지만 온당치 않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2일로 정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교가 이와 같으니, 29일은 비록 삭제(朔祭)를 위해 재계하는 날이지만 이날로 당겨 정하여 거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직 기우 친제를 오는 2일로 정하여 행하겠다는 초기에 대해 전교하기를,
“29일로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 김 집의의 상소에 회계하지 않다.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집의 김고(金樸)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기우제를 택일하지 말고 거행하라.’

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방금 본조의 초기로 인하여 사직에 친히 기도하는 길일을 이미 잡아 들었으니, 지금은 다시 택일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今此社稷親祭, 既有不卜日設行之教, 所當趁晦前定日以入, 而二十七、八日, 連值國忌, 雖同是齋戒之日, 似涉未安, 故不得已以初二日定入矣. 下教如此, 二十九日, 雖是朔祭齋戒, 以此日進定舉行’云矣. 敢啓.” 傳曰: “知道.”

一. 社稷祈雨親祭, 來初二日定行事草記, 傳曰: “二十九日定行.”

● 金執義上疏不爲回啓

一. 曹啓曰: “即者執義金樸上疏之批, 有祈雨祭不卜日舉行之教, 而才因本曹草記, 親禱社稷吉日, 已爲推擇以入, 今無更爲卜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29일로 정하여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사직에 친히 기도하는 일을 마련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번에 친히 기도하는 일
 은 백성을 위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달
 안에는 날짜가 너무 촉박하여 시행해야 하는 일들
 이 군색하고 급박할 우환이 없지 않습니다. 내달 2
 일 역시 길일이라고 하니, 이날로 정하여 행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29일로 정하여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 전하의 복색을 여쭙어 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예전에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의 복색은 예문대로
 면복^{冕服}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고, 백관은 조복 차림
 으로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상께서 상
 중^{喪中}이므로 평상시의 전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
 다. 을묘년¹⁶⁷⁵ 친제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본조
 에서 흑원령포^{黑圓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 차림으
 로 하였고, 배향^{陪香}할 때도 이 복식으로 마련하였습
 니다. 백관은 흑단령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도록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
 로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二十九日定行

一. 曹啓曰：“因本曹草記，傳曰：‘社稷親禱事磨鍊’事，命下矣。今此親禱之舉，出於爲民之至意，而今月內，則日子太急，應行諸事，不無窘迫之患，來月初二日，亦是吉日云，以此日定行，何如？”傳曰：“二十九日定行。”

● 殿下服色稟定

一. 曹啓曰：“曾前社稷祈雨親祭時，殿下服色，依禮文以冕服行禮，而百官朝服陪祭矣。今則自上方在營疚之中，不當援以常例。取考乙卯年親祭膳錄，則本曹以黑圓領袍·玉帶·黑靴子，陪香時，亦用此服磨鍊，百官則黑團領陪祭事，議大臣停當矣。今亦依此磨鍊以入之意，敢啓。”傳曰：“知道。”

● 음악 사용을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 친제 때 음악을 사용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 경인년¹⁶⁵⁰·을묘년¹⁶⁷⁵에는 사직 친제가 국휼^{國恤} 기간 안에 있었는데, 그때 모두 대신과 의논하여 음악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25일

● 전하의 재제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29일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되,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치재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재제

예조의 단자에,

“이번 6월 29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 묵으며 2일

● 用樂定奪

一. 曹啓曰：“今此社稷親祭時，用樂與否，不可不預爲定奪，曾前庚寅·乙卯兩年，社稷親禱，在於國恤之內，而其時並議大臣，以用樂爲定矣。今亦依此舉行，何如？”傳曰：“允。”

辛丑六月二十五日

● 殿下齋戒

一. 曹單子：“今六月二十九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享官齋戒

一. 曹單子：“今六月二十九日，社稷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及近侍之應從升者，並散齋二

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墺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중사·승지의 의식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친제 때 대소 집사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이번 28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가 재소齋所에 도착하면 중사 및 근시와 함께 흑단령 차림으로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들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에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6월 29일 사직 친제를 지낼 때 향관들은 28일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日於宿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墺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享官·中使·承旨習儀

一. 曹單子：“今此社稷親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肄儀，今二十八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及近侍，亦以黑團領，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舉行，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諸享官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六月二十九日，社稷親祭教是時，諸享官，二十八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신축년¹⁷²¹ 6월 2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28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친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친히 기도하는 일은 실로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고 백성을 우려하여 모든 방도를 다하는 지
 극한 뜻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단비가 쏟아져 밤새
 그치지 않고, 며칠 전부터 비가 내릴 조짐이 생겨났
 으니 한때 내리는 소나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것은 모두 성상께서 그간 비지에서 지성으로 슬퍼하
 여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그러한 것

辛丑六月二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富貴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辛丑六月二十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富貴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親祭停止

一. 政院啓曰：“今此親禱之
 舉，實由於聖上憫旱憂民，靡
 不用極之至意，即今甘霖霈
 然，達夜不止，自數日來，雨意
 醞釀，有非一時驟雨之比，此
 無非聖上前後批旨，至誠惻
 怛，足以上格天心而然，臣民
 之感祝欣忭，曷有其極？既

입니다. 신민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미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기
를 기도하는 것은 끝내 성실하게 하늘을 섬기는 도
리가 아닙니다. 예전 선조先朝 무자년¹⁷⁰⁸ 무렵 남교에
친히 기도하려 하다가 비가 내리자 중지하였으니 선
조의 전례대로 사직에 친히 기도하는 일은 우선 정
지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구구한 소회
를 황공하여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단비는 신료들의 정성에 힘입어 감응한 소치
이다. 예전에 전례가 있으니 지금은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부귀金富貴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6척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남문을 열고 시장을 제자리로 돌려놓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장을 옮기는 등의 일은
고사에 따라 가뭄을 걱정하고 재해를 없애는 방도
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사이에 다소간의 폐단이 없

雨而禱雨，終非事天以實之
道。曾在先朝戊子間，將親禱
南郊，而得雨乃止，依先朝舊
例，社稷親禱之舉，姑爲停止，
恐合事宜，區區所懷，惶恐敢
啓。”傳曰：“今茲甘霖，實賴臣
隣之虔誠感應之致，曾有前
例，今姑停止。”

● 水標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富貴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六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 開南門·還市

一. 曹啓曰：“閉南門開北門·
還市等事，蓋出於依故事，悶
旱禳災之道，而其間亦不無多
少弊端矣。卽今霖雨如此，祈

지 않습니다. 지금 이처럼 단비가 내려 기도하는 일을 모두 정지하였으니, 이 일을 복구하는 것은 가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례대로 오늘부터 남문을 열고 북문을 닫으며 시장을 돌려놓으라고 분부하겠습니다.”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신축년¹⁷²¹ 6월 29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 신익려^{辛益礪}의 청정에,

‘어제 큰비가 내린 뒤 본진^{本津}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축년¹⁷²¹ 윤6월 1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태종^{李太從}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禱之舉，皆已停罷，則此事復舊，不必遲待秋節。依前例，自今日開南門閉北門·還市之意，分付。”傳曰：“允。”

辛丑六月二十九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節呈漢江津別將辛益礪牒呈內：‘昨日大雨後，本津常流水基良中，以布帛尺，五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辛丑閏六月初一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李太從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신축년¹⁷²¹ 7월 9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懿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축년¹⁷²¹ 11월 27일

● 기설제

예조가 아뢰기를, “납일^{臘日} 전에 세 번 눈이 오면 내년의 풍년을 점칠 수 있는데, 지금 겨울이 이미 끝나가고 납일이 머지않았는데 싸락눈만 잠깐 뿌리고 큰 눈이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심은 보리가 일어 상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내년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는 기설제를 설행한 규례가 많았으니, 전례대로 종묘·사직·북교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⁷²² 4월 15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辛丑七月初九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李懿生手本內: ‘去夜下雨, 水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 是如爲白臥乎事.”

辛丑十一月二十七日

● 祈雪祭

一. 曹啓曰: “臘前三白, 可占來歲之豐熟, 而今者冬節已闌, 臘日不遠, 微霰乍灑, 大雪尙靳, 秋耕牟麥, 未免凍傷, 嗣歲之憂, 有不可言. 自前如此時, 多有祈雪祭設行之規, 依前例, 宗廟·社稷·北郊, 遣重臣, 不卜日, 來初二日設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壬寅四月十五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 “今春旱乾, 甚於

“올봄의 가뭄은 작년보다 심하여 4월에 들어온 이후로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으며 끝내 한 번 쏟아지지 않아 밀과 보리가 메마르고 과종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망종이 또 다가왔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이전에 결정한 대로 1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7일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⁷²² 4월 18일

● 2차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0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4월 21일

● 3차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3일 설행하라고

上年, 自入四月以來, 欲雨不雨, 終靳一霈, 兩麥枯損, 播種愆期. 芒種又且迫近, 言念民事, 誠爲渴悶. 祈禱之舉, 不容少緩, 依前定奪,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遣三品官, 不卜日, 來十七日設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壬寅四月十八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二十日設行之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寅四月二十一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二十三日設行之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4월 23일

● 사직 친제의 날짜를 정하다.

비망기에,

“3차 기우제 이후 비가 내릴 기미가 갈수록 아득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하는 마음이 타는 듯하다.

친히 사직에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택일하지 말고 24일로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같은 날 2경오후9~11시에 전교하였다.】

● 제사 날짜를 물려 정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비망기를 보니, 친히 기도하고 죄수를 심리하는 일을 모두 내일로 정하였으니, 가뭄을 근심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신민이라면 누구든 공정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일이 몹시 촉박하여 제때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25일 출궁하여 재숙齋宿하고, 다음 날 밤에 제사를 지내고 환궁한 뒤 그대로 심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렇게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意,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寅四月二十三日

● 社稷親祭定日

一. 備忘記: “三次祈雨之後, 雨意逾邇, 言念民事, 憂心如灼. 親禱社稷, 不容少緩, 不卜日, 二十四日定行.” 【同日二更傳教】

● 祭日退定

一. 政院啓曰: “卽伏見備忘記, 親禱疏決, 並以明日爲定, 憫旱爲民之意至矣. 凡在臣民, 孰不欽歎? 而第日期甚迫, 有難及期舉行, 以二十五日出宮齋宿, 翌宵行祀, 還宮後仍爲疏決, 恐爲得宜. 以此, 分付舉行, 何如? 敢稟.” 傳曰: “依爲之.”

● 사직 기우 친제의 전하의 복색을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예전에 사직 기우 친제 때 전하의 복색은 예문대로 면복冕服 차림으로 예를 행하였고, 백관은 조복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은 성상께서 상중喪中이므로 평상시의 규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을묘년¹⁶⁷⁵ 친제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본조에서 흑원령포黑圓領袍·옥대玉帶·흑화자黑靴子로 하였고, 배향陪香할 때도 이 복식으로 마련하였으며, 백관은 흑단령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도록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기우제에 음악을 사용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 친제 때 음악을 사용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 경인년¹⁶⁵⁰·을묘년¹⁶⁷⁵에는 사직 친제가 국휼國恤 기간 안에 있었는데, 그때 모두 대신과 의논하여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향관들의 의식 연습

예조의 단자에,

● 社稷祈雨親祭殿下服色定奪

一. 曹啓曰：“曾前社稷祈雨親祭時，殿下服色，依禮文以冕服行禮，而百官朝服陪祭矣。今則自上營疚之中，不當援以常例。取考乙卯年親祭膳錄，則本曹以黑圓領袍·玉帶·黑靴子，陪香時，亦用此服磨鍊，百官則黑團領陪祭事，議大臣停當矣。今亦依此磨鍊以入之意，敢啓。”傳曰：“知道。”

● 祈雨用樂

一. 曹啓曰：“今此社稷親祭時，用樂與否，不可不預爲定奪，曾前庚寅·乙卯兩年，社稷親禱，在於國恤之內，而其時並議大臣，以用樂爲定矣。今亦依此舉行，何如？”傳曰：“允。”

● 諸享官習儀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대소 집사관들은 의식 연습을 면제하고 25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가 재소齋所에 도착한 뒤 중사·근시 및 내시·궁관과 함께 흑단령 차림으로 전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전하 재계

예조의 단자에,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에 이르기까지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사직 친제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치재하며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도록 하며,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壚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왕세제 재계

예조의 단자에,

祭教是時，大小諸執事官，除肄儀，二十五日質明，先詣祭所爲白有如可，大駕詣齋所後，與中使·近侍及內侍宮官，亦以黑團領，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殿下齋戒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社稷親祭，只隔三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壚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王世弟齋戒

一. 曹單子：“今二十六日，社

“이번 26일 사직 기우 친제 때 왕세제는 오늘부터 별당에서 치재^{치재}하고, 궁관^{궁관}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본사}에서 재숙^{재숙}하고 향소^{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여러 위衛의 소속은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들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대제}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조복 차림으로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 있다가 대가^{대가}가 도착하면 지영^{지영}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4월 26일 사직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5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며, 왕세제가 도착하면 역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4월 27일

● 기우제를 설행할 일

승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 상중에 조섭하시는 가운데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기도하였으니 성의가

稷祈雨親祭教是時，王世弟，自今日別當致齋，而宮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諸衛之屬，各於本司清齋一宿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諸享官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四月二十六日，社稷祈雨親祭時，諸享官，二十五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而王世弟至，亦爲祇迎事，知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寅四月二十七日

● 祈雨設行事

一. 政院啓曰：“伏惟我聖上諒闇靜攝之中，悶旱親禱，誠意藹然，仁愛之天，必有冥應，

가득합니다. 어질고 자애로운 하늘이 필시 응답이 있을 것인데 아직도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가 애타고 급합니다. 어제 죄수를 심리한 일 역시 모든 방도를 다 하는 도리에서 나온 것이니, 하늘에 진실로 대응하는 도리가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감읍하고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모든 신에게 제사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 연속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야 하나, 얼마 전 친히 제사를 지냈으므로 해당 조에서 감히 차례대로 계품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타는 듯한 재해가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급하니, 해당 조에 분부하여 선조先朝 갑신년¹⁷⁰⁴의 전례대로 기우제 차례를 정식으로 삼아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승정원의 계사. 4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지금 타는 듯한 재해가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급하니, 해당 조에 분부하여 선조先朝 갑신년¹⁷⁰⁴의 전례대로 기우제 차례를 정식으로 삼아 거행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4차 기우제를 사직과 북교에 설행해야 하는데, 사직에는 얼마 전 친제를 설행하였으니 북교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而尙闕霈澤，民事渴急。昨日疏決之舉，亦出於靡不用極之道意，應天以應(實)之道，無以加矣。凡在瞻瞻聆，孰不感泣頌祝也？第念靡神不舉之道，所當連續祈雨，而纔經親祀，故該曹不敢循次啓稟云，而卽今焚灼之災，急於燃眉，分付該曹，依先朝甲申年例，祈雨祭次第定式舉行，何如？”

傳曰：“依爲之。”

● 政院啓辭四次祈雨

一. 曹啓曰：“因政院啓辭，卽今焚灼之災，急於燃眉，分付該曹，依先朝甲申年例，祈雨祭次第定式舉行事，啓下矣。四次祈雨祭，當行於社稷·北郊，而社稷則纔經親祭，北郊遣宰臣，不卜日，來二十九日設行事，知委，何如？”

傳曰：“允。”

임인년¹⁷²² 4월 28일

● 남교 기우 친제

비망기에,
“지금의 가뭄이 또한 몹시 혹독하여 여러 달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것이 메말랐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타는 듯하다. 다시 남단^{南壇}에서 친히 기도할 것이니 택일하지 말고 30일로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 2경에 동가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를 30일에 설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남교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는 2경초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와 단소^{壇所}에 나아가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고,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하는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며, 제관과 집사는 29일 새벽에 먼저 제사지낼 곳에 가서 중사 및 근시와 함께 전례대로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남교 기우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壬寅四月二十八日

● 南郊祈雨親祭

一. 備忘記：“今茲之旱，亦孔之酷，彌月不雨，萬氣焦枯，言念至此，心如焚灼，更爲親禱于南壇，不卜日，三十日定行。”

● 二更動駕

一. 曹啓曰：“南郊祈雨親祭，以三十日設行事，命下矣。曾前南郊祈雨親祭時，上於二更初，動駕出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規矣。出宮時刻，今亦依此舉行，而祭官·執事，二十九日質明，先詣祭所，與中使及近侍，依例並爲私習，俾無失儀事，知委，何如？”傳曰：“允。”

● 壇修理

一. 曹啓曰：“今此南郊祈雨親祭時，壇上修理修補事，別遣

일은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전례대로 함께 검사하며,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해 속히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남교 친제에는 흑원령포 차림으로 행할 것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남교 기우 친제 때 전하의 복색은 이번 사직 친제의 전례대로 흑원령포·옥대·흑화자 차림으로 하고 배향^{陪香}할 때도 이 복식을 사용하며, 백관은 흑단령 차림으로 제사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남교는 중사이니 음악을 사용하지 말 것

예조가 아뢰기를,

“『국조오례의』 「계령^{戒令}」 조에,

‘3년 동안 음악을 정지하되 오직 대사^{大祀}는 졸곡^{卒哭} 이후에 음악을 사용하고, 중사^{中祀} 이하는 국휼 3년 동안 모든 음악을 정지한다.’

하였습니다. 이번 남교는 중사에 속하니, 예문에 실린대로 음악을 사용하는 절목은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戶·工曹郎廳及本曹郎廳，依例眼同看檢，而亦令繕工監別定監役官，急速舉行事，分付，何如?” 傳曰：“允。”

● 南郊親祭黑圓袍行

一. 曹啓曰：“今此南郊祈雨親祭時，殿下服色，依今番社稷親祭例，黑圓袍·玉帶·黑靴子，陪香時，亦用此服，百官則黑團領陪祭事，知委，何如?” 傳曰：“允。”

● 南郊以中祀勿用樂

一. 曹啓曰：“五禮儀，戒令條，停樂三年，唯大祀卒哭後用樂，則中祀以下，國恤三年內，並皆停樂矣。今此南郊，係是中祀，依禮文所載，用樂一節，不爲磨鍊之意，敢啓。” 傳曰：“知道。”

● 전하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남교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남교 친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치재하며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도록 하며, 향관들과 근시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櫺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왕세제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30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왕세제는 오늘부터 별당에서 치재致齋하고, 궁관宮官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여러 위衛의 소속은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殿下齋戒

一. 曹啓曰：“南郊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南郊親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櫺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傳曰：“允。”

● 王世弟齋戒

一. 曹單子：“今三十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王世弟，自今日別堂致齋，而宮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諸衛之屬，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남교 친제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에 향관들은 조복 차림으로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4월 30일 남교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29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고, 왕세제가 도착하면 역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아헌, 의식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 4월 30일 남교 기우 친제 때 왕세제가 아헌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29일 새벽에 중사, 승지, 향관들이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사사로이 연습할 때 세제궁의 내시 및 궁관도 흑단령 차림으로 나아가 참석하여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남교 기우 보부^{報府}

보부 초안

1. 이번 4월 30일 남교 기우 친제를 지낸다.

1. 제관과 집사는 29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중사·승지 및 내시·궁관과 함께 전례대로 흑단령 차림으로 사사로이 의식을 연습한다.

● 南郊親祭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以朝服，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四月三十日南郊祈雨親祭，諸享官，二十九日質明，先詣享所，以黑團領祇迎，而王世弟至，亦爲祇迎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亞獻習儀

一. 曹單子：“今四月三十日，南郊祈雨親祭教是時，王世弟惡獻事，啓下矣。二十九日質明，中使·承旨·諸享官，先詣享所私習時，世弟宮內侍及宮官，亦以黑團領，進參行禮，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南郊祈雨報府

一. 報府草

一. 今四月三十日南郊祈雨親行事。

一. 祭官·執事，二十九日質明，先詣享所，與中使·承旨及內

1.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대가와 왕세제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한다.
1.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本司}에서 묵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壘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한다.

侍宮官，依例以黑團領私習儀事。

一. 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大駕·王世弟將至，以黑團領祇迎事。

一. 諸享官及近侍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壘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

임인년¹⁷²² 5월 2일

● 친히 기도한 뒤 연달아 기우제를 지내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영단^{靈壇}에 제사를 지내며 친히 기도한 것이 두 차례나 되었는데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아 하늘의 응답이 막연합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는 오래 중신과 대신을 보내 차례로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있었으니, 해당 조에 분부하여 전례를 살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한 일에 대해 윤허를 내리셨

壬寅五月初二日

● 親禱後連次祈雨

一. 政院啓曰：“靈壇植璧，親禱至再，而欲雨不雨，冥應漠然。自前如此之時，例有連遣重臣大臣，次第祈雨之舉，分付該曹，考例舉行，何如？”傳曰：“允。”

● 五次祈雨

一. 曹啓曰：“政院啓辭云云事，允下矣。五次祈雨祭，宗

습니다.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4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⁷²² 5월 5일

● 6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6차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 침호두에 근시를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7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5월 6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귀동^{趙貴同}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인년¹⁷²² 5월 8일

예조의 단자에,

廟遣重臣，不卜日，來初四日設行之意，分付，何如？”傳曰：“允。”

壬寅五月初五日

● 六次

一. 曹單子：“六次祈雨祭，三角山·木覓山·漢江沈虎頭，遣近侍，不卜日，來初七日設行之意，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寅五月初六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趙貴同手本內：‘今日下雨，水標看審，則二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壬寅五月初八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조귀동趙貴同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6차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충분히 내렸고 비가 아
직 그치지 않았으니, 기우제를 다시 설행하는 일은
우선 앞으로 보아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⁷²² 5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김귀손金貴孫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4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趙貴同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祈雨停

一. 曹啓曰：“六次祈雨之後，
得雨既洽，雨意亦未開霽，祈
雨祭更爲設行一款，姑觀前
頭，稟處，何如？”傳曰：“允。”

壬寅五月十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金貴孫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四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

임인년¹⁷²² 5월 25일

● 한강 수표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한강진 별장^{漢江津別將}의 첩정에,
‘연일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 평상시 수위 기준에서
포백척^{布帛尺}으로 5척 5촌 높기로 물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인년¹⁷²² 6월 27일

● 입추 후 기우제를 다시 설행

예조가 아뢰기를,

“이달 10일 이후부터 비가 갠 지 거의 수십 일이 되었는데 비가 내릴 조짐이 막연합니다. 한창 큰비가 내리는 계절로 이른 곡식의 이삭이 펴는데 가뭄이 한결같이 이와 같습니다. 또 2, 3일 전부터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고 가뭄 기운이 더욱 치성하여 들판의 여러 곡식이 대부분 말라 상하였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면 너무도 애타고 급합니다. 입추 이후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이미 가까운 전례가 있고,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1차 기우제를 삼각산^{三角山}·목역산^{木覓山}·한강^{漢江} 등의 장소에 이전에 결정한 대로 3품 관원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9일 설행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壬寅五月二十五日

● 漢江水標

一. 曹單子: “節呈漢江津別將牒呈內: ‘連日下雨, 江水漲溢, 常流水基良中, 以布帛尺, 五尺五寸流下’是如爲白臥乎事.”

壬寅六月二十七日

● 立秋後祈雨更設

一. 曹啓曰: “自今月旬後, 雨霽殆浹數旬, 雨意漠然. 正當大雨時行之節, 早穀發穗之時, 早乾一向如此, 又自數三日內, 淒風連吹, 旱氣益熾, 田野各穀, 舉皆傷損, 言念民事, 萬分渴急. 立秋後設祭, 已有近例, 大臣之意亦如此, 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 依前定奪, 遣三品官, 不卜日, 來二十九日設行事, 知委, 何如?” 傳曰: “允.”

임인년¹⁷²² 6월 30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2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7월 3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 등의 장소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5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7월 6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증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8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壬寅六月三十日

● 再次

一. 曹單子: “再次祈雨祭, 龍山江·楮子島, 遣宰臣, 不卜日, 來初二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寅七月初三日

● 三次

一. 曹單子: “三次祈雨祭, 風雲雷雨·山川·雩祀等處, 遣宰臣, 不卜日, 來初五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壬寅七月初六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初八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임인년¹⁷²² 7월 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訖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1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기우제를 정지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4차 기우제의 향을 받았으나 엇그제 비가 오랫동안
 쏟아져 아직 그칠 조짐이 없으니 설행할 필요가 없
 을 듯합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에는 역시 정지
 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우선 향을 받는
 것은 정지하고 다시 앞으로 보아 성상께 여쭙어 처
 리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⁷²² 7월 13일

● 기우제를 변동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김을 맨 뒤에 가뭄이 들기는 팔도가 똑같
 은데, 연달아 각 도의 장계를 보니 모든 농사 형편
 이 지극히 놀라워 앞으로의 농사를 어찌할 줄 모르
 겠습니다. 얼마 전 4차 기우제의 향을 받을 때 비가

壬寅七月初七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訖生手本內：‘今日下雨，水
 標看審，則一尺五寸流下’是如
 爲白臥乎事。”

● 祈雨停

一. 政院啓曰：“四次祈雨祭受
 香，而日昨雨勢久霑，尙無開
 霽之意，似必不爲設行。自前
 如此之時，亦有停止之例，今
 亦依此姑停受香，更觀前頭，
 稟處事，分付，何如？”傳曰：
 “允。”

壬寅七月十三日

● 祈雨變通

一. 政院啓曰：“今此鋤後之
 旱，八路同然，連見各道狀啓，
 則農形凡百，極爲驚心，前頭
 民事，罔知攸措。頃當四次祈
 雨祭受香之時，雨勢徹夜大

밤새 크게 쏟아졌으므로 전례대로 계청하여 우선
정지하였으나 곧 날이 개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
은 지 지금 열흘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같은
때는 비록 가을이라도 때로는 특교로 인하여, 때로
는 계청하여 설행하였습니다. 기우제를 전례대로 다
시 설행하라고 해당 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 4차 기우제를 계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이번에 김을 맨 뒤에 가뭄
이 들기는 팔도가 똑같으니 기우제를 전례대로 다시
설행하라고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계청한 대
로 4차 기우제를 복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
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5일에 설행하라고 분
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임인년¹⁷²² 7월 16일

● 5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5차 기우제를 종묘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注, 故依舊例啓請姑寢矣, 旋
爲開霽, 更不下雨, 今浹一旬.
自前如此之時, 雖當秋節, 或
因特教, 或爲啓請設行矣. 祈
雨祭依前例, 更爲設行事, 分
付該曹, 何如?” 傳曰: “允.”

● 啓請四次雨

一. 曹啓曰: “因政院啓辭, 今
此鋤後之旱, 八路同然, 祈雨
祭依前例, 更爲設行事, 允下
矣. 依前啓請, 四次祈雨祭, 北
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
日, 來十五日設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壬寅七月十六日

● 五次

一. 曹單子: “五次祈雨祭, 宗
廟遣重臣, 不卜日, 來十八日設
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
施行爲良如教.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임인년¹⁷²² 7월 17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齡生}의 수본에,
‘오늘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2척 5촌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인년¹⁷²² 7월 18일

● 기우제를 우선 정지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가을 이후 다시 기우제를 설행한 것은 한 달 동안
가뭄이 들었기 때문인데, 어제부터 비가 내려 거의
쟁기날을 적실 정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추수가 멀
지 않은데 찬비가 계속 내리면 필시 곡식을 해칠 우
려가 있으니, 내일 6차 기우제는 우선 정지하고 다
시 앞으로 보아 성상께 여쭙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壬寅七月十七日

一. 曹單子: “節呈中部水標直
李齡生手本內: ‘今日下雨, 水
標看審, 則二尺五寸流下’ 是如
爲白臥乎事.”

壬寅七月十八日

● 祈雨姑停

一. 曹啓曰: “秋節後更設祈雨
祭, 蓋出於浹月旱乾之致, 而
自昨雨下, 殆過犂許矣. 卽今
秋成不遠, 冷雨連下, 則必有
害穀之慮, 明日六次祈雨祭,
姑爲停止, 更觀前頭稟處, 何
如?” 傳曰: “允.”

임인년¹⁷²² 7월 20일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접수한 중부 수표직 이엇생^{李懿生}의 수본에,
 ‘지난밤 비가 내려 수표를 살펴보니 3척 높이로 물
 이 흘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계묘년¹⁷²³ 5월 4일

● 1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 봄 이후로 비록 간간이 비가 내렸으나 끝내
 충분히 적시지 못하였습니다. 4월 이후로 가뭄 기운
 이 제법 심해졌는데 서울과 지방이 똑같습니다. 근
 래 비가 내릴 조짐이 있는 듯하여 기다렸으나 절기
 가 점차 늦어지는데 한결같이 메마르니 앞으로의 농
 사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
 출 수 없으니, 이전에 결정한 대로 1차 기우제를 삼
 각산·목멱산·한강 등의 장소에 3품 관원을 보내 택
 일하지 말고 오는 7일에 설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壬寅七月二十日

一. 曹單子：“節呈中部水標直
 李懿生手本內：‘去夜下雨，水
 標看審，則三尺流下’是如爲白
 臥乎事。”

癸卯五月初四日

● 初次祈雨

一. 曹啓曰：“今年自春以來，
 雖間有雨澤，而終不周洽，四
 月以後，旱氣頗甚，中外同然，
 近日似有雨意，有所等待矣。
 節候漸晚，一向早乾，前頭農
 事，誠爲可慮。祈禱之舉，不容
 少緩，依前定奪，初次祈雨祭，
 三角山·木覓山·漢江等處，遣
 三品官，不卜日，來初七日設
 行之意，分付，何如？”傳曰：
 “允。”

계묘년¹⁷²³ 5월 8일

● 2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2차 기우제를 용산강과 저자도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0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묘년¹⁷²³ 5월 11일

● 3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3차 기우제를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재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3일에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
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는 일에 대한 비망기

비망기에,

“아, 덕이 없는 내가 즉위한 이래로 범상치 않은 재
해와 놀랄 만한 상황이 없는 해가 없다. 곡식을 해
치는 참혹한 홍수와 가뭄, 바람과 우박이 달마다 생
기니, 어질고 자애로운 하늘이 경계하고 진작시키는
일은 모두 후세 사람이 거울삼을 만한 일로 비유하
였다. 아, 『시경』에 ‘하늘이 바야흐로 주^周나라 왕실

癸卯五月初八日

● 再次

一. 曹單子：“再次祈雨祭，龍
山江·楮子島，遣宰臣，不卜
日，來初十日設行事，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卯五月十一日

● 三次

一. 曹單子：“三次祈雨祭，風
雲雷雨·山川·雩祀，遣宰臣，
不卜日，來十三日設行事，知
委，何如？” 啓依所啓施行爲
良如教。

● 減膳撤樂事備忘記

一. 備忘記：“烏呼，眇予否德
以來，非常之災，可愕之象，無
歲無之，而水旱風雹之慘，所
以害穀者，式月斯生。仁愛之
天，警惕振刷，罔非後世人譬
之所可鑑則也哉。噫，『詩』
曰：‘天之方蹶，無然泄泄。’ 敬
天之怒，無躬逸豫，以堯舜之

을 쓰러뜨리려고 하니 게으르고 안일하지 말라.’ 하였다. 하늘의 분노를 공경하여 나태하지 않는 것은 요순 같은 성인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주나라 문왕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밥 먹을 겨를도 없었으니, 정사를 부지런히 한 실재가 책에 가득하다. 시사를 말하자면 흠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흩어지는 듯한 형세가 있고, 언론을 말하자면 속마음을 먼저 토로할 뜻이 있으니, 한밤중에 생각하면 잠들어 깨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인재를 수습하고 충성스러운 말을 살펴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이니, 간언하라는 것 발을 세우는 일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말이 쓸 만하면 채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둘 것이니, 승지는 교서를 대신 짓고 의정부에서 널리 직언을 구하라. 말이 비록 어리석고 망령되더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이겠다. 임금과 신하는 아들과 아비의 관계와 같으니,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당고黨綱의 화禍를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한 방에서도 서로 공격하고 호오好惡가 상반된다. 아, 마음이 막히기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경들은 모두 대대로 벼슬한 집안 출신으로 의리상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 이처럼 어지러운 때를 만나 어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왕실을 도와 오르내리는 조종의 명령을 위로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의 선조도 필시 기뻐할 것이며, 어찌 함께 장수하지 않겠는가. 아, 지금 재해를 초래한 것은 참으로 덕이

聖, 不自滿暇, 至周文王, 日中不遑暇食. 凡所勤政之實, 藹然於方冊之中, 以言乎時事, 則有土崩瓦解之形, 以言乎言論, 則有腹心先吐之意, 中夜以思, 尙寐無吺. 爲今之計, 莫若收拾人才, 察納忠言, 則進善之旌, 烏可已乎? 言可用則採之, 言不可用則置之, 承旨代教, 宜宣政府, 廣求直言. 言雖枉妄優容. 君之於臣, 猶子之於父, 則安可無可言者乎? 黨癩之禍, 可勝言哉? 甚至於一室之間, 干戈相尋, 好惡相反. 嘻噫, 情志之阻隔, 胡至此極? 卿等俱以世祿之臣, 義同休戚. 值此板蕩之秋, 胡不殫竭心力, 夾輔王室, 以慰祖宗陟降之靈? 則乃祖乃先, 必致悅豫, 豈非並受其壽乎? 噫, 今茲致異. 亶由無德. 對越之誠, 恒切于中, 自今日避正殿, 益加敬畏之心焉. 減膳·撤樂等事, 劃即舉行.”

없는 나 때문이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정성이 항상 마음속에 간절하다.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여 더욱 경외할 것이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은 즉시 거행하라.” 하였다.

●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복을 치지 않는 일은 우선 그대로 두다.

예조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여 더욱 경외할 것이다.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는 등의 일은 즉시 거행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가뭄이 한 달이 넘어 농사가 애타고 걱정입니다. 2차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가 내릴 조짐이 아직 없으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애타고 근심하는 마음이 한창 간절합니다. 지금 이 비망기는 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가뭄을 근심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보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정전을 피하고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는 절차는 즉시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을 치지 않는 일은 근래의 규례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減膳勿擊鼓安徐

一. 曹啓曰：“備忘記：‘自今日避正殿，益加敬畏之心焉，減膳·撤樂等事，剴即舉行’事，傳教矣。亢旱踰月，民事渴悶，再次祈禱，雨意尙靳，上下焦憂，方切于中矣。今此備忘，實出敬天恤民，悶旱憂遑之至誠，凡在瞻聆，孰不感動？避正殿·減膳·撤樂等節次，即令各該司，依例舉行，而勿擊鼓一款，依近例安徐之意，敢啓。”傳曰：“知道。”

계묘년¹⁷²³ 5월 14일

● 4차 기우제

예조의 단자에,
“4차 기우제를 북교에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 중신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6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선농단 기우제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친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선농단에 택일하지 말고 15일로 정하여 행하라.”
하였다.

● 친제 절목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가뭄이 이처럼 혹독하여 농사가 애타고 걱정이니, 친히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선농단에 택일하지 말고 15일로 정하여 행하라.’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모든 절목은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고, 제물은 갑신년¹⁷⁰⁴의 전례 대로 친제의 전례로 마련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癸卯五月十四日

● 四次

一. 曹單子: “四次祈雨祭, 北郊遣宰臣, 社稷遣重臣, 不卜日, 來十六日設行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農壇祈雨

一. 傳曰: “亢旱斯酷, 民事渴悶, 親禱之舉, 不容少緩, 農壇, 不卜日, 十五日定行.”

● 親祭節目

一. 曹啓曰: “傳曰: ‘亢旱斯酷, 民事渴悶, 親禱之舉, 不容少緩, 農壇, 不卜日, 十五日定行’ 事, 傳教矣. 凡干節目, 分付各該司, 趁卽舉行, 而祭物則依甲申年例, 親祭例磨鍊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 전하의 재계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 친제 때 성상부터 향관들까지 산재散齋하고 치재致齋하는 규례가 있는데, 이번 선농단 친제는 이를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산재는 형세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전하께서는 별전別殿에서 치재하되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도록 하며,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에 묵으며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고,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墺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2경에 동가하고 향관은 의식을 연습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예전에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는 2경 초에 동가動駕하여 도성을 나가 단소壇所에 가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고,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출궁하는 시각은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제관과 집사는 14일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중사 및 승지와 함께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殿下齋戒

一. 曹啓曰：“祈雨親祭時，自上逮至諸享官，例有散·致齋之規，而今此先農壇行祭，只隔二日，散齋則勢未及舉行，自今日，殿下，別殿致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諸享官·近侍之官應從升者，並自今日宿於本司，致齋一日享所，陪祭百官·諸衛之屬守衛墺門者，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 二更動駕，享官習儀

一. 曹啓曰：“曾前先農壇祈雨親祭時，自上於二更初，動駕出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事矣。出宮時刻，今亦依此舉行，而祭官·執事，十四日寅明，先詣享所，與中使·承旨，並爲私習，俾無失儀之患事，知委舉行，何如？”傳曰：“允。”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선농단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는 일은 전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며, 또한 선공감으로 하여금 감역관을 따로 정해 속히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

● 향관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 있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15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은 14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대가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사직으로 고쳐 정하다. 향관의 지영^{祇迎}과 사사로운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에 친림 기우제^{親臨祈雨祭}는 처음에 선농단으로

● 壇修理

一. 曹啓曰：“今此先農壇親祭時，壇上修理事，依例別遣戶曹·工曹郎廳及本曹郎廳，眼同看檢，而亦令膳工監別定監役官，急速修理，何如？”傳曰：“允。”

● 享官祇迎

一. 曹單子：“凡大祭親行時，諸享官，前一日質明，先詣享所爲白有如可，大駕將至祇迎事，禮文載錄爲白有昆，今十五日，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諸享官，十四日質明，先詣享所，大駕將至以黑團領祇迎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社稷改定. 享官祇迎私習

一. 曹單子：“今此親臨祈雨祭，初以先農壇定行，故應行節目，纔已啓下矣。今因疏決

정하였으므로 응당 시행할 절목을 방금 이미 계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를 심리하기 위해 입
시하였을 때 사직단으로 고쳐 정하도록 결정하였습
니다. 치재(致齋)는 이전에 계하한 대로 시행하며, 향
관들은 먼저 향소에 가서 4품 이상은 조복(朝服), 5품
이하의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며, 대가가 재소(齋所)
에 도착한 뒤 향관들과 중사·승지는 전례대로 사사
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
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왕세제의 아헌을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사직 기우 천제 때 왕세제가 아헌하는 예는 어
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 전교하였다.

● 향관의 사사로이 연습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15일 사직 기우 천제 때 왕세제가 아헌하
라고 계하하였습니다. 오늘 중사·승지·향관들이 단
소에 나아가 사사로이 연습할 때, 세제궁의 내시·궁
관도 흑단령 차림으로 나아가 참석하여 예를 행하
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入侍時，以社壇改定事，定奪
矣。致齋依前啓下施行，而諸
享官，先詣享所，四品以上朝
服，五品以下以黑團領祗迎，
大駕詣齋所後，諸享官與中使
·承旨，依例私習，俾無失儀
事，更爲知委，何如？”啓依所
啓施行爲良如教。

● 王世弟惡獻稟

一. 曹啓曰：“今此社稷祈雨親
祭時，王世弟惡獻之禮，何以
爲之，敢稟。”傳曰■...■

● 享官私習

一. 曹單子：“今五月十五日，
社稷祈雨親祭教是時，王世弟
惡獻事，啓下矣。今日中使·承
旨·諸享官，詣壇所私習時，世
弟宮內侍·宮官，亦以黑團領，
進參行禮事，知委，何如？”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教。

● 왕세제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사직 기우 친제 때 왕세제는 오늘부터 별당에
서 치재^{치재}하고, 궁관^{궁관}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
는 자는 모두 오늘부터 본사^{본사}에서 치재하며, 여러
위^위의 소속은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청재}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계묘년¹⁷²³ 5월 16일

● 기우제를 차례로 거행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우리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고 백성을 걱정
하느라 노심초사하여 산천에 기도한 뒤 또 죄수를
심리하였습니다. 여름철 조용히 조섭하는 가운데
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직단에 나아가 밤새 제
사를 지냈으니 성의가 가득하여 어질고 자애로운
하늘이 필시 감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려
다가 내리지 않아 아직도 쏟아지지 않아 밀과 보리
는 이미 말랐고 모내기가 점차 늦어지니, 농사를 생
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다급합니다. 모든 신에게 연
속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얼마 전 친제를 지냈으므
로 해당 조에서 감히 규례대로 여쭙지 못하였습니
다.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기우제를 차
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王世弟齋戒

一. 曹單子：“今此社稷祈雨親
祭教是時，王世弟，自今日別
堂致齋，而宮官應從升者，並
自今日致齋於本司，諸衛之
屬，各於本司清齋事，知委，何
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癸卯五月十六日

● 祈雨次第舉行

一. 政院啓曰：“伏惟我聖上，
閔旱憂民，勞心焦慮，既禱山
川，又行疏決，當暑靜攝之中，
親祭書趾，進詣社壇，撤夜將
事，誠意藹然，仁愛之天，必
有冥應，而欲雨未雨，霈尙闕，
兩麥既枯，移秧漸晚，言念民
事，誠爲渴急，事當靡神不舉，
連續祈禱，而纔經親祀，故該
曹不敢循例啓稟，請該曹詳
考前例，祈雨祭，次第舉行，何
如？” 傳曰：“依爲之。”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4차 기우제는 북교에서 설행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로 인하여,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고 아직도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애타고 다급하다. 해당 조에 분부하여 전례를 자세히 살펴 기우제를 차례대로 거행하라.’

라고 계하하였습니다. 4차 기우제는 사직과 북교에서 지내야 하는데, 사직에서는 얼마 전 친제를 지냈으니, 북교에 재신^{宰臣}을 보내 택일하지 말고 오는 18일 설행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북교에 친히 기도드릴 일을 대신에게 문의하다.

전교하기를,

“올해 가뭄도 몹시 혹심하니, 비가 내리려다 내리지 않은 지가 거의 보름에 가깝다. 농사를 생각하면 망극하다 하겠다. 북단^{北壇}에서 친히 기도하고자 하는데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비국 낭청이 수의^{收議}하여 아뢰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가뭄의 재해가 이처럼 혹심하여 농사가 애타고 급합니다. 성상께서 잠자리가 불안하여 직접 사직단

● 四次祈雨. 北郊.

一. 曹啓曰：“因政院啓辭，欲雨未雨，需尙闕，言念民事，誠爲渴急，分付該曹，詳考前例，祈雨祭，次第舉行事，啓下矣。四次祈雨祭，當行於社稷·北郊，而社稷則纔經親祭，北郊遣宰臣，不卜日，來十八日設行事，知委，何如？”傳曰：“允。”

● 北郊親禱大臣問議

一. 傳曰：“今歲亢旱，亦孔之酷矣。欲雨不雨，殆近一望，言及民事，可謂罔極，欲親禱北壇，大臣之意，如何？”【自備局郎廳收議以啓】

一. 備邊司啓曰：“旱災此酷，民事渴急，丙枕不安，親禱社壇，足以感動天心，而圭璧旣

에 기도하였으니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충분하거늘, 이미 제사를 지냈는데 구름이 곧 흩어져 끝내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상께서 근심하고 수고하여 갑절로 애태우다가 이렇게 북교에 친히 기도할지 문의하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이는 본디 모든 방도를 다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교에 친림한 전례가 없고, 대가가 야차野次에서 밤을 보내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친히 사직단에 기도한 지 겨우 며칠이 지났으니, 신의 생각에는 우선 4, 5일 보았다가 종묘에 친히 기도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이렇게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농단에 친히 기도하는 일은 택일하지 말고 20일로 정하라.”

하였다.

계묘년¹⁷²³ 5월 17일

● 선농단 친제

예조가 아뢰기를,

“비변사의 계사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선농단 친제를 택일하지 말고 20일로 정하여 행하라.’라고 전교하였습니다. 모든 절목은 각 관사에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며, 제물은 갑신년¹⁷⁰⁴ 친제의 전례대로 마련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卒，雲陰旋解，終靳一霈，聖心憂勞，一倍焦煎，有此北郊親禱問議之教。此固出於靡不用極之至意，而北郊親臨，曾無前例，大駕經夜於野次，極爲重難，親臨社壇，才過數日，臣意則姑觀四五日，親禱於宗廟，恐合事宜，敢此仰稟。”傳曰：“農壇親禱，不卜日，二十日定。”

癸卯五月十七日

● 先農親禱

一. 曹啓曰：“因備邊司啓辭：

傳曰：‘先農壇親禱，不卜日，二十日定行’事，傳教矣。凡干節目，分付各司，趁卽舉行，而祭物，則依甲申年親祭例磨鍊之意，分付，何如？”傳曰：“允。”

● 단소 수리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선농단 기우 친제 때 단상을 수리하는 일은 전례대로 호조와 공조의 낭청 및 본조예조의 낭청을 따로 보내 함께 검사하며, 감역관을 따로 정해 속히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전하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2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享所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며, 산재할 때는 조문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담당 관원은 형살刑殺에 관한 문서를 아뢰지 않고, 오직 제사에 관계된 일만 아뢰는 일을 예문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왕세제·궁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2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왕세제는 별당에서 2일간 산재散齋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致齋하며, 궁관宮官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여러 위衛 소속은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壇修理

一. 曹啓曰：“今此先農壇祈雨親祭時，壇上修理事，依前例，別遣戶·工曹郎廳與本曹郎廳，眼同看檢，而別定監役官，急速修理，何如？”傳曰：“允。”

● 殿下齋戒

一. 曹單子：“今五月二十日，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殿下，散齋二日於別殿，致齋一日於享所，凡散齋，不吊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唯啓享祀事，依禮文舉行，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王世弟宮官齋戒

一. 曹單子：“今五月二十日，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王世弟，散齋二日於別堂，致齋一日於享所，宮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宿於本司，致齋一日於享所，諸衛之屬，各於本司淸齋一宿事，知委，何如？”啓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재계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2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향관들과 근시 관원으로서 따라 올라가야 하는 자는 모두 본사에서 묵으며 2일간 산재하고 향소에서 1일간 치재하며, 제사에 참석하는 백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墺門을 지키는 자는 각기 본사에서 하룻밤 청재淸齋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향관의 지영

예조의 단자에,

“대제大祭를 친히 행할 때 향관들은 하루 전 새벽에 먼저 향소에 나아갔다가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지영祇迎하도록 예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 5월 2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제관과 집사는 19일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대가와 왕세제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2경에 동가하는 시간은 유시로 결정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예전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성상께서는 2경 초에 동

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享官齋戒

一. 曹單子: “今五月二十日, 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 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並散齋二日宿於本司, 致齋一日於享所, 陪祭百官, 諸衛之屬守衛墺門者, 各於本司淸齋一宿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享官祇迎

一. 曹單子: “凡大祭親行時, 諸享官, 前一日質明, 先詣享所爲白有如可, 大駕將至祇迎事, 禮文載錄爲白有昆, 今五月二十日, 先農壇祈雨親祭教是時, 祭官·執事, 十九日質明, 先詣享所, 大駕·王世弟將至, 以黑團領祇迎事, 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二更動駕酉時定奪

一. 曹啓曰: “曾前先農壇祈雨親祭時, 自上於二更初動駕

가動駕하여 도성을 나와 단소壇所에 가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였으며, 야차野次에 묵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선농단 친제를 지낼 때 출궁하는 시각은 유시酉時로 결정하여 절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합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사사로이 연습하다.

예조의 단자에,

“이번 5월 2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제관과 집사는 이번 19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중사·승지·내시·궁관과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하여 위의를 잃는 우환이 없도록 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계하하였다.

● 보부報府

1. 이번 5월 20일 선농단 기우 친제 때 제관과 집사들은 19일 새벽에 먼저 향소享所에 가서 대가와 왕세제가 도착하면 흑단령 차림으로 지영한다.

1. 향관들은 19일 새벽에 먼저 향소에 가서 중사·승지·내시·궁관과 함께 전례대로 사사로이 연습한다.

出城，詣壇所，仍爲行祭還宮，而無野次經宿之事。今番農壇親祭教是時，⁵ 出宮時刻，以西時定奪磨鍊節目，今亦依此舉行乎？敢稟。”傳曰：“依爲之。”

● 私習

一. 曹單子：“今五月二十日，先農壇祈雨親祭時，祭官·執事，今十九日質明，先詣享所，與中使·承旨內侍宮官，依例私習，俾無失儀之患事，知委，何如？”啓依所啓施行爲良如教。

● 報府

一. 曹⁶，今五月二十日，先農祈雨親祭教是時，祭官諸執事，十九日質明，先詣享所，大駕·王世弟將至，以黑團領祇迎事。
一. 諸享官，十九日質明，先詣享所，與中使·承旨·內侍·宮官，依例私習事。

5 教是時：지본에는 ‘不是時’ 문맥에 근거하여 수정

6 曹：연문으로 추정

계묘년¹⁷²³ 5월 21일

● 기우제를 다시 설행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2차로 친히 기도한 뒤 비록 가랑비가 한 번 내렸지만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근심하고 경황없어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 정성을 다하여 재차 기도해야 하는데, 친히 제사 지낸 뒤라 해당 조에서 감히 계품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조로 하여금 전례를 살펴 차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5차 기우제

예조가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에,
‘2차로 친히 기도한 뒤 비록 가랑비가 한 번 내렸지만 아직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뒷부분 탈락)

癸卯五月二十一日

● 祈雨更爲設行

一. 政院啓曰：“再次親禱之後，雖得一霎，霈澤尙闕，上下憂遑，罔知攸措，所當益加虔誠，連次祈禱，而親祭之後，則該曹不敢啓稟云，請令該曹，考例次第舉行，何如？”傳曰：“允。”

● 五次

一. 曹啓曰：“政院啓辭，再次親禱之後，雖得一霎，霈澤尙闕。”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장유승(성균관대학교)
공동번역	김해인·이정우·김연수/ 부유섭·이승재·김중섭·강민형
출판교열	장유승
감수	김문식(단국대학교)
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디자인	임범상·이선정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66-01

ISBN 979-11-6988-364-1(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https://science.kma.go.kr/museum>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